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

- 2023. 06.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경제학과 김성훈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경제학과 김성훈

연구진

☐ 연구책임자

○ 김성훈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경제학과)

☐ 공동연구원

○ 고강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연구보조원

○ 안지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목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보고서 구성	3
II. 선행연구	5
1. 선행연구 검토	5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7
3. 본 연구의 특이사항	8
III. 국내 유입 인구 대상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가입자 현황 분석	9
1. 국내 유입 인구 관련 건강보험 제도 정책 및 주요 정책변화 내용 소개	9
가.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 현황	9
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주요 개편 내용	9
다. 국외 건강보험 제도 현황	11
2.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	12
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입자 현황 분석	12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한 가입자 현황 분석	17

IV.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 분석	45
1.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45
가. 분석대상자의 가입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45
나. 분석대상자의 거주기간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61
2.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변화 분석	70
3. 정책효과분석	71
V.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전망	77
1.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전망 모형 설정	77
2.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	78
VI. 결론	89
1. 주요 결과 요약	89
2. 정책 함의	91
참고문헌	93
부록	95

표 목차

<표 1> 기초통계량	13
<표 2> 가입자별 인구경제학적 특성	15
<표 3>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별 현황	18
<표 4> 가입자격별 평균 연령 현황	19
<표 5> 가입자격별 성별 분포 현황	20
<표 6> 가입자격별 산정보험료 5분위 분포 현황	22
<표 7> 가입자격별 거주지역 분포 현황	24
<표 8> 가입자격별 체류자격 분포 현황 (상위 5위)	27
<표 9> 가입자격별 국가 분포 현황 (상위 5위)	30
<표 10> 가입자격별 다빈도 상병 (상위 5위) 현황	37
<표 11> 내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48
<표 12>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50
<표 13>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52
<표 14> 내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55
<표 15>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57
<표 16>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59
<표 17> 외국인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62
<표 18> 재외국민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64
<표 19> 외국인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변화 (입원, 처방)	67
<표 20> 재외국민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변화 (입원, 처방)	68
<부표 1> 상위 3개국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101
<부표 2> 상위 3개국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102
<부표 3> 상위 3개국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103
<부표 4> 상위 3개국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104
<부표 5> 외국인 재정전망 수치 (중위추계)	105
<부표 6> 외국인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중위추계)	105
<부표 7> 재외국민 재정전망 수치 (중위추계)	106

<부표 8> 재외국민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중위추계)	106
<부표 9> 외국인 재정전망 수치 (저위추계)	107
<부표 10> 외국인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저위추계)	107
<부표 11> 재외국민 재정전망 수치 (저위추계)	108
<부표 12> 재외국민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저위추계)	108
<부표 13> 외국인 재정전망 수치 (고위추계)	109
<부표 14> 외국인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고위추계)	109
<부표 15> 재외국민 재정전망 수치 (고위추계)	110
<부표 16> 재외국민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고위추계)	110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1
<그림 2> 건강보험 재정 수지 연도별 추이	70
<그림 3>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수지 연도별 추이	71
<그림 4> 최소거주기간 요건 변화 효과 분석	73
<그림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비율	73
<그림 6> 외국인 직장가입자 의료이용현황	75
<그림 7>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의료이용현황	75
<그림 8> 외국인 재정추계 (중위추계)	79
<그림 9> 외국인 특성별 재정추계 (중위추계)	79
<그림 10> 재외국민 재정추계 (중위추계)	80
<그림 11> 재외국민 특성별 재정추계 (중위추계)	80
<그림 12> 외국인 재정추계 (저위추계)	81
<그림 13> 외국인 특성별 재정추계 (저위추계)	81
<그림 14> 재외국민 재정추계 (저위추계)	82
<그림 15> 재외국민 특성별 재정추계 (저위추계)	82
<그림 16> 외국인 재정추계 (고위추계)	83
<그림 17> 외국인 특성별 재정추계 (고위추계)	83
<그림 18> 재외국민 재정추계 (고위추계)	84
<그림 19> 재외국민 특성별 재정추계 (고위추계)	84
<그림 20> 외국인 국적별 재정전망 (중위추계)	85
<그림 21> 외국인 국적별 재정전망 (저위추계)	86
<그림 22> 외국인 국적별 재정전망 (고위추계)	86
<그림 23> 외국인 재정추계 (ARIMA모형)	87
<그림 24> 외국인 특성별 재정추계 (ARIMA모형)	87
<그림 25> 재외국민 재정추계 (ARIMA모형)	88
<그림 26> 재외국민 특성별 재정추계 (ARIMA모형)	88
<부그림 1> 건강보험가입 상태별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현황	99

요약

- 한국은 지난 20년간 급격한 국내 유입 인구 (외국인 및 재외국민)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도 큰 폭으로 증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국내 입국자 수가 감소하여 등록 외국인 수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인한 국제이동 회복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로 인한 생산인구 확충 필요로 인해 다시 증가 추세
- 국내 유입 인구 증가가 의료서비스 수요와 건강보험 재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그 효과를 전망할 필요
 - 코로나-19 대유행의 점진적 소멸로 인해서 국제인구 이동이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유입 인구 추세 및 특성 분석과 그들의 의료 이용 행태를 대규모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 현행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은 국내 모든 체류인구(내국인+외국인)를 대상으로 추계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반영한 별도 모형구축 필요
- 본 연구는 국내 유입 인구(외국인 및 재외국민) 증가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 장기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전망
 - 근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설계와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국내 유입 인구 대상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유입 인구의 건강보험 이용 현황 및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엄밀하고 객관적 분석 수행
 -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내외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보험 재정 관련 다양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과학적으로 전망
-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2007년 이후 꾸준히 일반외래, 응급외래, 입원, 처방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 다만, 대부분 의료행태에서 코로나-19로 영향으로 2020년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해 재정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흑자 유지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재정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는 재정 흑자 유지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세대주 최소 거주기간 요건 강화 정책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세대주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소 거주기간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 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건강보험 최초취득 시점이 2016년 4월~2019년 3월인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와 2019년 7월~2020년 6월인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추세를 비교
 - － 건강보험 최초취득 시점이 2016년 4월~2019년 3월인 지역가입자들은 2019년 7월~2020년 6월인 지역가입자들보다 건강보험 자격 최초취득 직후에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이는 의료보험 역선택의 증거로 해석 가능
 - － 정책 시행 전에는 산정보험료보다 총 보험자부담금이 높고 (재정 적자), 정책 시행 후에는 산정보험료가 총 보험자부담금보다 높음 (재정 흑자)
-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조성법 모형 이용 추계
 - 국내 유입 인구 증가가 국내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에 조성법을 사용해서 장기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예측
 - 조성법 모형의 경우, 연령, 성별, 가입자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유입인구 인구구성 변화 시나리오(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자료 활용) 설정 후 2019년 자료 기준(코로나-19 직전) 의료비 지출 및 보험료 수입 예측
 - － 외국인 상주 인구 구성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여지가 크므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 20% 시나리오 계산
 - － 중위추계(기본시나리오) 결과,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나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흑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 저위추계(-20% 시나리오) 결과,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감소하며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재정수지 흑자가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 고위추계(+20% 시나리오) 결과,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며,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다만, 장기적으로 재외국민의 경우 재정수지 흑자가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본 보고서는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정밀하게 예측 가능케 함

○ 국내 유입 인구 관련 건강보험 제도 설계(예: 국내 최소 체류기간)에 대한 근거기반 제언 도출할 수 있음

- － 예를 들어,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전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지역가입자를 당연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외국인만 임의가입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 제공
- － 또한, 보험료 부과기준 관련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건강보험 수지 개선 가능하다는 함의 제공

○ 국내 유입 인구의 국내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차후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 원주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내 유입 인구 증가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응용해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활용 가능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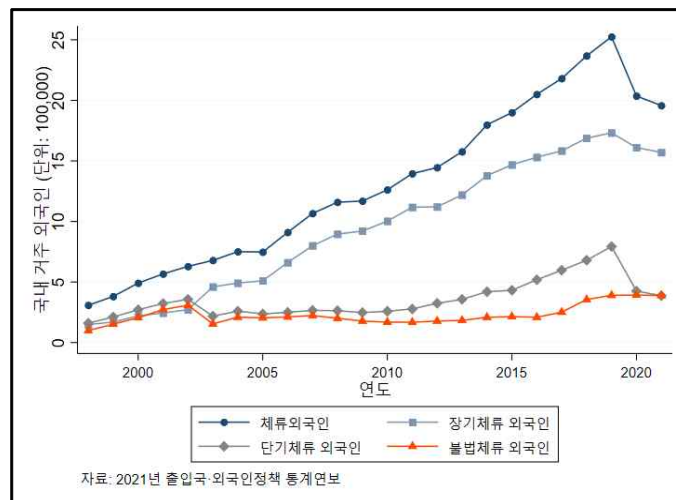
1. 연구배경

□ 한국은 지난 20년간 급격한 국내 유입 인구 증가를 경험

○ 국내 인구 대비 외국 국적 인구 비중이 1998년 0.7%에서 2019년 4.9%로 증가
(법무부, 2019)

○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 기준 외국인 인구가 약 250만 명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일시적 감소

<그림 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내 유입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도 큰 폭으로 증가(2015년 기준 80만명에서 2021년 126만명으로 57.6% 증가)

○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국내 입국자 수가 감소하여 등록 외국인의 숫자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인한 국제이동 증가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로 인한 생산인구 확충 필요

- － 해외국적 동포 귀국, 유학생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유입 인구가 장단기적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국내 유입 인구 증가가 의료서비스 수요와 건강보험 재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그 효과를 전망할 필요
- 국내 유입 인구 증가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
 -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율은 2000년 11.35%에서 2019년 20.9%로 (통계청, 혼인통계 2000-2019년) 증가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민족구성이 단일한 편이었기 때문에 외국 국적 인구 증가는 다민족국가 혹은 이민 역사가 긴 북미나 유럽 지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갈등 발생 소지
 -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 재정이 악화되면 국민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및 복지서비스가 국내 유입 인구 관련 갈등 유발의 축이 될 가능성 (예: 외국인 무임승차론 혹은 내국인 역차별론)
 - 서울대학교 최승주 연구팀(최정윤, 김성훈, 최승주, 2021)이 실시한 한국인 대상 약 4,000명 대상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원주민(native)은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10,000원을 낼 때 11,587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식 (약 15% 적자 유발)
 - － 그러나 공식 통계 (건강보험공단 2018년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10,000원 당 약 7,700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실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기여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학생이나 노동자이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적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외국인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부적절한 의료이용 행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
- 코로나-19 대유행의 점진적 소멸로 인해서 국제인구 이동이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유입 인구 추세 및 특성 분석과 그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대규모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 현행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은 국내 모든 체류인구(내국인+외국인)를 대상으로 추계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반영한 별도 모형구축 필요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유입 인구(외국인 및 재외국민) 증가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 장기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전망하고자 함
- 근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설계와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국내 유입 인구 대상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유입 인구의 건강보험 이용 현황 및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엄밀하고 객관적 분석을 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내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보험 재정 관련 다양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과학적으로 전망하고자 함

3.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2장은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이용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3장은 국내 유입 인구 대상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가입자 현황 분석
- 4장은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 분석
- 5장은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전망
- 6장은 결론으로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함의에 대해 논의

II.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검토

□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이용 관련 연구들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다룬 것이 다수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박형아, 진기남, 구준혁, 2021)

- 박형아 외(2021)은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
 - 분석결과 2018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중국인과 지역가입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
 -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도 시행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변진옥 외, 2019)

-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전수자료를 사용하여 의료이용 양상과 특징을 고찰
- 외국인 건강보험자는 내국인에 비해 의료 미이용자 비율이 높고, 1인당 입내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 등 의료이용이 적음을 확인
- 가입자격 취득과 그 이후의 의료이용 양상을 시간에 따라 추적한 것이 아니며, 자료의 한계로 이용요인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

○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급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8)

- 2013~2017년 국민건강정보 DB 전수자료를 사용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격 및 의료이용 현황을 비교분석
- 다만, 집단 간 특성을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 2010~2015년 국민건강정보 DB 전수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및 의료이용 현황 분석
- 자료 구성의 한계로 외국인과 내국인 가입자 간 보다 정밀한 비교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

-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분 인구 고령화, 거시경제 변수, 제도변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전망하였으며, 국내 유입 인구(외국인 및 재외국민) 증가 추세나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2009)

-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과거 경향을 그대로 단순 적용하여 미래 재정을 단순추계 방법과 수입과 지출에 대해 구성 요소별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의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한 인구구조 반영추계 방법을 사용
- 두 추계방법 모두 정부 전망보다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진단하였으며, 사회보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의 지출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출과 재원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검토해야한다고 시사

○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2019)

- 해당 연구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인구변수, 거시경제 변수와 제도변수(보장성 강화)를 고려하여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를 전망
 -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적용하고 거시경제 변수는 명목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
 - 제도변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및 건강보험종합계획(2019.5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와 추가 재정소요액 등을 반영
 - 수입은 가입자 수 추계와 보험료수입 추계, 정부지원금 추계로 구성되며, 지출은 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관리운영비 및 건강검진비 추계로 구성
- 재정전망 결과, 건강보험의 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건전성은 지출대비 수입비율(당해 연도 수입이 총당할 수 있는 여력을 측정하는 재정지표)을 이용하여 점검하였고, 2028년 기준 건강보험은 0.9배로 수입이 지출을 총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
 - 종합적으로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전망

○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전망 (주재홍, 장성인, 박은철, 2020)

- 해당 연구는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및 의료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추계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
-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과거 경향을 그대로 단순 적용하여 미래 재정을 추계하는 단순 추계방법과 수입과 지출에 대해 구성요소별로 15년간(2004~2018년)의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인구구조반영 추계 방법을 이용

- 단순추계 결과 2025년 이후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추계는 2022년에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며 그 이후에는 누적 적자 예상

○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방법론 연구 (이태진, 2020)

- 본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지출 변화를 반영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추계를 수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점검
-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한 추계가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구체성과 복잡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성법 모형을 사용하여 추계
 - 기대수명 연장을 반영하여 건강한 고령화 가정, 소득 탄력도 0.8, 의료비 절감 정책과 별개로 잔차 요인 유지, 2025년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 요인 증가율 연 6.73% 등의 가정을 적용
- 2010년 이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에 따른 의료비 변화 분석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자 모두에서 일인당 급여진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에 따른 의료 이용 및 의료비 변화에 미친 효과를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반영하여 모형 설계를 제안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국내 유입 인구(외국인)의 의료이용현황을 단순 비교함

○ 내국인과 단순 비교하거나 외국인 대상자만 한정지어 살펴보았으며, 외국인의 인구경제학 특성을 자세하게 구분하여 현황 분석한 연구는 드문 상황

-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구분하여 의료이용현황을 본 연구는 거의 없음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자형태별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해당 내용을 다룬 국내 문헌은 거의 없음

- 2018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국내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연장은 외국인의 의료이용현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정책 시행 이후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드물며, 기존연구는 연구기간이 짧아 국내 유입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기 변화를 볼 수 없는 상황

-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인구구조변화(고령화)를 고려하여 재정 전망하였으며, 국내 유입 인구변화를 다룬 재정전망 연구는 드문 상황
 - 매년 국내 유입 인구(외국인 및 재외국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해당 변수도 고려하여 재정 전망할 필요
 - 연령, 성별, 가입자 형태 등 가입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3. 본 연구의 특이사항

-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유형별로(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료가입자)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를 분석
 - 2007년-2021년의 연구기간으로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기 변화를 살펴봄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변화 등 제도변화에 따른 국내 유입 인구의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를 분석
 - 2018년에 개정된 외국인 지역가입자 국내 최소 체류기간 변화에 따른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에 대한 분석 가능
- 국내 유입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및 건강보험 재정 전망
 -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인구(외국인 및 재외국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은 국내 모든 체류인구(내국인+외국인)를 대상으로 추계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구분하여 반영한 별도 모형구축이 중요함

III. 국내 유입 인구 대상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가입자 현황 분석

1. 국내 유입 인구 관련 건강보험 제도 정책 및 주요 정책변화 내용 소개

가.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 현황

□ 현행 제도의 가입 자격 관련 주요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 (제109조)을 근거로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¹ 또는 외국인에게도 질병·부상 시 예방·진단·치료 등에 보험급여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점에 직장가입자가 됨
 - － 외국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가 보수·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신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음
 - －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
-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당연가입됨
 - － 예외적으로 결혼이민, 유학·일반연수, 영주,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입국일을 가입일로 하고 있으며, 세대원 인정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
 - －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하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받음
 - － 농어촌, 섬·벽지, 종교, 유학,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22~60% 경감 적용

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주요 개편 내용

□ 보험 가입기준

- 지역가입자 국내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시행규칙 ‘18.12.18.)
 - －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는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최초취득이 가능했음
- 외국인(재외국민)의 지역가입자 가입이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의무화 (법률 ‘19.7.16.)

¹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법」 제2조).

-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을 받은 경우, 국내 입국일에 가입 적용 (시행규칙 및 고시 '21.10.14.)
- 국내 최소체류기간 연장과 당연가입제 도입은 의료비 지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이 본인부담금을 회피하고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보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
 - － 그러나 최소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가입자격 강화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외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부작용도 발생
 - －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을 받은 경우 최소체류기간 제도의 예외를 둬으로써 보험(insurance)과 효율(efficiency)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함

□ 보험 재취득 기준

- 2014년 12월 16일 이전에는 출국 상실자의 경우 지역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국내 재입국일을, 체납 상실자는 자격 상실한 날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재취득이 가능함
- 2014년 12월 17일 이후에는 출국 상실자의 경우, 국내 입국한 날(최종입국)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혹은 지역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내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재취득이 가능함
 - － 체납상실자의 경우 자격 상실한 날을 기준으로 재취득이 가능
- 체류기간 종료로 상실된 자가 출국한 적이 없어 체류허가를 다시 받은 경우는 체류허가 일자가 취득일 기준임

□ 보험료 부과기준

-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인정범위는 개별 외국인을 원칙상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여 산정하되 동일세대원으로 구성하려면 세대주 신청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 (고시 별표2 '18.12.18.)
- 영주(F-5)와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한 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²⁾의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면 평균보험료 부과 (고시 별표2 '19.1.1)

²⁾ 1999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체 지역가입자(내국인·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평균보험료를 산출하였으나, '19년부터는 전체 직장가입자(내국인·외국인)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산출하고 있음

□ 관리기준

- 외국인이 선납보험료체납(50만원 이상) 시 그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여 체류연장심사에 활용 (시행규칙 '19.7.2.)
- 선납보험료 미납 시 보험급여 중단 (법률 '19.7.16.)

다. 국외 건강보험 제도 현황³

□ 국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와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비교분석을 위해, 일본, 대만, 영국의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자격 기준을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그 외 국가는 <부록 1>에 정리

○ 일본

- 직장이 있는 외국인은 고용과 동시에 소속 직장의 건강보험에 자동가입
- 고용주가 없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후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됨
-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이 충족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해야하며, 해당 외국인이 일정기간 지난 후에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소급적용됨
 - 이들은 직장 건강보험 혜택, 공공부조를 받지 않아야 하고 장기 거주자여야 함
- 일본에 1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민간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공적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음
- 피부양자의 범위는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친족 및 가족구성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포함

○ 대만

- 직장이 있는 외국인은 고용과 동시에 소속직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자동 가입
- 고용주가 없는 외국인은 거주지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
 - 고용관계가 있지않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같은 피부양자는 6개월 이상 대만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국

-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영역(EEA), 스위스 국적의 외국인이 영국을 방문하여 6개월 미만으로 단

³ 본 절에서 제시된 외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연구(국민건강보험, 2016)”을 참조

- 기체류할 경우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를 취득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신청을 통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자격을 취득해야하며, NHS 자격은 비자를 승인받은 날부터 비자 종료일까지 유효함
- 6개월 미만으로 단기체류하는 EU(스위스 포함) 이외 국적 외국인은 NHS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영국 정부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비자를 받고 건강부담금을 납부하면 NHS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6개월 이상 체류하는 EU(스위스 포함) 이외 국적의 유학생 및 피부양자는 체류비자 신청 시 건강부담금을 납부해야 NHS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는 생후 3개월간 NHS 자격을 부여받으나 3개월 내에 아동에 대한 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생후 3개월 이후는 별도의 건강부담금을 납부

2.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자 현황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를 통해서 분석

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입자 현황 분석

- 먼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매년 실시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에 대한 인구통계학 및 사회경제적 특성(국적, 학력, 고용, 임금, 거주지역 등)을 파악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의 국외유입으로 이들의 체류관리, 사회통합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수요 발생
 -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노동 공급, 고용구조, 가용 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동 정도 제공으로 고용정책,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필요

- 조사항목은 공통항목과 특성항목으로 구분되는데, 공통항목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조사하고 특성항목은 특정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3년 주기 조사
- 공통항목은 이민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항목,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매년(혹은 격년) 조사하고 있으나 매년 똑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있진 않음
- －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항은 2017, 2019, 2021년 자료에만 존재
- 부가 항목 (설문조사에서는 특성항목으로 표기)은 비전문취업, 유학생으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조사
- <표 1>은 2017-2021년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현황을 나타남
- 본 조사 응답자의 29%는 15~29세, 28%는 30~39세, 남성 비율은 약 55%
- 응답자 중 42%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소지자이며, 29%는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 응답자 중 63%는 배우자가 있으며, 65%는 자녀가 있음
- 전체 표본 중 취업자는 66%, 비경제활동인구는 30%를 차지
- － 주당 총취업시간이 40~50시간 미만인 응답자는 49%, 50~60시간 미만은 19%, 60시간 이상은 17%
 - － 월 평균급여가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표본의 50%
- 전체 응답자의 약 63%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39%, 중국 10%, 베트남 12% 순으로 많음

<표 1> 기초통계량

	전체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월 평균급여구간		
여성	0.45	(0.50)	100만원 미만	0.05	(0.21)
남성	0.55	(0.50)	100만원~200만원 미만	0.30	(0.46)
연령계층			200만원~300만원 미만	0.50	(0.50)
15~29세	0.29	(0.45)	300만원 이상	0.15	(0.36)
30~39세	0.28	(0.45)	거주지역		
40~49세	0.16	(0.37)	서울	0.23	(0.42)
50~59세	0.16	(0.37)	경기, 인천	0.40	(0.49)
60세 이상	0.11	(0.31)	부산, 울산, 경남	0.10	(0.31)
학력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11	(0.31)
초졸 이하	0.10	(0.30)	대구, 경북	0.06	(0.24)
중졸	0.19	(0.39)	광주, 전남, 전북	0.07	(0.25)
고졸	0.42	(0.49)	강원, 제주	0.03	(0.17)

대졸이상 (전문대포함)	0.29	(0.45)	국적		
결혼 여부			한국계 중국인	0.39	(0.49)
배우자없음	0.37	(0.48)	중국 (한국계 제외)	0.10	(0.30)
배우자있음	0.63	(0.48)	베트남	0.12	(0.33)
자녀 유무			우즈베키스탄	0.04	(0.19)
자녀없음	0.35	(0.48)	필리핀	0.03	(0.17)
자녀있음	0.65	(0.48)	인도네시아	0.03	(0.16)
경제활동상태			일본	0.01	(0.12)
취업자	0.66	(0.47)	태국	0.02	(0.15)
실업자	0.04	(0.19)	몽골	0.02	(0.12)
비경제활동인구	0.30	(0.46)	캄보디아	0.03	(0.18)
주당 총취업시간			네팔	0.03	(0.16)
20시간 미만	0.03	(0.18)	기타 아시아	0.09	(0.29)
20~30시간 미만	0.05	(0.21)	북미(미국)	0.04	(0.20)
30~40시간 미만	0.06	(0.24)	유럽	0.03	(0.17)
40~50시간 미만	0.49	(0.50)	오세아니아	0.0004	(0.07)
50~60시간 미만	0.19	(0.39)	기타	0.01	(0.11)
60시간 이상	0.17	(0.38)			
일시휴직	0.01	(0.10)			
관측치수	94,726			94,726	

자료: 2017~2021년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

주: 1) 가중값 사용

2) 2018년부터 세종 거주지역 조사

□ <표 2>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가입 여부에 따라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현황을 나타냄

○ 상기 언급했듯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항은 2017, 2019, 2021년 자료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 해석 시 주의 필요

— 해당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현재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 설문응답자는 ‘1.가입되어있음’, ‘2.가입되어있지않음’, ‘3.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선택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37%는 15~29세이며 30~39세는 19%, 40~49세는 15%, 50~59세는 18%를 차지
- 남성 비율은 53%이며, 응답자 중 43%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이며 25%는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
- 51%는 배우자가 있으며, 53%는 자녀가 있음
- 취업자는 47%, 비경제활동인구는 47%를 차지
- 주당 총 취업시간이 40~50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사람은 40%, 50~60시간 미만은 17%, , 60

시간 이상은 20%를 차지

- 월평균급여가 100~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표본의 42%이며, 200~300만 원 미만은 36%
- 응답자의 30%는 서울, 33%는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36%, 중국 15%, 베트남 16% 순으로 많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한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계층은 15~29세가 2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30~39세는 19%를 차지
- 남성의 비율은 35%이며, 응답자의 42%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이며 30%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임
- 응답자의 65%는 배우자가 있으며, 67%는 자녀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취업자는 70%, 비경제활동인구는 27%를 차지
- 주당 총 취업시간이 40~50시간 미만인 응답자는 49%이며, 50~60시간 미만은 20%, 60시간 이상은 18%를 차지
- 월평균급여가 200~3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비율은 52%이며, 100~200만 원은 28%, 300만 원 이상은 17%를 차지
- 응답자의 21%는 서울, 42%는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40%, 베트남 11%, 중국 9% 순으로 많음

○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보다 남성의 비율, 30대 비율, 대졸 이상 비율, 자녀비율, 취업상태비율, 월평균급여소득이 높음

- 건강보험가입자의 42%는 경기, 인천지역에 21%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33%는 경기, 인천지역에 30%는 서울지역에 거주
- 거주지역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경기, 인천지역에 더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가입자의 40%가 한국계 중국인이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36%가 한국계 중국인, 15%가 중국인

<표 2> 가입자별 인구경제학적 특성

	건강보험미가입		건강보험가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여성	0.47	(0.50)	0.45	(0.50)
남성	0.53	(0.50)	0.55	(0.50)
연령계층				
15~29세	0.37	(0.48)	0.27	(0.44)
30~39세	0.19	(0.39)	0.30	(0.46)

40~49세	0.15	(0.36)	0.16	(0.37)
50~59세	0.18	(0.38)	0.16	(0.36)
60세 이상	0.11	(0.32)	0.11	(0.32)
학력				
초졸 이하	0.13	(0.34)	0.09	(0.29)
중졸	0.18	(0.39)	0.19	(0.39)
고졸	0.43	(0.50)	0.42	(0.49)
대졸이상 (전문대 포함)	0.25	(0.43)	0.30	(0.46)
결혼 여부				
배우자없음	0.49	(0.50)	0.35	(0.48)
배우자있음	0.51	(0.50)	0.65	(0.48)
자녀 유무				
자녀없음	0.47	(0.50)	0.33	(0.47)
자녀있음	0.53	(0.50)	0.67	(0.47)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0.47	(0.50)	0.70	(0.46)
실업자	0.06	(0.25)	0.03	(0.17)
비경제활동인구	0.47	(0.50)	0.27	(0.44)
주당총취업시간				
20시간 미만	0.06	(0.23)	0.03	(0.17)
20~30시간 미만	0.08	(0.27)	0.04	(0.19)
30~40시간 미만	0.09	(0.29)	0.05	(0.23)
40~50시간 미만	0.40	(0.49)	0.49	(0.50)
50~60시간 미만	0.17	(0.37)	0.20	(0.40)
60시간 이상	0.20	(0.40)	0.18	(0.38)
일시휴직	0.01	(0.10)	0.01	(0.08)
월평균급여구간				
100만원 미만	0.11	(0.31)	0.04	(0.19)
100만원~200만원 미만	0.42	(0.49)	0.28	(0.45)
200만원~300만원 미만	0.36	(0.48)	0.52	(0.50)
300만원 이상	0.11	(0.32)	0.17	(0.37)
거주지역				
서울	0.30	(0.46)	0.21	(0.41)
경기, 인천	0.33	(0.47)	0.42	(0.49)
부산, 울산, 경남	0.10	(0.30)	0.11	(0.31)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10	(0.30)	0.11	(0.31)
대구, 경북	0.06	(0.24)	0.06	(0.24)
광주, 전남, 전북	0.08	(0.27)	0.06	(0.24)
강원, 제주	0.03	(0.18)	0.03	(0.16)
국적				
한국계 중국인	0.36	(0.48)	0.40	(0.49)
중국 (한국계 제외)	0.15	(0.36)	0.09	(0.29)
베트남	0.16	(0.36)	0.11	(0.32)
우즈베키스탄	0.05	(0.21)	0.04	(0.19)
필리핀	0.02	(0.12)	0.03	(0.18)
인도네시아	0.01	(0.11)	0.03	(0.17)
일본	0.01	(0.11)	0.01	(0.12)
태국	0.01	(0.10)	0.03	(0.16)
몽골	0.02	(0.13)	0.01	(0.12)
캄보디아	0.03	(0.17)	0.03	(0.18)
네팔	0.02	(0.13)	0.03	(0.17)
기타 아시아	0.07	(0.26)	0.10	(0.29)
북미(미국)	0.04	(0.18)	0.03	(0.21)

유럽	0.05	(0.22)	0.03	(0.16)
오세아니아	0.003	(0.05)	0.005	(0.07)
기타	0.02	(0.14)	0.01	(0.10)
관측치 수	7,981		46,630	

자료: 2017, 2019, 2021년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

주: 1) 건강보험가입여부는 2017, 2019, 2021년 조사에서만 이용 가능

2) 가중값 사용

3) 2018년부터 세종 거주지역 조사

○ 2017년, 2019년,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가입 상태별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봄 (<부그림 1> 참조)

- 건강보험가입자의 15~29세 연령층이 줄어들면서 30대 이상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50세 이상의 연령계층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15~29세, 30대의 연령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건강보험가입자의 60%이상이 취업상태인 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의 대부분은 비경제활동 인구 상태이며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건강보험가입자의 자녀유무는 약 70%로 그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미가입자는 자녀유무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 건강보험가입 상태별 교육수준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전문대졸이상 학력수준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남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남성비율, 혼인상태 비율, 월평균급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가입자가 경기, 인천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한 가입자 현황 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 특성을 자료에 존재하는 변수에 한정해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 중 2007년 1월 ~ 2021년 12월 자격 자료와 진료내역 자료를 개인별 ID로 매칭하여 사용함

○ 분석대상자는 2007년 1월~2021년 12월 동안 건강보험정보 DB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체 분석대상자 중에서 자격 정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제외

- 건강보험증번호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된 외국인유무변수와 체류자격변수를 사용하여 구분함
 -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유무변수 값이 'Y'가 아니면서 체류자격 코드가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로 정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유무변수 값이 'Y'이면서 체류자격 코드가 재외국민이 아닌 사람들로 정의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 코드가 'C0(재외국민)', 'C9(유학(재외국민))', 'C10(유학(재외동포))'인 사람들로 정의

○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연구기간에 맞게 전수자료를 사용

- － 내국인의 경우, 분석 용이를 위해 전체 가입자 중 무작위 추출한 5% 표본으로 구성

○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별 비중

- － <표 3>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별 현황을 나타냄
- － 외국인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121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 재외국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약 2만6천 명으로 외국인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표 3>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내 국 인 (5 %)	지역세대주	365,684	353,461	332,603	315,852	317,184	327,000	336,339
	지역세대원	588,149	504,324	435,732	381,293	363,608	352,776	347,009
	직장가입자	496,969	554,650	641,865	731,447	780,454	834,272	847,208
	직장피부양자	878,796	923,512	967,650	1,004,604	980,035	928,199	908,076
	의료급여세대주	53,252	49,713	47,304	50,310	50,864	53,314	55,361
	의료급여세대원	35,142	32,099	25,800	23,421	23,354	19,453	18,365
	전체	2,417,992	2,417,759	2,450,954	2,506,927	2,515,499	2,515,014	2,512,358
외 국 인	지역세대주	20,389	29,689	55,053	100,400	140,079	345,558	426,775
	지역세대원	52,630	75,199	100,009	140,751	162,020	148,421	134,812
	직장가입자	182,698	262,209	321,220	420,508	445,511	460,654	451,498
	직장피부양자	41,054	70,621	114,903	176,591	179,565	195,293	194,114
	의료급여세대주	3	67	153	326	487	632	714
	의료급여세대원	95	1,561	1,776	2,177	2,103	2,186	2,243
	전체	296,869	439,346	593,114	840,753	929,765	1,152,744	1,210,156
재 외 국 민	지역세대주	2,736	2,469	1,987	2,789	3,525	6,710	6,846
	지역세대원	3,322	3,500	3,191	3,072	3,602	3,248	3,241
	직장가입자	4,189	5,511	5,188	6,621	7,968	9,103	9,637
	직장피부양자	6,380	8,909	8,992	7,301	8,499	6,853	6,503
	의료급여세대주	-	-	-	7	57	145	209
	의료급여세대원	-	-	2	6	11	26	34
	전체	16,627	20,389	19,360	19,796	23,662	26,085	26,470

주 1)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함

2) 내국인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5%로 샘플을 제한함

□ 분석대상자의 인구경제학적 특징

○ 평균 연령

- <표 4>는 분석대상자 평균 연령을 나타냄
- 내국인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가입자 모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의료급여세대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원 순으로 평균 연령이 낮음
- 외국인도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2021년 평균 연령이 39.9세, 39.9세로 내국인 47.0세, 41.4세와 비교했을 때 젊은층이 많음
 - 2021년 가입자격별 평균 연령은 38-40세로 큰 차이가 없으나, 2007년 대비 2021년 평균 연령이 높아짐
- 재외국민 또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내국인과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평균 연령이 높음
 - 2021년 가입자격별 평균 연령은 52-67세로, 직장가입자가 52.4세로 평균연령이 낮으며 의료급여세대주가 67.8세로 평균연령이 높음

<표 4> 가입자격별 평균 연령 현황

(단위: 세)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내 국 인	지역세대주	47.61	48.78	50.56	52.43	53.62	54.81	55.09
	지역세대원	29.28	31.06	32.77	34.71	36.18	38.14	39.1
	직장가입자	39.5	40.86	42.06	43.35	44.15	44.92	45.28
	직장피부양자	33.25	34.19	35.1	36.11	36.88	37.39	37.82
	의료급여세대주	52.15	56.14	57.51	59.04	59.92	60.97	61.42
	의료급여세대원	26.55	27.47	29.02	29.78	31.96	33.66	34.5
	전체	36.06	37.56	38.97	40.47	41.57	42.73	43.32
외 국 인	지역세대주	43.52	43.85	45.57	47	47.68	45.52	40.36
	지역세대원	32.66	33.84	37.17	39.5	39.97	38.63	38.58
	직장가입자	32.1	33.9	34.49	35.59	36.51	38.34	39.79
	직장피부양자	30.9	33.36	37.58	40.83	40.9	40.54	40.27
	의료급여세대주	42	32.43	35.01	37.66	39.17	40.16	40.97
	의료급여세대원	35.15	33.6	36.42	38.35	39.05	39.74	40.11
	전체	32.82	34.47	36.58	38.71	39.65	40.91	39.94
재 외 국 민	지역세대주	54.32	54.81	57.17	57.55	59.22	55.63	56.54
	지역세대원	45.51	46.87	49.35	50.23	52.17	53.5	54.43
	직장가입자	47.42	48.27	49.43	49.94	50.98	52.06	52.38
	직장피부양자	45.16	44.47	45.75	48.6	51.01	52.52	53.87
	의료급여세대주	-	-	-	58	67.6	67.07	67.84
	의료급여세대원	-	-	28.5	32.33	57	60.62	60.91
	전체	47.31	47.16	48.5	50.56	52.44	53.37	54.21

주: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함

○ 성별 인구 분포

- <표 5>는 분석대상자 성별 분포를 나타남
- 내국인의 경우, 2021년 기준 남성과 여성 비율이 49.8%, 50.2%로 고르게 분포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2007년 기준 남성이 59%, 여성이 41%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1년 기준 남성이 약 53%, 여성이 47%를 차지
 -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에서만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그 외 가입자격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재외국민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2021년 기준 57%로 높음
 -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에서만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그 외 가입자격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표 5> 가입자별 성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내국인	지역세대주	남	250,461	235,830	219,623	207,500	206,877	210,620	213,635
			68.49%	66.72%	66.03%	65.70%	65.22%	64.41%	63.52%
		녀	115,223	117,631	112,980	108,352	110,307	116,380	122,704
			31.51%	33.28%	33.97%	34.30%	34.78%	35.59%	36.48%
	지역세대원	남	231,289	197,163	169,213	145,922	138,503	132,669	128,851
			39.32%	39.09%	38.83%	38.27%	38.09%	37.61%	37.13%
		녀	356,860	307,161	266,519	235,371	225,105	220,107	218,158
			60.68%	60.91%	61.17%	61.73%	61.91%	62.39%	62.87%
	직장가입자	남	328,827	357,356	399,521	441,003	462,691	487,051	492,914
			66.17%	64.43%	62.24%	60.29%	59.28%	58.38%	58.18%
		녀	168,142	197,294	242,344	290,444	317,763	347,221	354,294
			33.83%	35.57%	37.76%	39.71%	40.72%	41.62%	41.82%
	직장피부양자	남	361,483	384,637	407,249	424,526	414,648	390,635	380,638
			41.13%	41.65%	42.09%	42.26%	42.31%	42.09%	41.92%
		녀	517,313	538,875	560,401	580,078	565,387	537,564	527,438
			58.87%	58.35%	57.91%	57.74%	57.69%	57.91%	58.08%
	의료급여세대주	남	24,185	22,498	21,761	23,370	24,009	25,510	26,860
			45.42%	45.26%	46.00%	46.45%	47.20%	47.85%	48.52%
		녀	29,067	27,215	25,543	26,940	26,855	27,804	28,501
			54.58%	54.74%	54.00%	53.55%	52.80%	52.15%	51.48%
	의료급여세대원	남	14,345	13,051	10,383	9,697	9,531	7,988	7,498
			40.82%	40.66%	40.24%	41.40%	40.81%	41.06%	40.83%
		녀	20,797	19,048	15,417	13,724	13,823	11,465	10,867
			59.18%	59.34%	59.76%	58.60%	59.19%	58.94%	59.17%
	전체	남	1,210,590	1,210,535	1,227,750	1,252,018	1,256,259	1,254,473	1,250,396
			50.07%	50.07%	50.09%	49.94%	49.94%	49.88%	49.77%
		녀	1,207,402	1,207,224	1,223,204	1,254,909	1,259,240	1,260,541	1,261,962
			49.93%	49.93%	49.91%	50.06%	50.06%	50.12%	50.23%
외국인	지역세대주	남	8,826	12,171	23,138	43,544	61,123	183,964	212,073
			43.29%	40.99%	42.03%	43.37%	43.63%	53.24%	49.69%
		녀	11,563	17,518	31,915	56,856	78,956	161,594	214,702
			56.71%	59.01%	57.97%	56.63%	56.37%	46.76%	50.31%

	지역세대원	남	9,472	15,127	26,842	47,834	60,798	55,036	49,318
			18.00%	20.12%	26.84%	33.98%	37.52%	37.08%	36.58%
		녀	43,158	60,072	73,167	92,917	101,222	93,385	85,494
			82.00%	79.88%	73.16%	66.02%	62.48%	62.92%	63.42%
		남	150,269	208,051	248,873	316,802	326,431	330,291	322,226
			82.25%	79.35%	77.48%	75.34%	73.27%	71.70%	71.37%
	직장가입자	녀	32,429	54,158	72,347	103,706	119,080	130,363	129,272
			17.75%	20.65%	22.52%	24.66%	26.73%	28.30%	28.63%
		남	7,254	13,784	27,607	52,232	54,893	59,753	56,946
			17.67%	19.52%	24.03%	29.58%	30.57%	30.60%	29.34%
	직장피부양자	녀	33,800	56,837	87,296	124,359	124,672	135,540	137,168
			82.33%	80.48%	75.97%	70.42%	69.43%	69.40%	70.66%
		남	0	6	15	24	44	67	70
			0.00%	8.96%	9.80%	7.36%	9.03%	10.60%	9.80%
	의료급여세대 주	녀	3	61	138	302	443	565	644
			100.00%	91.04%	90.20%	92.64%	90.97%	89.40%	90.20%
		남	8	78	191	258	249	330	350
			8.42%	5.00%	10.75%	11.85%	11.84%	15.10%	15.60%
	의료급여세대원	녀	87	1,483	1,585	1,919	1,854	1,856	1,893
			91.58%	95.00%	89.25%	88.15%	88.16%	84.90%	84.40%
		남	175,829	249,217	326,666	460,694	503,538	629,441	640,983
			59.23%	56.72%	55.08%	54.80%	54.16%	54.60%	52.97%
	전체	녀	121,040	190,129	266,448	380,059	426,227	523,303	569,173
			40.77%	43.28%	44.92%	45.20%	45.84%	45.40%	47.03%
재외국민	지역세대 주	남	1,373	1,176	933	1,203	1,479	2,927	2,947
			50.18%	47.63%	46.96%	43.13%	41.96%	43.62%	43.05%
		녀	1,363	1,293	1,054	1,586	2,046	3,783	3,899
			49.82%	52.37%	53.04%	56.87%	58.04%	56.38%	56.95%
	지역세대원	남	1,033	1,126	1,053	961	1,120	1,060	1,054
			31.10%	32.17%	33.00%	31.28%	31.09%	32.64%	32.52%
		녀	2,289	2,374	2,138	2,111	2,482	2,188	2,187
			68.90%	67.83%	67.00%	68.72%	68.91%	67.36%	67.48%
	직장가입자	남	2,913	3,659	3,267	3,982	4,616	5,196	5,425
			69.54%	66.39%	62.97%	60.14%	57.93%	57.08%	56.29%
		녀	1,276	1,852	1,921	2,639	3,352	3,907	4,212
			30.46%	33.61%	37.03%	39.86%	42.07%	42.92%	43.71%
	직장피부양자	남	1,745	2,638	2,763	2,064	2,474	1,971	1,838
			27.35%	29.61%	30.73%	28.27%	29.11%	28.76%	28.26%
		녀	4,635	6,271	6,229	5,237	6,025	4,882	4,665
			72.65%	70.39%	69.27%	71.73%	70.89%	71.24%	71.74%
	의료급여세대 주	남	-	-	-	3	24	61	86
			-	-	-	42.86%	42.11%	42.07%	41.15%
		녀	-	-	-	4	33	84	123
			-	-	-	57.14%	57.89%	57.93%	58.85%
	의료급여세대원	남	-	-	-	3	4	8	13
			-	-	-	50.00%	36.36%	30.77%	38.24%
		녀	-	-	2	3	7	18	21
			-	-	100.00%	50.00%	63.64%	69.23%	61.76%
	전체	남	7,064	8,599	8,016	8,216	9,717	11,223	11,363
			42.49%	42.17%	41.40%	41.50%	41.07%	43.02%	42.93%
		녀	9,563	11,790	11,344	11,580	13,945	14,862	15,107
			57.51%	57.83%	58.60%	58.50%	58.93%	56.98%	57.07%

주: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함

○ 산정보험료분위

- － <표 6>은 분석대상자 산정보험료 분위 현황을 나타냄
 -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두 가입유형만 정리
- － 내국인
 - 지역세대주의 경우, 분위별 점유율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2021년 기준 1분위와 5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보임
 - 직장가입자의 경우, 4-5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 외국인
 - 지역세대주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2-3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4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임
 -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7년에는 1-2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2-3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 재외국민
 - 지역세대주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3분위와 5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4-5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보임
 - 직장가입자의 경우, 5분위에서 큰 점유율을 보이거나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1분위의 점유율이 2007년 11.29%에서 2021년 24.6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6> 가입자격별 산정보험료 5분위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내 국 인	지역세대주	1	65,396	64,743	65,217	56,575	80,226	68,590	70,822
			17.88	18.32	19.61	17.91	25.29	20.98	21.06
		2	73,651	71,313	63,034	62,478	38,786	53,534	53,898
			20.14	20.18	18.95	19.78	12.23	16.37	16.02
		3	72,653	69,381	63,962	60,415	61,911	64,883	67,614
			19.87	19.63	19.23	19.13	19.52	19.84	20.1
		4	72,859	68,611	65,433	62,847	60,866	57,152	61,084
			19.92	19.41	19.67	19.9	19.19	17.48	18.16
		5	71,906	69,568	65,988	64,440	65,612	69,249	71,753
			19.66	19.68	19.84	20.4	20.69	21.18	21.33
	직장가입자	·	9,219	9,845	8,969	9,097	9,783	13,592	11,168
			2.52	2.76	2.70	2.88	3.08	4.16	3.32
		1	77,825	84,262	100,609	118,303	144,451	147,729	145,164
			15.66	15.19	15.67	16.17	18.51	17.71	17.13
		2	82,370	93,096	115,934	124,887	120,883	137,984	145,040
			16.57	16.78	18.06	17.07	15.49	16.54	17.12
		3	98,438	110,818	124,352	141,388	152,325	159,027	163,061
			19.81	19.98	19.37	19.33	19.52	19.06	19.25
		4	112,580	123,660	140,488	160,014	165,472	177,297	180,456
			22.65	22.30	21.89	21.88	21.20	21.25	21.3

외국인		5	115,481	129,100	143,804	168,214	177,722	188,825	191,721
			23.24	23.28	22.40	23.00	22.77	22.63	22.63
		·	10,275	13,714	16,678	18,641	19,601	23,410	21,766
			2.07	2.47	2.60	2.55	2.51	2.81	2.569
	지역세대주	1	7,396	7,786	12,440	15,725	28,934	29,144	31,661
			36.27	26.23	22.6	15.66	20.66	8.43	7.42
		2	2,962	6,339	14,050	21,741	13,623	29,997	132,846
			14.53	21.35	25.52	21.65	9.73	8.68	31.13
		3	6,032	11,122	23,306	51,343	16,166	23,830	26,807
			29.58	37.46	42.33	51.14	11.54	6.90	6.28
		4	1,145	1,426	1,891	5,457	73,571	222,347	209,935
			5.62	4.80	3.44	5.44	52.52	64.34	49.19
		5	997	1,121	1,147	2,760	3,820	9,035	9,912
			4.89	3.78	2.08	2.75	2.73	2.62	2.32
		·	1,857	1,895	2,219	3,374	3,965	31,205	15,614
			9.11	6.38	4.03	3.36	2.83	9.03	3.66
	직장가입자	1	82,903	76,050	73,152	81,908	97,642	80,562	67,181
			45.38	29.00	22.77	19.48	21.92	17.49	14.88
		2	61,005	95,250	118,674	134,256	115,795	101,743	100,374
			33.39	36.33	36.94	31.93	25.99	22.09	22.23
		3	17,705	57,332	89,908	147,436	153,851	142,337	143,115
			9.69	21.87	27.99	35.06	34.53	30.90	31.70
		4	8,445	15,006	19,304	32,942	51,591	87,724	95,019
			4.62	5.72	6.01	7.83	11.58	19.04	21.05
		5	6,876	9,887	12,935	15,300	16,457	19,927	24,247
			3.76	3.77	4.03	3.64	3.69	4.33	5.37
		·	5,764	8,684	7,247	8,666	10,175	28,361	21,562
			3.16	3.31	2.26	2.06	2.28	6.16	4.78
재외국민	지역세대주	1	36	51	52	99	225	518	541
			1.32	2.07	2.62	3.55	6.38	7.72	7.90
		2	39	82	67	174	127	335	521
			1.43	3.32	3.37	6.24	3.60	4.99	7.61
		3	1437	1273	1026	1181	214	513	401
			52.52	51.56	51.64	42.34	6.07	7.65	5.86
		4	298	368	328	602	2058	3650	3528
			10.89	14.90	16.51	21.58	58.38	54.40	51.53
		5	403	460	423	678	794	1412	1513
			14.73	18.63	21.29	24.31	22.52	21.04	22.10
		·	523	235	91	55	107	282	342
			19.12	9.52	4.58	1.97	3.04	4.20	5.00
	직장가입자	1	473	802	845	1329	1990	2211	2376
			11.29	14.55	16.29	20.07	24.97	24.29	24.65
		2	383	567	582	866	940	1133	1286
			9.14	10.29	11.22	13.08	11.80	12.45	13.34
		3	620	762	770	1015	1174	1212	1379
			14.80	13.83	14.84	15.33	14.73	13.31	14.31
		4	726	964	851	1124	1304	1633	1749
			17.33	17.49	16.40	16.98	16.37	17.94	18.15
		5	1851	2243	2005	2131	2378	2608	2579
			44.19	40.70	38.65	32.19	29.84	28.65	26.76
		·	136	173	135	156	182	306	268
			3.25	3.14	2.60	2.36	2.28	3.36	2.78

주: 1)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함

2) .으로 구분된 대상자들은 산정보험료 분위 정보가 부정확하여 별도 표시

○ 거주지역별 인구 분포

- <표 7>은 분석대상자 거주지역별 인구분포 현황을 나타냄
- 내국인은 2021년 기준 50.25%는 수도권에, 49.75%는 비수도권에 거주
 -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 53.9%로 수도권에 거주하며, 지역세대주 47.73%, 지역세대원 49.85%, 직장피부양자 48.78%, 의료급여세대주 39.83%, 의료급여세대원 39.86%가 수도권 거주
- 외국인은 2021년 기준 66.46%가 수도권에 거주
 - 2021년 기준 지역세대주 68.22%, 지역세대원 69.23%, 직장가입자 63.37%, 직장피부양자 68.28%, 의료급여세대주 44.12%, 의료급여세대원 38.92%가 수도권 거주
 -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 재외국민은 2021년 기준 75%가 수도권에 거주
 - 지역세대주 70.46%, 지역세대원 69.85%, 직장가입자 79.52%, 직장피부양자 76.18%, 의료급여세대주 60.77%, 의료급여세대원 61.76%가 수도권 거주
 -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표 7> 가입자격별 거주지역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내 국 인	지역세대주	수도권	183,486	175,959	162,622	152,106	150,515	155,485	160,520
			50.18%	49.78%	48.89%	48.16%	47.45%	47.55%	47.73%
		비수도권	182,198	177,502	169,981	163,746	166,669	171,515	175,819
			49.82%	50.22%	51.11%	51.84%	52.55%	52.45%	52.27%
	지역세대원	수도권	288,029	250,326	215,819	187,233	178,182	174,286	172,995
			48.97%	49.64%	49.53%	49.10%	49.00%	49.40%	49.85%
		비수도권	300,120	253,998	219,913	194,060	185,426	178,490	174,014
			51.03%	50.36%	50.47%	50.90%	51.00%	50.60%	50.15%
	직장가입자	수도권	259,997	294,564	342,327	387,415	417,358	447,614	456,540
			52.32%	53.11%	53.33%	52.97%	53.48%	53.65%	53.89%
		비수도권	236,972	260,086	299,538	344,032	363,096	386,658	390,668
			47.68%	46.89%	46.67%	47.03%	46.52%	46.35%	46.11%
	직장피부양자	수도권	415,952	447,171	470,945	486,765	474,677	451,059	442,937
			47.33%	48.42%	48.67%	48.45%	48.43%	48.60%	48.78%
		비수도권	462,844	476,341	496,705	517,839	505,358	477,140	465,139
			52.67%	51.58%	51.33%	51.55%	51.57%	51.40%	51.22%
	의료급여세대주	수도권	16,529	16,101	15,898	18,652	19,292	21,211	22,049
			31.04%	32.39%	33.61%	37.07%	37.93%	39.79%	39.83%
		비수도권	36,723	33,612	31,406	31,658	31,572	32,103	33,312
			68.96%	67.61%	66.39%	62.93%	62.07%	60.21%	60.17%
	의료급여세대원	수도권	10,766	9,927	8,289	8,369	8,278	7,687	7,320
			30.64%	30.93%	32.13%	35.73%	35.45%	39.52%	39.86%
		비수도권	24,376	22,172	17,511	15,052	15,076	11,766	11,045
			69.36%	69.07%	67.87%	64.27%	64.55%	60.48%	60.14%
	전체	수도권	1,174,759	1,194,048	1,215,900	1,240,540	1,248,302	1,257,342	1,262,361
			48.58%	49.39%	49.61%	49.48%	49.62%	49.99%	50.25%
		비수도권	1,243,233	1,223,711	1,235,054	1,266,387	1,267,197	1,257,672	1,249,997

외국인	지역세대주	수도권	51.42%	50.61%	50.39%	50.52%	50.38%	50.01%	49.75%
			11,177	17,709	37,511	81,519	113,492	255,174	291,156
		비수도권	54.82%	59.65%	68.14%	81.19%	81.02%	73.84%	68.22%
			9,212	11,980	17,542	18,881	26,587	90,384	135,619
	지역세대원	수도권	45.18%	40.35%	31.86%	18.81%	18.98%	26.16%	31.78%
			27,106	40,895	62,620	99,641	118,931	104,442	93,326
		비수도권	51.50%	54.38%	62.61%	70.79%	73.41%	70.37%	69.23%
			25,524	34,304	37,389	41,110	43,089	43,979	41,486
	직장가입자	수도권	48.50%	45.62%	37.39%	29.21%	26.59%	29.63%	30.77%
			95,786	134,385	154,242	227,781	264,068	282,952	286,101
		비수도권	52.43%	51.25%	48.02%	54.17%	59.27%	61.42%	63.37%
			86,912	127,824	166,978	192,727	181,443	177,702	165,397
	직장피부양자	수도권	47.57%	48.75%	51.98%	45.83%	40.73%	38.58%	36.63%
			24,843	43,065	73,777	117,415	119,221	130,602	132,538
		비수도권	60.51%	60.98%	64.21%	66.49%	66.39%	66.87%	68.28%
			16,211	27,556	41,126	59,176	60,344	64,691	61,576
	의료급여세대주	수도권	39.49%	39.02%	35.79%	33.51%	33.61%	33.13%	31.72%
			0	7	31	129	204	291	315
		비수도권	0.00%	10.45%	20.26%	39.57%	41.89%	46.04%	44.12%
			3	60	122	197	283	341	399
	의료급여세대원	수도권	100.00%	89.55%	79.74%	60.43%	58.11%	53.96%	55.88%
			9	337	453	697	733	824	873
		비수도권	9.47%	21.59%	25.51%	32.02%	34.85%	37.69%	38.92%
			86	1,224	1,323	1,480	1,370	1,362	1,370
	전체	수도권	90.53%	78.41%	74.49%	67.98%	65.15%	62.31%	61.08%
			158,921	236,398	328,634	527,182	616,649	774,285	804,309
		비수도권	53.53%	53.81%	55.41%	62.70%	66.32%	67.17%	66.46%
			137,948	202,948	264,480	313,571	313,116	378,459	405,847
재외국민	지역세대주	수도권	46.47%	46.19%	44.59%	37.30%	33.68%	32.83%	33.54%
			1,983	1,739	1,486	2,003	2,486	4,771	4,824
		비수도권	72.48%	70.43%	74.79%	71.82%	70.52%	71.10%	70.46%
			753	730	501	786	1,039	1,939	2,022
	지역세대원	수도권	27.52%	29.57%	25.21%	28.18%	29.48%	28.90%	29.54%
			2,566	2,638	2,376	2,248	2,581	2,270	2,264
		비수도권	77.24%	75.37%	74.46%	73.18%	71.65%	69.89%	69.85%
			756	862	815	824	1,021	978	977
	직장가입자	수도권	22.76%	24.63%	25.54%	26.82%	28.35%	30.11%	30.15%
			3,218	4,167	4,197	5,325	6,356	7,201	7,663
		비수도권	76.82%	75.61%	80.90%	80.43%	79.77%	79.11%	79.52%
			971	1,344	991	1,296	1,612	1,902	1,974
	직장피부양자	수도권	23.18%	24.39%	19.10%	19.57%	20.23%	20.89%	20.48%
			5,243	7,300	7,371	5,727	6,593	5,318	4,954
		비수도권	82.18%	81.94%	81.97%	78.44%	77.57%	77.60%	76.18%
			1,137	1,609	1,621	1,574	1,906	1,535	1,549
	의료급여세대주	수도권	17.82%	18.06%	18.03%	21.56%	22.43%	22.40%	23.82%
			-	-	-	6	32	81	127
		비수도권	-	-	-	85.71%	56.14%	55.86%	60.77%
			-	-	-	1	25	64	82
	의료급여세대원	수도권	-	-	-	14.29%	43.86%	44.14%	39.23%
			-	-	-	3	6	18	21
		비수도권	-	-	-	50.00%	54.55%	69.23%	61.76%
			-	-	2	3	5	8	13

			-	-	100.00%	50.00%	45.45%	30.77%	38.24%
전체	수도권		13,010	15,844	15,430	15,312	18,054	19,659	19,853
			78.25%	77.71%	79.70%	77.35%	76.30%	75.37%	75.00%
	비수도권		3,617	4,545	3,930	4,484	5,608	6,426	6,617
			21.75%	22.29%	20.30%	22.65%	23.70%	24.63%	25.00%

주: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함

○ 체류자격

- <표 8>은 분석대상자 체류자격 현황을 나타냄
- 체류자격은 각 연도별 상위 5위들을 중심으로 정리
- 외국인 체류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격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가입자격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류자격 현황에도 변화가 있음
 - 지역세대주의 경우, 2007년 방문취업(H2) 5%, 영주(F5) 7%, 외국국적동포(F4) 11%, 그 외 16%, 방문동거(F1) 26%, 거주(F2) 35% 순으로 차지하였으며, 2021년 결혼이민(F6) 5%, 영주(F5) 10%, 방문취업(H2) 13%, 그 외 15%, 유학(외국인)(D2) 23%, 외국국적동포(F4) 34% 순으로 차지
 - 지역세대원의 경우, 2007년 동반(F3) 2%, 외국국적동포(F4) 4%, 그 외 4%, 영주(F5) 7%, 방문동거(F1) 11%, 거주(F2) 73% 순으로 차지하였으며, 2021년 기준 방문취업(H2) 7%, 그 외 10%, 영주(F5) 12%, 방문동거(F1) 22%, 결혼이민(F6) 22%, 외국국적동포(F4) 27% 순으로 차지
 -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7년 연수취업(E8) 4%, 거주(F2) 4%, 회화지도(E2) 6%, 그 외 18%, 산업연수생(D3) 31%, 비전문취업(E9) 37% 순으로 차지하였으며, 2021년 결혼이민(F6) 7%, 방문취업(H2) 9%, 영주(F5) 10%, 그 외 13%, 외국국적동포(F4) 28%, 비전문취업(E9) 33% 순으로 차지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2007년 기타(99) 7%, 외국국적동포(F4) 8%, 그 외 8%, 동반(F3) 9%, 방문동거(F1) 13%, 거주(F2) 55% 순으로 차지했으며, 2021년 거주(F2) 6%, 영주(F5) 12%, 그 외 12%, 결혼이민(F6) 18%, 방문동거(F1) 19%, 외국국적동포(F4) 33%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세대주는 2007년 방문동거(F1), 거주(F2) 순으로 차지했으며, 2021년 외국국적동포(F4) 2%, 그 외 3%, 난민 등 (C7) 4%, 영주(F5) 15%, 거주(F2) 20%, 결혼이민(F6) 56%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2007년 산업연수생(D3), 영주(F5),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거주(F2) 순으로 차지하였으며, 2021년 난민 등(C7) 2%, 방문동거(F1) 2%, 그 외 4%, 영주(F5) 9%, 거주(F2) 23%, 결혼이민(F6) 60% 순으로 차지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C0), 유학(재외국민, C9), 유학(재외동포, C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므로 연도 및 가입자구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으나 대부분 재외국민(C0) 체류자격에 해당

<표 8> 가입자격별 체류자격 분포 현황 (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외국인	지역세대주	H2 방문취업	1,064 (0.05)	F1 방문동거	3,213 (0.11)	F1 방문동거	5,112 (0.09)	F6 결혼이민	6,433 (0.06)	F6 결혼이민	8,510 (0.06)	F1 방문동거	18,298 (0.05)	F6 결혼이민	19,668 (0.05)
		F5 영주	1,519 (0.07)	F5 영주	3,125 (0.11)	F4 외국국적동포	9,389 (0.17)	F1 방문동거	6,607 (0.07)	F1 방문동거	9,521 (0.07)	E9 비전문취업	20,145 (0.06)	F5 영주	44,474 (0.1)
		F4 외국국적동포	2,325 (0.11)	F4 외국국적동포	4,163 (0.14)	F2 거주	10,282 (0.19)	H2 방문취업	22,667 (0.23)	H2 방문취업	26,753 (0.19)	F5 영주	42,879 (0.12)	H2 방문취업	56,491 (0.13)
		F1 방문동거	5,246 (0.26)	H2 방문취업	5,132 (0.17)	F5 영주	10,460 (0.19)	F5 영주	26,136 (0.26)	F5 영주	32,817 (0.23)	H2 방문취업	88,212 (0.26)	D2 유학(외국인)	97,012 (0.23)
		F2 거주	7,043 (0.35)	F2 거주	10,128 (0.34)	H2 방문취업	12,785 (0.23)	F4 외국국적동포	28,466 (0.28)	F4 외국국적동포	52,154 (0.37)	F4 외국국적동포	133,911 (0.39)	F4 외국국적동포	144,796 (0.34)
		그 외	3,192 (0.16)	그 외	3,928 (0.13)	그 외	7,025 (0.13)	그 외	10,091 (0.1)	그 외	10,324 (0.07)	그 외	42,113 (0.12)	그 외	64,334 (0.15)
	지역세대원	F3 동반	864 (0.02)	F4 외국국적동포	3,746 (0.05)	F5 영주	9,919 (0.1)	F5 영주	20,363 (0.14)	H2 방문취업	19,799 (0.12)	H2 방문취업	15,759 (0.11)	H2 방문취업	8,887 (0.07)
		F4 외국국적동포	1,999 (0.04)	F5 영주	6,163 (0.08)	F6 결혼이민	11,216 (0.11)	F1 방문동거	20,846 (0.15)	F1 방문동거	24,897 (0.15)	F5 영주	17,795 (0.12)	F5 영주	15,911 (0.12)
		F5 영주	3,785 (0.07)	H2 방문취업	5,697 (0.08)	F1 방문동거	12,684 (0.13)	H2 방문취업	22,053 (0.16)	F5 영주	24,345 (0.15)	F6 결혼이민	31,891 (0.21)	F1 방문동거	30,304 (0.22)
		F1 방문동거	5,806 (0.11)	F1 방문동거	7,512 (0.1)	H2 방문취업	12,936 (0.13)	F4 외국국적동포	26,980 (0.19)	F6 결혼이민	33,889 (0.21)	F1 방문동거	34,435 (0.23)	F6 결혼이민	29,477 (0.22)
		F2 거주	38,293 (0.73)	F2 거주	48,886 (0.65)	F2 거주	38,378 (0.38)	F6 결혼이민	35,017 (0.25)	F4 외국국적동포	46,227 (0.29)	F4 외국국적동포	35,524 (0.24)	F4 외국국적동포	36,589 (0.27)
		그 외	1,883 (0.04)	그 외	3,195 (0.04)	그 외	14,876 (0.15)	그 외	15,492 (0.11)	그 외	12,863 (0.08)	그 외	13,017 (0.09)	그 외	13,644 (0.1)
	직장가입자	E8 연수취업	6,930 (0.04)	F2 거주	11,993 (0.05)	F2 거주	16,250 (0.05)	F2 거주	14,271 (0.03)	F6 결혼이민	22,423 (0.05)	F6 결혼이민	27,876 (0.06)	F6 결혼이민	29,541 (0.07)
		F2 거주	7,337 (0.04)	E2 회화지도	18,128 (0.07)	E2 회화지도	16,273 (0.05)	F5 영주	17,284 (0.04)	F5 영주	34,792 (0.08)	F5 영주	41,922 (0.09)	H2 방문취업	40,527 (0.09)
		E2 회화지도	11,171 (0.06)	D3 산업연수생	24,999 (0.1)	F4 외국국적동포	28,780 (0.09)	F4 외국국적동포	59,111 (0.14)	H2 방문취업	43,779 (0.1)	H2 방문취업	46,625 (0.1)	F5 영주	46,422 (0.1)
		D3 산업연수생	56,624 (0.31)	H2 방문취업	38,789 (0.15)	H2 방문취업	56,086 (0.17)	H2 방문취업	65,462 (0.16)	F4 외국국적동포	94,328 (0.21)	F4 외국국적동포	111,236 (0.24)	F4 외국국적동포	126,910 (0.28)
		E9 비전문취업	68,278 (0.37)	E9 비전문취업	127,756 (0.49)	E9 비전문취업	152,866 (0.48)	E9 비전문취업	196,766 (0.47)	E9 비전문취업	195,966 (0.44)	E9 비전문취업	172,367 (0.37)	E9 비전문취업	147,441 (0.33)
		그 외	32,358 (0.18)	그 외	40,544 (0.15)	그 외	50,965 (0.16)	그 외	67,614 (0.16)	그 외	54,223 (0.12)	그 외	60,628 (0.13)	그 외	60,657 (0.13)

	직장피부양자	99 기타	2,995 (0.07)	F3 동반	5,002 (0.07)	F6 결혼이민	11,668 (0.1)	F2 거주	19,753 (0.11)	H2 방문취업	16,605 (0.09)	H2 방문취업	16,584 (0.08)	F2 거주	11,711 (0.06)
		F4 외국취업동포	3,404 (0.08)	H2 방문취업	7,345 (0.1)	F1 방문동거	16,445 (0.14)	F6 결혼이민	25,940 (0.15)	F5 영주	22,819 (0.13)	F5 영주	21,891 (0.11)	F5 영주	22,613 (0.12)
		F3 동반	3,590 (0.09)	F4 외국취업동포	7,847 (0.11)	F4 외국취업동포	17,663 (0.15)	H2 방문취업	30,058 (0.17)	F1 방문동거	29,858 (0.17)	F6 결혼이민	37,650 (0.19)	F6 결혼이민	35,787 (0.18)
		F1 방문동거	5,499 (0.13)	F1 방문동거	8,618 (0.12)	H2 방문취업	18,027 (0.16)	F1 방문동거	32,879 (0.19)	F6 결혼이민	35,530 (0.2)	F1 방문동거	39,410 (0.2)	F1 방문동거	36,488 (0.19)
		F2 거주	22,474 (0.55)	F2 거주	34,872 (0.49)	F2 거주	29,959 (0.26)	F4 외국취업동포	41,967 (0.24)	F4 외국취업동포	56,587 (0.32)	F4 외국취업동포	59,829 (0.31)	F4 외국취업동포	64,413 (0.33)
		그 외	3,092 (0.08)	그 외	6,937 (0.1)	그 외	21,141 (0.18)	그 외	25,994 (0.15)	그 외	18,166 (0.1)	그 외	19,929 (0.1)	그 외	23,102 (0.12)
	의료급여세대주	F1 방문동거	1 (0.33)	99 기타	2 (0.03)	H2 방문취업	2 (0.01)	F1 방문동거	8 (0.02)	H2 방문취업	5 (0.01)	F1 방문동거	10 (0.02)	F4 외국취업동포	17 (0.02)
		F2 거주	2 (0.67)	F1 방문동거	3 (0.04)	F6 결혼이민	3 (0.02)	F5 영주	26 (0.08)	F1 방문동거	10 (0.02)	C7 난민등	25 (0.04)	C7 난민등	29 (0.04)
		-	-	F5 영주	3 (0.04)	F5 영주	6 (0.04)	F6 결혼이민	109 (0.33)	F5 영주	62 (0.13)	F5 영주	90 (0.14)	F5 영주	110 (0.15)
		-	-	F2 거주	57 (0.85)	F1 방문동거	8 (0.05)	F2 거주	171 (0.52)	F2 거주	174 (0.36)	F2 거주	152 (0.24)	F2 거주	140 (0.2)
		-	-	그 외	2 (0.03)	F2 거주	134 (0.88)	그 외	12 (0.04)	F6 결혼이민	223 (0.46)	F6 결혼이민	333 (0.53)	F6 결혼이민	399 (0.56)
		-	-	-	-	-	-	-	-	그 외	13 (0.03)	그 외	22 (0.03)	그 외	19 (0.03)
	의료급여세대원	D3 산업연수생	1 (0.01)	99 기타	6 (0.004)	H2 방문취업	42 (0.02)	H2 방문취업	51 (0.02)	H2 방문취업	35 (0.02)	C7 난민등	33 (0.02)	C7 난민등	43 (0.02)
		F5 영주	1 (0.01)	H2 방문취업	9 (0.01)	F5 영주	51 (0.03)	F1 방문동거	64 (0.03)	F1 방문동거	45 (0.02)	F1 방문동거	44 (0.02)	F1 방문동거	50 (0.02)
		E9 비전문취업	2 (0.02)	F5 영주	30 (0.02)	F6 결혼이민	58 (0.03)	F5 영주	176 (0.08)	F5 영주	193 (0.09)	F5 영주	183 (0.08)	F5 영주	195 (0.09)
		F1 방문동거	11 (0.12)	F1 방문동거	77 (0.05)	F1 방문동거	74 (0.04)	F6 결혼이민	712 (0.33)	F2 거주	791 (0.38)	F2 거주	588 (0.27)	F2 거주	516 (0.23)
		F2 거주	80 (0.84)	F2 거주	1,425 (0.91)	F2 거주	1,515 (0.85)	F2 거주	1,102 (0.51)	F6 결혼이민	960 (0.46)	F6 결혼이민	1,238 (0.57)	F6 결혼이민	1,347 (0.6)
		-	-	그 외	14 (0.01)	그 외	36 (0.02)	그 외	72 (0.03)	그 외	79 (0.04)	그 외	100 (0.05)	그 외	92 (0.04)

주: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함

○ 국적

- － <표 9>은 분석대상자 국적 현황을 나타냄
- － 국적의 경우, 가입자형태 및 연도별 상위 5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리
- －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지역세대주는 러시아 2%, 미국 3%, 우즈베키스탄 5%, 베트남 11%, 그 외 19%, 중국 59% 순으로 차지
 - 지역세대원은 미국 3%, 러시아 3%, 우즈베키스탄 4%, 베트남 11%, 그 외 19%, 중국 61% 순으로 차지
 - 직장가입자는 네팔 5%, 미국 5%, 캄보디아 5%, 베트남 7%, 그 외 35%, 중국 43% 순으로 차지
 - 직장피부양자는 일본 3%, 우즈베키스탄 3%, 미국 4%, 베트남 12%, 그 외 18%, 중국 60% 순으로 차지함
 - 의료급여세대주는 캄보디아 4%, 일본 12%, 필리핀 15%, 중국 19%, 베트남 24%, 그 외 25%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세대원은 베트남 14%, 그 외 15%, 일본 18%, 캄보디아 20%, 필리핀 27%, 중국 28% 순으로 차지
- － 재외국민의 출신 국가는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
 - 2021년 기준, 지역세대주는 브라질 3%, 뉴질랜드 7%, 캐나다 7%, 그 외 23%, 일본 27%, 미국 33% 순으로 차지
 - 지역세대원은 브라질 4%, 캐나다 8%, 뉴질랜드 9%, 일본 18%, 그 외 25%, 미국 37% 순으로 차지
 - 직장가입자는 호주 3%, 뉴질랜드 12%, 캐나다 14%, 일본 16%, 그 외 19%, 미국 35% 순으로 차지
 - 직장피부양자는 호주 2%, 뉴질랜드 12%, 캐나다 13%, 일본 17%, 그 외 19%, 미국 37%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세대주는 뉴질랜드 3%, 캐나다 3%, 브라질 8%, 그 외 12%, 일본 28%, 미국 46%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세대원은 아르헨티나 9%, 브라질 15%, 일본 24%, 그 외 24%, 미국 29% 순으로 차지

<표 9> 가입자격별 국가 분포 현황 (상위 5위)

(단위: 명, (%))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외국인	지역 세 대 주	JP 일본	629 (0.03)	CN 캐나다	743 (0.03)	CN 캐나다	929 (0.02)	MP 몽골	1,233 (0.01)	UZ 우즈베키스탄	2,143 (0.02)	US 미국	9,786 (0.03)	RU 러시아	10,293 (0.02)
		SV 베트남	782 (0.04)	SV 베트남	1,114 (0.04)	SV 베트남	1,495 (0.03)	ZI 대만	2,263 (0.02)	ZI 대만	2,257 (0.02)	그 외	54,320 (0.16)	US 미국	11,400 (0.03)
		US 미국	2,704 (0.13)	ZI 대만	2,661 (0.09)	ZI 대만	2,427 (0.04)	SV 베트남	2,913 (0.03)	SV 베트남	4,676 (0.03)	UZ 우즈베키스탄	15,162 (0.04)	UZ 우즈베키스탄	21,186 (0.05)
		ZI 대만	2,547 (0.12)	US 미국	4,033 (0.14)	US 미국	4,429 (0.08)	US 미국	4,549 (0.05)	US 미국	4,830 (0.03)	SV 베트남	19,843 (0.06)	SV 베트남	48,757 (0.11)
		PC 중국	10,733 (0.53)	PC 중국	16,983 (0.57)	PC 중국	39,929 (0.73)	PC 중국	80,550 (0.8)	PC 중국	113,385 (0.81)	PC 중국	235,363 (0.68)	PC 중국	253,814 (0.59)
		그 외	2,994 (0.15)	그 외	4,155 (0.14)	그 외	5,844 (0.11)	그 외	8,892 (0.09)	그 외	12,788 (0.09)	RU 러시아	11,084 (0.03)	그 외	81,325 (0.19)
	지역 세 대 원	US 미국	2,875 (0.05)	US 미국	4,253 (0.06)	JP 일본	4,219 (0.04)	JP 일본	3,559 (0.03)	JP 일본	3,326 (0.02)	US 미국	4,353 (0.03)	US 미국	4,145 (0.03)
		JP 일본	4,062 (0.08)	JP 일본	4,309 (0.06)	ZI 대만	4,208 (0.04)	US 미국	4,914 (0.03)	PF 필리핀	3,237 (0.02)	RU 러시아	3,734 (0.03)	RU 러시아	3,703 (0.03)
		ZI 대만	5,853 (0.11)	ZI 대만	5,297 (0.07)	US 미국	4,747 (0.05)	PF 필리핀	3,708 (0.03)	US 미국	4,881 (0.03)	UZ 우즈베키스탄	5,725 (0.04)	UZ 우즈베키스탄	5,860 (0.04)
		SV 베트남	9,829 (0.19)	SV 베트남	15,573 (0.21)	SV 베트남	15,501 (0.15)	SV 베트남	16,703 (0.12)	SV 베트남	15,844 (0.1)	SV 베트남	16,218 (0.11)	SV 베트남	14,162 (0.11)
		PC 중국	21,419 (0.41)	PC 중국	32,345 (0.43)	PC 중국	55,346 (0.55)	PC 중국	94,425 (0.67)	PC 중국	114,615 (0.71)	PC 중국	93,560 (0.63)	PC 중국	81,597 (0.61)
		그 외	8,592 (0.16)	그 외	13,422 (0.18)	그 외	15,988 (0.16)	그 외	17,442 (0.12)	그 외	20,117 (0.12)	그 외	24,831 (0.17)	그 외	25,345 (0.19)
	직 장 가 입 자	IE 인도네시아	15,295 (0.08)	KT 태국	19,269 (0.07)	KT 태국	16,146 (0.05)	KC 네팔	24,064 (0.06)	IE 인도네시아	23,337 (0.05)	US 미국	20,601 (0.04)	KC 네팔	24,455 (0.05)
		KT 태국	20,623 (0.11)	IE 인도네시아	19,764 (0.08)	US 미국	19,239 (0.06)	IE 인도네시아	26,260 (0.06)	KC 네팔	28,313 (0.06)	DI 캄보디아	21,692 (0.05)	US 미국	21,321 (0.05)
		PF 필리핀	22,353 (0.12)	PF 필리핀	20,548 (0.08)	IE 인도네시아	20,159 (0.06)	DI 캄보디아	24,449 (0.06)	DI 캄보디아	24,530 (0.06)	KC 네팔	27,980 (0.06)	DI 캄보디아	20,722 (0.05)
		SV 베트남	26,179 (0.14)	PC 중국	65,552 (0.25)	SV 베트남	31,935 (0.1)	SV 베트남	30,778 (0.07)	SV 베트남	32,427 (0.07)	SV 베트남	34,221 (0.07)	SV 베트남	31,468 (0.07)
		PC 중국	40,252 (0.22)	SV 베트남	41,961 (0.16)	PC 중국	101,843 (0.32)	PC 중국	145,359 (0.35)	PC 중국	157,639 (0.35)	PC 중국	181,400 (0.39)	PC 중국	194,749 (0.43)
		그 외	57,996 (0.32)	그 외	95,115 (0.36)	그 외	131,898 (0.41)	그 외	169,598 (0.4)	그 외	179,265 (0.4)	그 외	174,760 (0.38)	그 외	158,783 (0.35)
		ZI 대만	2,839 (0.07)	ZI 대만	3,347 (0.05)	PF 필리핀	4,142 (0.04)	CN 캐나다	4,847 (0.03)	PF 필리핀	4,247 (0.02)	UZ 우즈베키	5,650 (0.03)	JP 일본	6,389 (0.03)

재외국민	직장피부양자										스탄				
		JP 일본	4,299 (0.1)	JP 일본	5,145 (0.07)	JP 일본	6,295 (0.05)	JP 일본	6,620 (0.04)	JP 일본	6,502 (0.04)	JP 일본	6,303 (0.03)	UZ 우즈베키스탄 6,460 (0.03)	
		SV 베트남	6,082 (0.15)	US 미국	8,917 (0.13)	US 미국	9,782 (0.09)	US 미국	10,152 (0.06)	US 미국	8,650 (0.05)	US 미국	7,940 (0.04)	US 미국 7,314 (0.04)	
		US 미국	6,281 (0.15)	SV 베트남	11,560 (0.16)	SV 베트남	15,960 (0.14)	SV 베트남	23,384 (0.13)	SV 베트남	23,576 (0.13)	SV 베트남	27,061 (0.14)	SV 베트남 23,012 (0.12)	
		PC 중국	12,793 (0.31)	PC 중국	26,650 (0.38)	PC 중국	57,071 (0.5)	PC 중국	103,597 (0.59)	PC 중국	106,547 (0.59)	PC 중국	114,683 (0.59)	PC 중국 115,673 (0.6)	
	그 외	8,760 (0.21)	그 외	15,002 (0.21)	그 외	21,653 (0.19)	그 외	27,991 (0.16)	그 외	30,043 (0.17)	그 외	33,656 (0.17)	그 외 35,266 (0.18)		
	의료급여세대주	JP 일본	1 (0.33)	DI 캄보디아	4 (0.06)	DI 캄보디아	12 (0.08)	DI 캄보디아	24 (0.07)	DI 캄보디아	30 (0.06)	DI 캄보디아	31 (0.05)	DI 캄보디아	30 (0.04)
				PF 필리핀	7 (0.1)	JP 일본	15 (0.1)	PF 필리핀	33 (0.1)	PF 필리핀	64 (0.13)	JP 일본	86 (0.14)	JP 일본	87 (0.12)
		PC 중국	2 (0.67)	JP 일본	10 (0.15)	PC 중국	26 (0.17)	JP 일본	52 (0.16)	JP 일본	74 (0.15)	PF 필리핀	90 (0.14)	PF 필리핀	106 (0.15)
				PC 중국	15 (0.22)	PF 필리핀	18 (0.12)	PC 중국	74 (0.23)	PC 중국	100 (0.21)	PC 중국	112 (0.18)	PC 중국	139 (0.19)
		그 외	0 (0)	SV 베트남	18 (0.27)	SV 베트남	50 (0.33)	SV 베트남	91 (0.28)	SV 베트남	134 (0.28)	SV 베트남	166 (0.26)	SV 베트남	172 (0.24)
				그 외	13 (0.19)	그 외	32 (0.21)	그 외	52 (0.16)	그 외	85 (0.17)	그 외	147 (0.23)	그 외	180 (0.25)
	의료급여세대원	KT 태국	5 (0.05)	JP 일본	372 (0.1)	JP 일본	411 (0.1)	JP 일본	456 (0.14)	JP 일본	387 (0.15)	SV 베트남	630 (0.15)	SV 베트남	627 (0.14)
		JP 일본	33 (0.11)	PF 필리핀	168 (0.14)	PF 필리핀	195 (0.18)	DI 캄보디아	98 (0.18)	DI 캄보디아	99 (0.18)	JP 일본	332 (0.17)	JP 일본	319 (0.18)
		PF 필리핀	18 (0.13)	DI 캄보디아	94 (0.15)	DI 캄보디아	104 (0.2)	SV 베트남	626 (0.21)	SV 베트남	618 (0.18)	DI 캄보디아	96 (0.2)	DI 캄보디아	101 (0.2)
		PC 중국	10 (0.2)	PC 중국	234 (0.34)	SV 베트남	547 (0.23)	PF 필리핀	305 (0.22)	PF 필리핀	316 (0.21)	PF 필리핀	326 (0.27)	PF 필리핀	336 (0.27)
		SV 베트남	19 (0.35)	SV 베트남	538 (0.24)	PC 중국	350 (0.31)	PC 중국	392 (0.29)	PC 중국	370 (0.29)	PC 중국	427 (0.29)	PC 중국	455 (0.28)
		그 외	10 (0.19)	그 외	155 (0.11)	그 외	169 (0.11)	그 외	300 (0.14)	그 외	313 (0.15)	그 외	375 (0.15)	그 외	405 (0.15)
	지역세대주	CA 호주	44 (0.02)	CA 호주	51 (0.02)	CA 호주	44 (0.02)	FB 브라질	79 (0.03)	FB 브라질	132 (0.04)	FB 브라질	206 (0.03)	FB 브라질	207 (0.03)
		NZ 뉴질랜드	146 (0.05)	NZ 뉴질랜드	175 (0.07)	NZ 뉴질랜드	174 (0.09)	NZ 뉴질랜드	233 (0.08)	NZ 뉴질랜드	258 (0.07)	NZ 뉴질랜드	502 (0.07)	NZ 뉴질랜드	509 (0.07)
		JP 일본	350 (0.13)	CN 캐나다	297 (0.12)	CN 캐나다	211 (0.11)	CN 캐나다	228 (0.08)	CN 캐나다	284 (0.08)	CN 캐나다	458 (0.07)	CN 캐나다	489 (0.07)

		CN 캐나다	379 (0.14)	JP 일본	350 (0.14)	JP 일본	352 (0.18)	JP 일본	601 (0.22)	JP 일본	753 (0.21)	JP 일본	1,814 (0.27)	JP 일본	1,870 (0.27)
		US 미국	1,560 (0.57)	US 미국	1,333 (0.54)	US 미국	961 (0.48)	US 미국	1,149 (0.41)	US 미국	1,449 (0.41)	US 미국	2,238 (0.33)	US 미국	2,230 (0.33)
		그 외	257 (0.09)	그 외	263 (0.11)	그 외	245 (0.12)	그 외	499 (0.18)	그 외	649 (0.18)	그 외	1,492 (0.22)	그 외	1,541 (0.23)
	지 역 세 대 원	CA 호주	82 (0.02)	ZZ 기타	321 (0.06)	CA 호주	86 (0.03)	FB 브라질	87 (0.03)	FB 브라질	137 (0.04)	FB 브라질	136 (0.04)	FB 브라질	121 (0.04)
		NZ 뉴질랜드	240 (0.07)	JP 일본	427 (0.08)	NZ 뉴질랜드	297 (0.09)	CN 캐나다	255 (0.08)	CN 캐나다	301 (0.08)	CN 캐나다	268 (0.08)	CN 캐나다	249 (0.08)
		JP 일본	411 (0.12)	NZ 뉴질랜드	572 (0.1)	CN 캐나다	396 (0.12)	NZ 뉴질랜드	363 (0.12)	NZ 뉴질랜드	396 (0.11)	NZ 뉴질랜드	308 (0.09)	NZ 뉴질랜드	299 (0.09)
		CN 캐나다	461 (0.14)	CN 캐나다	1,243 (0.23)	JP 일본	505 (0.16)	JP 일본	561 (0.18)	JP 일본	653 (0.18)	JP 일본	588 (0.18)	JP 일본	586 (0.18)
		US 미국	1,835 (0.55)	US 미국	2,371 (0.43)	US 미국	1,558 (0.49)	US 미국	1,246 (0.41)	US 미국	1,403 (0.39)	US 미국	1,204 (0.37)	US 미국	1,191 (0.37)
		그 외	293 (0.09)	그 외	577 (0.1)	그 외	349 (0.11)	그 외	560 (0.18)	그 외	712 (0.2)	그 외	744 (0.23)	그 외	795 (0.25)
	직 장 가 입 자	CA 호주	152 (0.04)	CA 호주	255 (0.03)	ZZ 기타	171 (0.03)	CA 호주	220 (0.03)	CA 호주	261 (0.03)	CA 호주	291 (0.03)	CA 호주	301 (0.03)
		JP 일본	315 (0.08)	JP 일본	593 (0.07)	JP 일본	541 (0.1)	JP 일본	938 (0.14)	NZ 뉴질랜드	1,098 (0.14)	NZ 뉴질랜드	1,135 (0.12)	NZ 뉴질랜드	1,200 (0.12)
		NZ 뉴질랜드	412 (0.1)	NZ 뉴질랜드	794 (0.09)	NZ 뉴질랜드	613 (0.12)	NZ 뉴질랜드	923 (0.14)	CN 캐나다	1,147 (0.14)	CN 캐나다	1,301 (0.14)	CN 캐나다	1,356 (0.14)
		CN 캐나다	1,166 (0.28)	CN 캐나다	1,999 (0.22)	CN 캐나다	1,051 (0.2)	CN 캐나다	1,058 (0.16)	JP 일본	1,270 (0.16)	JP 일본	1,503 (0.17)	JP 일본	1,551 (0.16)
		US 미국	1,885 (0.45)	US 미국	4,540 (0.51)	US 미국	2,161 (0.42)	US 미국	2,449 (0.37)	US 미국	2,864 (0.36)	US 미국	3,206 (0.35)	US 미국	3,358 (0.35)
		그 외	259 (0.06)	그 외	728 (0.08)	그 외	651 (0.13)	그 외	1,033 (0.16)	그 외	1,328 (0.17)	그 외	1,667 (0.18)	그 외	1,871 (0.19)
	직 장 피 부 양 자	CA 호주	182 (0.03)	CA 호주	255 (0.03)	CA 호주	265 (0.03)	CA 호주	201 (0.03)	CA 호주	231 (0.03)	CA 호주	152 (0.02)	CA 호주	151 (0.02)
		JP 일본	390 (0.06)	JP 일본	593 (0.07)	JP 일본	756 (0.08)	CN 캐나다	1,025 (0.14)	CN 캐나다	1,104 (0.13)	CN 캐나다	852 (0.12)	NZ 뉴질랜드	770 (0.12)
		NZ 뉴질랜드	519 (0.08)	NZ 뉴질랜드	794 (0.09)	NZ 뉴질랜드	883 (0.1)	NZ 뉴질랜드	990 (0.14)	NZ 뉴질랜드	1,115 (0.13)	NZ 뉴질랜드	832 (0.12)	CN 캐나다	826 (0.13)
		CN 캐나다	1,456 (0.23)	CN 캐나다	1,999 (0.22)	CN 캐나다	1,925 (0.21)	JP 일본	1,088 (0.15)	JP 일본	1,338 (0.16)	JP 일본	1,143 (0.17)	JP 일본	1,125 (0.17)
		US 미국	3,426 (0.54)	US 미국	4,540 (0.51)	US 미국	4,293 (0.48)	US 미국	2,947 (0.4)	US 미국	3,382 (0.4)	US 미국	2,673 (0.39)	US 미국	2,416 (0.37)
		그 외	407 (0.06)	그 외	728 (0.08)	그 외	870 (0.1)	그 외	1,050 (0.14)	그 외	1,329 (0.16)	그 외	1,201 (0.18)	그 외	1,215 (0.19)

	의료 급여 세 대 주	-	-	-	-	-	-	RI 남아프리카	1 (0.14)	RI 남아프리카	2 (0.04)	CN 캐나다	6 (0.04)	NZ 뉴질랜드	6 (0.03)
		-	-	-	-	-	-	NZ 뉴질랜드	1 (0.14)	FB 브라질	2 (0.04)	AG 아르헨티나	7 (0.05)	CN 캐나다	7 (0.03)
		-	-	-	-	-	-	NG	1 (0.14)	CN 캐나다	5 (0.09)	FB 브라질	11 (0.08)	FB 브라질	16 (0.08)
		-	-	-	-	-	-	JP 일본	1 (0.14)	JP 일본	16 (0.28)	JP 일본	42 (0.29)	JP 일본	58 (0.28)
		-	-	-	-	-	-	AG 아르헨티나	1 (0.14)	US 미국	26 (0.46)	US 미국	66 (0.46)	US 미국	96 (0.46)
		-	-	-	-	-	-	US 미국	2 (0.29)	그 외	6 (0.11)	그 외	13 (0.09)	그 외	26 (0.12)
	의료 급여 세 대 원	-	-	-	-	JP 일본	2 (1)	JP 일본	3 (0.5)	JP 일본	3 (0.27)	CN 캐나다	2 (0.08)	AG 아르헨티나	3 (0.09)
		-	-	-	-	-	-	US 미국	3 (0.5)	FB 브라질	3 (0.27)	AG 아르헨티나	3 (0.12)	FB 브라질	5 (0.15)
		-	-	-	-	-	-	-	-	US 미국	5 (0.45)	JP 일본	5 (0.19)	JP 일본	8 (0.24)
		-	-	-	-	-	-	-	-	-	-	FB 브라질	5 (0.19)	US 미국	10 (0.29)
		-	-	-	-	-	-	-	-	-	-	US 미국	9 (0.35)	그 외	8 (0.24)
		-	-	-	-	-	-	-	-	-	-	그 외	2 (0.08)	-	-

주: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함

○ 다빈도 상병

- <표 10>은 분석대상자 다빈도 상병 현황을 나타냄
- 가입자격별 상위 5개의 상병 중심으로 정리
- 상위 5개의 상병은 진료건수가 많은 항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질환들임
 -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다빈도 상병에 대한 의료이용건수가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의료이용건수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다빈도상병은 비슷하나 의료가입자의 다빈도상병은 다소 차이가 있음
 - 재외국민의 경우, 다빈도 상병에 대한 의료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내국인
 - 지역세대주의 경우, 2021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요통, 요추부(M5456), 만성 치주염(K0531) 순서로 비율을 차지
 - 지역세대원의 경우, 2021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Z115) 순서로 다빈도 질병에 해당
 -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1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Z115), 만성 치주염(K0530),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순으로 차지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요통, 요추부(M5456)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가입자의 경우, 2021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만성 신장질환(5기)(N18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척추 협착, 요추부(M4806), 요통, 요추부(M5456) 순으로 차지
 - 의료급세대원의 경우, 2021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만성 신장질환(5기)(N18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척추 협착, 요추부(M4806) 순으로 차지
- 외국인
 - 지역세대주의 경우, 2021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Z115), 만성 치주염(K053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K210) 순으로 차지
 - 지역세대원의 경우,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기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Z115),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K210) 순으로 차지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기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Z115), 만성 치주염(K0530), 만성 치주염(K0531) 순으로 차지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기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Z115),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가입자의 경우,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M170), 요통, 요추부(M5456),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U071)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K210), 요통, 요추부(M5456),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Z115) 순으로 차지

— 재외국민

- 지역세대주의 경우, 2021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만성 치주염(K0530), 만성 치주염(K0531),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Z115) 순으로 차지
- 지역세대원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만성 치주염(K0531), 만성 치주염(K0530),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J209) 순으로 차지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만성 치주염(K05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Z115), 만성 치주염(K0531) 순으로 차지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만성 치주염(K0530), 만성 치주염(K0531),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가입자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만성 신장병(5기) (N185), 요통, 요추부 (M54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1), 요추의 염좌 및 긴장(M170) 순으로 차지
-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만성 신장병(5기)(N185), 상세불명의 천식(J459), 근육돌레피 증후군 (M75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9), 턱관절내장증 (K0760) 순으로 차지

<표 10> 가입자격별 다빈도 상병 (상위 5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07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내 국 인	지 역 세 대 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51,699	63,519	54,287	63,872	66,341	73,576	75,968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23,762	36,554	29,103	49,145	46,919	21,367	22,407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요통, 요추부 M5456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14,977	15,379	15,325	16,602	17,967	12,973	14,507
		치수염 K040	만성 치주염 K053	요통, 요추부 M5456	요통, 요추부 M5456	요통, 요추부 M5456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요통, 요추부 M5456
		11,155	13,367	12,906	13,582	13,180	11,987	13,882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1	만성 치주염 K0531
	지 역 세 대 원	10,559	11,598	9,214	10,177	9,663	11,075	12,313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79,309	99,966	72,676	117,078	104,546	39,493	40,584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41,611	39,623	31,535	34,513	34,967	23,106	34,43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36,600	35,880	15,792	17,842	14,394	10,468	10,758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요통, 요추부 M5456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22,694	21,827	14,876	16,805	14,392	7,975	9,234
	직 장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만성 치주염 K0530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택검사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택검사 Z115
		21,401	20,934	13,490	16,269	13,425	7,730	8,86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가 입 자	40,748	56,078	58,473	113,526	121,064	110,704	115,833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만성 치주염 K0530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택검사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택검사 Z115
	29,669	53,799	51,027	84,910	95,394	30,380	39,367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만성 치주염 K05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만성 치주염 K0530
	23,753	28,385	16,474	24,213	26,634	30,329	33,328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만성 치주염 K053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12,477	17,317	15,491	22,620	25,191	26,507	33,171
	치수염 K04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만성 치주염 K053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12,273	16,179	14,650	21,674	22,340	23,854	32,593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143,962	226,701	220,582	415,088	392,884	135,414	139,99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96,585	119,762	110,358	135,814	135,185	87,077	133,703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70,590	75,003	46,512	60,256	58,070	35,033	38,482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요통, 요추부 M545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43,118	50,880	42,453	57,381	52,130	29,729	35,384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요통, 요추부 M5456
	38,643	48,014	39,587	57,180	49,376	29,287	29,4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13,387	11,155	13,444	15,984	15,681	17,441	18,395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만성 신장질환(5기) N185	만성 신장질환(5기) N185
	6,249	4,594	6,239	10,257	9,845	8,234	9,118
의 료 급 여 가 입							

외국인	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만성 신장질환(5기) N185	만성 신장질환(5기) N185	만성 신장질환(5기) N18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3,545	3,460	4,392	6,086	6,669	5,788	6,178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말기 콩팥(신장)병 N180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척추 협착, 요추부 M4806	척추 협착, 요추부 M4806	척추 협착, 요추부 M4806
		2,799	2,891	4,238	4,841	5,158	5,241	5,666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요통, 요추부 M545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척추 협착, 요추부 M480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요통, 요추부 M5456	요통, 요추부 M5456
	의료급여세대원	2,781	2,776	3,828	4,713	4,738	4,540	4,961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5,350	5,290	5,291	9,189	8,244	2,617	2,69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3,024	2,218	2,371	2,483	2,585	1,833	2,623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요통, 요추부 M5456	만성 신장질환(5기) N185
		2,637	1,982	1,098	1,323	1,346	856	1,061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1,843	1,305	1,038	1,272	1,110	847	917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J06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요통, 요추부 M5456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요통, 요추부 M5456	만성 신장질환(5기) N185	척추 협착, 요추부 M4806
		1,491	949	1,007	1,099	1,103	728	895
	지역세대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1,758	3,367	5,482	17,128	24,842	37,810	36,574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1,262	3,087	5,220	11,730	17,851	10,796	14,635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택검사 Z115
		788	1,498	1,586	3,297	4,782	8,427	13,580
		치수염 K040	치수염 K040	요통, 요추부 M5456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만성 치주염 K0530
		601	819	1,556	3,250	4,425	8,192	8,66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요통, 요추부 M5456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지역 세 대 원			추간판장애 M511		E119		
		489	761	1,429	3,147	4,110	6,585	8,578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4,039	10,358	14,263	39,084	52,094	14,657	21,321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Z348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Z34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3,702	4,826	5,121	11,009	14,278	14,364	13,337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택검사 Z115
		2,593	4,384	3,083	6,097	6,575	3,380	4,156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1,691	3,125	3,053	5,810	6,229	3,327	3,949
	직 장 가 입 자	치수염 K04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1,536	2,636	2,460	4,595	5,635	3,060	3,356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4,193	12,575	13,089	30,953	37,619	27,350	33,281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3,118	6,987	8,103	15,117	19,250	10,431	14,94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만성 치주염 K0530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택검사 Z115
		2,338	5,449	4,286	7,540	8,433	8,563	11,541
		치수염 K04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만성 치주염 K0530
		2,249	3,966	4,123	6,811	7,472	7,970	10,437
	직 장 피 부 양 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치수염 K0,401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1	만성 치주염 K0531
		1,781	3,732	4,116	6,172	7,169	6,817	9,305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3,078	9,392	14,830	44,062	51,328	19,967	27,669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Z348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Z34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2,954	4,641	5,421	12,843	15,075	17,177	20,990
		상세불명의	상세불명의	상세불명의	상세불명의	급성 비인두염 [감기]	합병증을 동반하지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급성편도염 J039	급성편도염 J039	급성편도염 J0390	급성편도염 J0390	J00	아은 2형 당뇨병 E119	대한 특수선별검사 Z115
		1,876	3,929	3,314	6,747	6,935	4,814	6,468
		치수염 K04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1,152	2,746	3,000	6,476	6,701	4,798	5,992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1,133	2,384	2,980	5,607	5,960	4,359	5,268
		보통 건선 L40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9	14	45	114	132	52	77
		급성 질염 N760	상세불명의 항문성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A60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3	7	10	22	40	49	54
	의료급여가입자	발 백선증 B353	기타 명시된손목 및 손의 손상 S69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치수염 K0401	급성 인후두염 J060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1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2	6	10	20	38	23	39
		기타 급성 결막염 H102	관절통, 아래다리 M2556	급성 인후두염 J060	급성 복통 R100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J304	만성 치주염 K0530	요통, 요추부 M5456
		2	5	9	20	25	20	33
		바깥귀의 고름집(농양) H60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M501	백반증 L8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 N72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U071
		2	5	9	19	20	20	27
		치수염 K04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11	233	356	755	633	165	313
	의료급여세대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M544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11	98	101	157	145	135	151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치질 I848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요통, 요추부 M5456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10	87	89	147	112	111	94
		급성 위턱굴염 J010	치수염 K040	치수염 K0401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요통, 요추부 M5456	만성 치주염 K0530	요통, 요추부 M5456

재외국민		8	71	83	127	97	66	83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H669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Z348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Z115
	지역세대주	7	69	64	124	96	64	8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388	446	270	503	599	918	961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128	273	177	359	488	308	359
		만성 치주염 K053	만성 치주염 K053	요통, 요추부 M545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118	128	114	136	166	242	30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1	만성 치주염 K0531
		96	102	104	133	144	240	248
		치수염 K040	전립선증식증 N40	만성 치주염 K0530	전립선증식증 N400	요통, 요추부 M5456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0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Z115
	지역세대원	82	97	104	114	144	171	18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368	438	306	430	444	423	472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183	370	177	355	438	181	173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J03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17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만성 치주염 K0531
		111	144	74	99	129	134	139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J029	만성 치주염 K05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직	98	121	72	89	110	129	138
		요각통 요각통 J1011	급성 비인두염 [감기] J00	요통, 요추부 M545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17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만성 치주염 K0531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82	100	69	87		109	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장 가 입 자	장 가 입 자	430	637	524	805	881	1069	114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179	387	296	695	785	371	444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만성 치주염 K053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115	233	183	247	352	328	403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만성 치주염 K0531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택검사 Z115
		111	208	130	168	254	315	379
	직 장 피 부 양 자	치수염 K040	치수염 K04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E119	만성 치주염 K0531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만성 치주염 K0531
		111	161	115	163	209	212	35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573	614	503	906	844	842	835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만성 치주염 K05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E119
		366	598	422	633	637	283	303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만성 치주염 K05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E119	만성 치주염 K0530
		233	251	186	212	241	255	283
	의 료 급 여 가 입 자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만성 치주염 K053	치수염 K0401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029	요통, 요추부 M5456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만성 치주염 K0531
		168	198	153	163	202	172	246
		치수염 K040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J0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J039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E119	만성 치주염 K0531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131	164	144	157	187	158	233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	-	-	12	15	45	71
		-	-	-	관절통, 발목 및 발 M2557	요통, 요추부 M5456	만성 신장병(5기) N185	만성 신장병(5기) N185
	의 료 급 여 가 입 자	-	-	-	7	14	45	51
		-	-	-	요관의 결석 N20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17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E119	요통, 요추부 M5456
		-	-	-	7	12	25	47
		-	-	-	손발톱 백선증 B35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E11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17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의료급여 세대원							M501
	-	-	-	4	8	17	20
	-	-	-	체장(이자)의 중복병터 악성신생물 C258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J209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N18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170
	-	-	-	3	8	14	18
	-	-	비기질성 불면증 F510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E785	전두(머리의) 탈모증 L630	만성 신장병(5기) N185	만성 신장병(5기) N185
	-	-	1	3	4	14	15
	-	-	치수염 K040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170	사지의 통증, 다발부분 M7960	상세불명의 천식 J459
	-	-	1	1	4	9	10
	-	-	-	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K589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근육통레피 증후군 M751
	-	-	-	1	3	7	10
	-	-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기타 골다공증, 다발부분 M818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9
	-	-	-	-	3	7	7
	-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M179	치수염 K0401	턱관절내장증 K0760
	-	-	-	-	3	4	5

주: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함

IV.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 분석

1.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가. 분석대상자의 가입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⁴

- ☐ 2007-2021년 연구기간동안 분석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일반외래, 응급외래, 입원, 처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 일반외래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2007년 이후 꾸준히 일반외래 의료이용 증가
 - － 다만, 코로나-19로 2020년 의료이용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내국인 (<표 11> 참조)
 - － 지역세대주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 지역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 직장가입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이 꾸준히 증가
 -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 의료급여세대주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이 꾸준히 증가
 - －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는 증가했다 감소하는 추세이나, 총 진료비용, 방문 당 평균 진료비용은 꾸준히 증가
 - 외국인(<표 12> 참조)
 - － 지역세대주의 경우, 총 방문자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은 꾸준히 증가
 -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는 증가하다가 2019년 소폭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다른 가입자유형과 달리 2020년에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
 - － 지역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⁴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의 경우, 각 연도별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III장에 기술된 기초통계량의 연도별 가입자수와 상이할 수 있음(기초통계량은 각 연도별 12월을 기준으로 정리)

- 다만, 201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
- － 직장가입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 － 의료급여세대주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 다른 가입자유형과 달리 2020년에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소폭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
- －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 － 상위 3개국과 그 외 국가의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는 <부표 1>에 정리
- 연구기간동안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중국, 베트남, 미국)과 그 외 국가

○ 재외국민 (<표 13> 참조)

- － 재외국민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지역세대주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연도별 편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
- － 지역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 상위 3개국과 그 외 국가의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는 <부표 3>에 정리
- 연구기간동안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미국, 캐나다, 일본)과 그 외 국가

□ 응급외래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2007년 이후 꾸준히 응급외래 의료 이용 증가

- 다만, 2020년 의료이용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다시 증가

○ 내국인 (<표 11> 참조)

-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꾸준히 증가
 - 다만, 2019년 소폭 감소 후 2021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꾸준히 증가

○ 외국인 (<표 12> 참조)

- 지역세대주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지역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2019년부터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 다시 증가 추세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상위 3개국과 그 외 국가의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는 <부표 1>에 정리
 - 연구기간동안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중국, 베트남, 미국)과 그 외 국가

○ 재외국민 (<표 13> 참조)

-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상위 3개국과 그 외 국가의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는 <부표 3>에 정리
 - 연구기간동안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미국, 캐나다, 일본)과 그 외 국가

<표 11> 내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단위:명, 건, 백만 원, 원)

가입자 유형	연도	일반외래			응급외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지역 세대 주	2007	4,276,739	138,044	32,278	23,015	2,954	128,340
	2008	5,149,165	138,163	26,832	24,969	3,041	121,782
	2009	5,337,239	151,583	28,401	27,986	3,434	122,690
	2010	5,596,675	161,697	28,892	30,246	3,675	121,504
	2011	5,601,035	161,722	28,874	33,785	3,658	108,273
	2012	5,970,379	166,440	27,878	38,403	3,737	97,319
	2013	5,991,778	172,939	28,863	38,900	4,018	103,278
	2014	6,004,039	181,870	30,291	42,016	4,335	103,184
	2015	5,970,120	192,052	32,169	42,121	4,501	106,860
	2016	6,011,055	207,763	34,564	39,140	3,631	92,775
	2017	6,074,418	222,643	36,653	39,662	3,963	99,923
	2018	6,213,528	243,235	39,146	41,982	4,368	104,035
	2019	6,491,500	276,793	42,639	40,863	4,764	116,583
	2020	6,043,717	285,851	47,297	34,374	4,131	120,189
	2021	6,360,311	318,106	50,014	38,477	4,742	123,236
지역 세대 원	2007	6,224,160	183,398	29,465	38,191	4,407	115,405
	2008	7,146,927	176,696	24,723	40,951	4,513	110,207
	2009	7,229,958	183,657	25,402	51,357	5,805	113,035
	2010	6,981,178	179,981	25,781	47,105	5,139	109,103
	2011	6,706,971	174,591	26,031	48,871	4,789	98,001
	2012	6,798,488	169,732	24,966	54,259	4,849	89,363
	2013	6,510,953	169,905	26,095	52,113	4,968	95,325
	2014	6,275,519	171,597	27,344	54,185	5,251	96,903
	2015	5,959,054	172,029	28,868	51,269	5,164	100,718
	2016	5,934,683	180,756	30,457	46,571	4,141	88,910
	2017	5,778,710	188,509	32,621	44,318	4,294	96,901
	2018	5,717,564	199,062	34,816	44,718	4,423	98,905
	2019	5,782,158	219,341	37,934	41,905	4,567	108,978
	2020	4,830,642	211,481	43,779	30,990	3,585	115,674
	2021	5,028,130	234,790	46,695	35,204	4,179	118,701
직 장 가 입 자	2007	4,785,022	150,761	31,507	28,716	3,422	119,154
	2008	5,947,318	160,515	26,990	33,281	3,850	115,668
	2009	6,494,567	181,000	27,869	41,741	4,909	117,604
	2010	6,710,562	189,611	28,256	42,753	4,918	115,037
	2011	7,198,194	203,283	28,241	49,351	5,040	102,131
	2012	8,109,996	219,787	27,101	60,340	5,578	92,436
	2013	8,638,581	241,976	28,011	64,886	6,398	98,602
	2014	9,395,549	275,232	29,294	75,819	7,342	96,830
	2015	9,690,008	298,409	30,796	77,539	7,930	102,275
	2016	10,412,173	337,859	32,448	75,162	6,724	89,465
	2017	10,918,544	381,378	34,929	77,509	7,454	96,165
	2018	11,510,745	428,034	37,186	82,128	8,056	98,093
	2019	12,214,396	495,029	40,528	81,682	8,924	109,256
	2020	11,604,388	526,575	45,377	75,254	8,325	110,620
	2021	12,144,117	591,394	48,698	97,574	10,734	110,007
직 장	2007	12,186,351	362,976	29,785	64,221	7,426	115,634
	2008	15,244,375	375,324	24,621	74,046	8,166	110,280

피부양자	2009	16,474,892	417,763	25,358	99,812	11,512	115,333
	2010	16,814,399	428,404	25,478	95,662	10,389	108,599
	2011	17,332,011	441,699	25,485	104,182	10,202	97,925
	2012	18,812,774	460,276	24,466	124,170	11,194	90,154
	2013	19,123,470	486,822	25,457	123,863	12,051	97,290
	2014	19,971,904	532,742	26,675	140,013	13,753	98,226
	2015	19,754,349	559,780	28,337	138,223	14,203	102,757
	2016	20,539,653	616,472	30,014	128,763	11,919	92,565
	2017	20,201,096	643,111	31,835	121,575	12,132	99,792
	2018	20,244,005	689,014	34,035	125,936	12,964	102,941
	2019	20,043,617	736,926	36,766	116,874	13,230	113,196
	2020	16,105,896	688,596	42,754	84,823	10,198	120,230
	2021	16,485,761	743,569	45,104	98,696	11,739	118,942
의료급여세대주	2007	1,211,735	60,140	49,631	6,706	881	131,445
	2008	1,514,545	58,405	38,563	6,788	896	131,936
	2009	1,774,881	62,983	35,486	8,577	1,106	128,944
	2010	1,643,357	61,746	37,573	8,466	1,067	126,041
	2011	1,691,516	61,943	36,620	9,695	1,112	114,677
	2012	1,732,693	59,590	34,391	10,858	1,088	100,161
	2013	1,759,448	63,259	35,954	11,560	1,245	107,687
	2014	1,764,844	67,118	38,031	12,548	1,405	111,937
	2015	1,763,999	71,605	40,592	12,435	1,423	114,435
	2016	1,949,836	81,866	41,986	12,593	1,262	100,221
	2017	1,984,208	85,694	43,188	12,294	1,355	110,233
	2018	2,028,512	92,450	45,576	13,199	1,518	114,998
	2019	2,103,953	101,913	48,439	13,347	1,644	123,206
	2020	2,021,140	107,066	52,973	11,410	1,474	129,224
	2021	2,109,795	115,735	54,856	11,444	1,530	133,735
의료급여세대원	2007	483,134	17,344	35,899	3,236	369	114,071
	2008	563,942	16,200	28,726	3,002	330	109,986
	2009	654,818	19,044	29,083	4,526	465	102,817
	2010	638,091	19,284	30,222	4,597	456	99,244
	2011	618,681	18,702	30,230	4,978	448	90,031
	2012	594,013	17,644	29,702	4,901	408	83,169
	2013	560,444	17,019	30,367	4,637	421	90,749
	2014	536,576	17,282	32,209	4,701	448	95,234
	2015	504,899	16,572	32,823	4,616	469	101,603
	2016	548,170	18,885	34,450	4,630	419	90,566
	2017	523,424	18,535	35,411	4,449	420	94,341
	2018	548,119	20,270	36,980	4,476	431	96,210
	2019	502,814	20,249	40,271	3,996	428	107,132
	2020	430,331	19,760	45,917	2,792	334	119,592
	2021	421,643	20,549	48,734	3,018	347	114,911

<표 12>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단위:명, 건, 백만 원, 원)

가입자 유형	연도	일반외래				응급외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지 역 세 대 주	2007	209,667	8,265	39,418	9.45	1,428	220	154,369	0.064
	2008	317,327	10,942	34,481	11.26	2,072	328	158,373	0.074
	2009	376,503	13,454	35,733	12.00	2,567	375	145,972	0.082
	2010	420,824	15,448	36,709	12.20	2,922	414	141,724	0.085
	2011	553,351	20,035	36,206	12.39	4,241	501	118,149	0.095
	2012	760,234	25,344	33,337	14.00	5,955	619	103,946	0.110
	2013	897,720	30,400	33,864	13.94	6,819	766	112,272	0.106
	2014	1,136,483	39,325	34,602	13.71	9,463	1,039	109,798	0.114
	2015	1,344,981	47,302	35,169	13.93	10,894	1,256	115,251	0.113
	2016	1,491,360	55,561	37,255	13.27	10,716	1,033	96,355	0.095
	2017	1,898,136	75,765	39,916	14.34	12,539	1,304	103,983	0.095
	2018	2,283,919	96,945	42,447	14.65	15,704	1,709	108,849	0.101
	2019	3,087,998	139,896	45,303	8.53	20,664	2,515	121,699	0.057
	2020	3,496,367	170,129	48,659	8.50	23,273	2,851	122,494	0.057
	2021	3,904,006	203,483	52,121	7.62	41,974	4,612	109,883	0.082
지 역 세 대 원	2007	477,796	14,740	30,850	8.51	3,413	398	116,656	0.061
	2008	688,138	18,474	26,846	10.17	4,807	549	114,178	0.071
	2009	821,663	22,665	27,585	10.52	6,587	740	112,299	0.084
	2010	893,064	25,077	28,080	10.72	7,419	800	107,853	0.089
	2011	1,015,396	28,600	28,166	11.02	8,908	896	100,556	0.097
	2012	1,237,840	33,472	27,041	12.33	11,789	1,049	88,986	0.117
	2013	1,363,676	38,082	27,926	12.35	12,831	1,224	95,386	0.116
	2014	1,549,147	44,820	28,932	12.41	16,002	1,542	96,362	0.128
	2015	1,692,434	51,553	30,461	12.60	17,456	1,794	102,745	0.130
	2016	1,846,238	59,520	32,239	12.18	17,420	1,541	88,471	0.115
	2017	2,223,266	78,111	35,133	13.26	19,385	1,856	95,766	0.116
	2018	2,428,218	90,845	37,412	13.67	21,733	2,159	99,326	0.122
	2019	2,256,896	89,618	39,708	13.27	19,177	2,085	108,710	0.113
	2020	1,837,298	85,215	46,380	11.22	12,867	1,534	119,190	0.079
	2021	1,868,900	91,421	48,917	12.29	16,860	1,901	112,748	0.111
직 장 가 입 자	2007	675,753	21,983	32,532	2.90	10,091	1,138	112,779	0.043
	2008	964,089	27,335	28,353	3.44	13,863	1,446	104,292	0.049
	2009	1,159,493	33,806	29,156	3.95	16,610	1,800	108,381	0.057
	2010	1,444,767	42,401	29,348	4.44	19,795	2,114	106,817	0.061
	2011	1,752,152	51,285	29,270	4.47	27,321	2,496	91,370	0.070
	2012	2,085,347	57,727	27,682	5.06	34,333	2,664	77,586	0.083
	2013	2,164,494	62,036	28,661	5.24	34,304	2,829	82,473	0.083
	2014	2,485,428	74,350	29,915	5.50	41,888	3,399	81,141	0.093
	2015	2,731,086	85,132	31,171	5.50	46,016	3,859	83,863	0.093
	2016	2,763,181	90,944	32,913	5.26	42,852	3,222	75,194	0.082
	2017	3,194,033	111,462	34,897	5.99	43,518	3,706	85,171	0.082
	2018	3,375,811	125,489	37,173	6.11	45,813	3,946	86,129	0.083
	2019	3,749,072	152,151	40,584	6.52	44,613	4,387	98,325	0.078
	2020	3,593,465	163,203	45,417	6.84	37,199	4,005	107,670	0.071
	2021	4,015,446	196,573	48,954	8.00	69,268	6,412	92,566	0.138
직 장	2007	348,956	10,660	30,548	7.53	2,656	320	120,421	0.057
	2008	536,044	13,937	25,999	9.17	3,779	424	112,253	0.065

피 양 자	2009	683,493	18,559	27,153	9.67	5,864	682	116,274	0.083
	2010	796,424	22,116	27,769	9.91	6,452	696	107,932	0.080
	2011	957,102	27,283	28,506	9.88	8,100	807	99,598	0.084
	2012	1,265,074	33,908	26,803	11.06	11,420	1,021	89,368	0.100
	2013	1,464,397	40,931	27,951	11.00	13,183	1,286	97,516	0.099
	2014	1,790,508	52,633	29,396	11.15	17,401	1,663	95,556	0.108
	2015	2,056,940	63,298	30,773	11.12	20,426	2,035	99,618	0.110
	2016	2,222,536	73,550	33,093	10.81	19,356	1,684	87,004	0.094
	2017	2,566,008	93,999	36,633	12.11	20,949	1,999	95,441	0.099
	2018	2,734,118	107,514	39,323	12.54	22,403	2,231	99,601	0.103
	2019	2,992,656	126,743	42,351	13.36	22,646	2,475	109,279	0.101
	2020	2,623,837	129,462	49,341	12.11	16,879	2,049	121,375	0.078
	2021	2,921,001	150,660	51,578	13.35	23,981	2,802	116,835	0.110
의 료 급 여 세 대 주	2007	51	2	30,751	17.00	-	-	-	-
	2008	360	10	28,758	17.14	1	0.02	15,002	0.048
	2009	864	22	25,700	14.90	7	0.79	113,002	0.121
	2010	1,192	31	25,752	15.48	6	0.39	64,669	0.078
	2011	1,958	44	22,465	18.30	10	1.29	129,317	0.093
	2012	2,683	58	21,499	16.98	13	0.73	56,042	0.082
	2013	3,371	83	24,569	18.42	26	2	59,188	0.142
	2014	3,777	101	26,756	17.99	32	2	68,834	0.152
	2015	4,609	151	32,859	16.58	23	1.35	58,865	0.083
	2016	6,251	208	33,214	16.58	44	4	88,277	0.117
	2017	7,557	237	31,333	17.18	67	5	73,393	0.152
	2018	10,065	373	37,060	19.21	71	7	103,404	0.135
	2019	11,617	475	40,925	19.33	100	8	80,923	0.166
	2020	12,690	619	48,782	19.11	68	7	95,675	0.102
	2021	14,296	781	54,661	19.32	98	14	138,800	0.132
의 료 급 여 세 대 원	2007	710	18	25,304	7.10	5	0	65,245	0.050
	2008	10,155	242	23,818	11.78	43	4	100,100	0.050
	2009	19,325	479	24,805	14.88	117	11	98,255	0.090
	2010	26,915	665	24,691	15.23	182	17	91,642	0.103
	2011	29,366	712	24,246	15.01	182	15	81,665	0.093
	2012	31,121	775	24,899	15.43	245	16	66,462	0.121
	2013	33,918	944	27,823	16.55	291	23	78,685	0.142
	2014	35,764	965	26,982	17.72	370	30	80,327	0.183
	2015	35,719	998	27,942	17.48	333	29	87,663	0.163
	2016	38,758	1,167	30,103	15.91	305	28	91,851	0.125
	2017	41,520	1,306	31,444	17.70	293	25	86,152	0.125
	2018	41,590	1,491	35,850	18.38	314	28	89,568	0.139
	2019	43,288	1,635	37,778	18.47	310	33	106,264	0.132
	2020	38,996	1,634	41,903	16.61	236	27	114,295	0.101
	2021	40,438	1,887	46,673	17.21	231	25	108,157	0.098

<표 13>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단위:명, 건, 백만 원, 원)

가입자 유형	연도	일반외래				응급외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지 역 세 대 주	2007	39,555	2,114	53,437	11.576	166	27.82	167,598	0.049
	2008	51,398	2,361	45,945	12.355	192	36.25	188,812	0.046
	2009	50,804	2,178	42,877	14.658	221	39.42	178,388	0.064
	2010	53,424	2,332	43,653	15.126	255	42.62	167,124	0.072
	2011	55,349	2,354	42,532	14.339	267	37.72	141,280	0.069
	2012	63,081	2,506	39,732	17.179	279	36.37	130,366	0.076
	2013	55,345	2,177	39,340	17.581	313	40.67	129,939	0.099
	2014	49,354	1,940	39,309	16.747	276	35.57	128,877	0.094
	2015	32,847	1,322	40,262	16.221	187	21.11	112,901	0.092
	2016	49,635	2,303	46,405	11.089	283	37.48	132,439	0.063
	2017	68,090	3,322	48,789	18.260	315	44.20	140,316	0.084
	2018	77,602	3,867	49,835	19.015	400	53.15	132,879	0.098
	2019	88,918	4,670	52,525	13.383	443	71.58	161,577	0.067
	2020	96,178	5,095	52,979	12.378	467	62.68	134,213	0.060
	2021	117,914	6,530	55,383	14.752	632	83.97	132,861	0.079
지 역 세 대 원	2007	37,057	1,606	43,346	9.595	167	26.47	158,484	0.043
	2008	49,230	1,779	36,130	11.375	159	21.77	136,896	0.037
	2009	49,712	1,729	34,790	12.428	256	42.60	166,409	0.064
	2010	50,702	1,825	35,994	12.547	237	37.25	157,169	0.059
	2011	54,655	1,920	35,127	11.954	252	35.76	141,891	0.055
	2012	58,975	1,816	30,790	14.119	305	37.05	121,465	0.073
	2013	52,673	1,747	33,165	13.789	257	35.14	136,729	0.067
	2014	48,162	1,612	33,468	13.828	265	33.52	126,501	0.076
	2015	33,273	1,185	35,627	11.930	177	25.75	145,455	0.063
	2016	42,803	1,757	41,045	7.454	214	28.23	131,916	0.037
	2017	56,417	2,531	44,869	14.812	268	37.82	141,125	0.070
	2018	56,624	2,680	47,323	14.364	296	48.25	162,995	0.075
	2019	58,557	2,902	49,563	15.080	275	40.34	146,689	0.071
	2020	50,131	2,821	56,267	13.860	246	41.44	168,457	0.068
	2021	56,183	3,069	54,629	15.473	327	43.04	131,631	0.090
직 장 가 입 자	2007	39,103	1,544	39,484	8.116	201	31.86	158,516	0.042
	2008	53,104	1,792	33,748	9.717	275	45.97	167,155	0.050
	2009	61,234	2,097	34,240	10.238	363	56.30	155,098	0.061
	2010	67,205	2,458	36,576	10.395	379	60.76	160,315	0.059
	2011	73,795	2,739	37,114	9.294	459	59.56	129,759	0.058
	2012	80,522	2,694	33,452	11.748	464	54.78	118,054	0.068
	2013	78,011	2,679	34,346	12.436	462	61.65	133,447	0.074
	2014	72,994	2,508	34,353	12.592	435	56.66	130,251	0.075
	2015	56,055	2,078	37,071	11.220	352	43.58	123,803	0.070
	2016	74,973	3,079	41,064	6.834	393	49.42	125,757	0.036
	2017	105,029	4,786	45,565	12.425	568	72.54	127,709	0.067
	2018	119,461	5,183	43,382	13.238	614	79.34	129,215	0.068
	2019	136,282	6,572	48,227	14.518	680	96.24	141,536	0.072
	2020	128,856	6,790	52,693	13.439	641	78.81	122,944	0.067
	2021	148,623	8,316	55,954	14.683	902	115.01	127,510	0.089
직 장	2007	56,548	2,125	37,583	8.024	266	40.30	151,512	0.038
	2008	75,206	2,432	32,344	9.307	322	48.82	151,619	0.040

피 양 자	2009	84,580	2,982	35,254	9.290	410	64.48	157,270	0.045
	2010	92,616	3,258	35,182	9.325	439	70.80	161,268	0.044
	2011	101,222	3,553	35,097	8.581	490	66.04	134,783	0.042
	2012	106,248	3,543	33,349	9.830	646	81.51	126,178	0.060
	2013	96,632	3,146	32,555	9.439	474	65.92	139,072	0.046
	2014	88,062	3,065	34,802	9.246	529	69.52	131,427	0.056
	2015	69,487	2,515	36,197	8.173	396	56.23	142,006	0.047
	2016	88,453	3,693	41,753	5.427	452	54.10	119,700	0.028
	2017	109,041	4,766	43,712	11.788	496	65.76	132,577	0.054
	2018	117,004	5,449	46,575	12.054	511	71.34	139,601	0.053
	2019	121,958	6,323	51,847	12.450	566	84.19	148,747	0.058
	2020	102,405	5,759	56,233	12.103	456	60.62	132,931	0.054
	2021	113,882	6,900	60,593	14.163	525	77.90	148,387	0.065
의 료 급 여 세 대 주	2007	1	0	116,293	0.500	-	0.00	-	-
	2008	3	0	82,574	1.500	-	0.00	-	-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1	0	4,686	0.500	-	0.00	-	-
	2012	-	-	-	-	-	-	-	-
	2013	-	-	-	-	-	-	-	-
	2014	-	-	-	-	-	-	-	-
	2015	149	3	17,389	74.500	-	0.00	-	-
	2016	237	14	60,088	29.625	2	0.33	164,351	0.250
	2017	967	59	60,769	37.192	1	0.02	16,703	0.038
	2018	2,225	171	76,912	37.083	5	0.68	136,114	0.083
	2019	4,430	293	66,206	39.910	20	2.52	126,101	0.180
	2020	5,973	420	70,338	40.358	19	5.02	264,365	0.128
	2021	8,618	591	68,616	39.898	34	8.70	255,969	0.157
의 료 급 여 세 대 원	2007	-	-	-	-	-	-	-	-
	2008	3	0	8,793	1.500	-	-	-	-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4	0	18,653	4.000	-	0.00	-	-
	2012	-	-	-	-	-	0.00	-	-
	2013	42	1	31,738	21.000	-	0.00	-	-
	2014	203	5	25,135	40.600	-	0.00	-	-
	2015	87	2	28,375	21.750	-	0.00	-	-
	2016	49	1	24,072	8.167	-	0.00	-	-
	2017	151	7	46,102	21.571	1	0.11	106,047	0.143
	2018	369	16	42,520	33.545	-	-	-	-
	2019	679	26	37,863	32.333	2	0.05	25,330	0.095
	2020	1,150	72	62,213	44.231	9	1.43	159,370	0.346
	2021	1,325	89	66,840	35.811	10	1.47	147,459	0.270

□ 입원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2007년 이후 꾸준히 입원 의료 이용 증가
 - － 다만, 2020년 의료이용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다시 증가
- 내국인 (<표 14> 참조)
 - － 모든 가입자격에서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외국인 (<표 15> 참조)
 - － 모든 가입자격에서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환자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 상위 3개국과 그 외 국가의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는 <부표 2>에 정리
 - 연구기간동안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중국, 베트남, 미국)과 그 외 국가
- 재외국민 (<표 16> 참조)
 - － 모든 가입자격에서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 상위 3개국과 그 외 국가의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는 <부표 4>에 정리
 - 연구기간동안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미국, 캐나다, 일본)과 그 외 국가

□ 처방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2007년 이후 꾸준히 처방 의료 이용 증가
 - － 다만, 2020년 의료이용이 소폭 감소 후 2021년부터 다시 증가
- 내국인 (<표 14> 참조)
 - － 지역세대주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
 - － 지역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진료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의료급여세대주의 경우,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외국인 (<표 15> 참조)
 - － 모든 가입자격에서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
 - 다만, 2020년 의료이용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다시 증가
 - － 상위 3개국과 그 외 국가의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는 <부표 2>에 정리

- 연구기간동안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중국, 베트남, 미국)과 그 외 국가

○ 재외국민 (<표 16> 참조)

-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 후 2016년부터 다시 증가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총 방문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 후 2016년부터 다시 증가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총 방문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
- 상위 3개국과 그 외 국가의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는 <부표 4>에 정리
- 연구기간동안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미국, 캐나다, 일본)과 그 외 국가

<표 14> 내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단위:명, 건, 백만 원, 원)

가입자 유형	연도	입원			처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 진료비용
지역 세대 주	2007	63,390	111,186	1,754,000	3,081,011	104,925	34,055
	2008	70,424	117,544	1,669,092	3,076,073	105,914	34,432
	2009	78,152	130,489	1,669,688	3,155,810	112,497	35,648
	2010	91,303	150,169	1,644,729	3,316,591	120,174	36,234
	2011	102,117	152,549	1,493,866	3,288,259	118,187	35,942
	2012	101,928	159,988	1,569,613	3,331,865	110,369	33,125
	2013	106,128	163,042	1,536,278	3,298,075	110,593	33,533
	2014	111,780	173,782	1,554,675	3,300,084	113,551	34,409
	2015	117,342	190,108	1,620,121	3,274,463	118,113	36,071
	2016	126,641	207,626	1,639,484	3,300,041	126,068	38,202
	2017	134,321	230,701	1,717,531	3,324,062	133,228	40,080
	2018	141,665	255,824	1,805,839	3,418,866	142,023	41,541
	2019	149,767	295,802	1,975,078	3,510,313	157,038	44,736
	2020	152,352	324,483	2,129,824	3,252,257	164,599	50,611
지역 세대 원	2021	160,865	337,683	2,099,170	3,318,351	175,471	52,879
	2007	85,900	137,721	1,603,273	4,786,771	110,782	23,143
	2008	94,120	145,028	1,540,887	4,588,928	107,617	23,451
	2009	98,237	151,718	1,544,407	4,639,558	111,235	23,975
	2010	102,819	158,434	1,540,904	4,481,613	109,321	24,393
	2011	111,504	158,020	1,417,169	4,233,435	103,596	24,471
	2012	106,983	155,358	1,452,179	4,079,863	93,013	22,798
	2013	108,524	157,977	1,455,683	3,834,214	88,715	23,138
	2014	110,222	160,147	1,452,953	3,670,870	87,932	23,954
	2015	110,923	168,501	1,519,077	3,452,150	86,948	25,187
	2016	120,710	180,767	1,497,532	3,460,209	90,837	26,252
	2017	120,038	186,522	1,553,854	3,332,753	92,713	27,819
	2018	121,576	199,646	1,642,147	3,307,483	96,345	29,129
	2019	120,664	211,173	1,750,089	3,258,905	103,348	31,712
	2020	107,759	204,218	1,895,139	2,586,068	100,381	38,816

	2021	115,653	222,186	1,921,143	2,590,554	105,325	40,657
직 장 가 입 자	2007	54,150	82,577	1,524,968	3,316,181	96,299	29,039
	2008	61,495	90,565	1,472,718	3,526,940	103,105	29,234
	2009	68,443	101,539	1,483,552	3,820,683	114,364	29,933
	2010	73,574	108,338	1,472,506	3,951,702	118,887	30,085
	2011	87,484	116,216	1,328,421	4,198,247	124,978	29,769
	2012	89,353	123,120	1,377,908	4,499,158	123,207	27,384
	2013	95,072	130,402	1,371,614	4,714,262	129,906	27,556
	2014	104,981	146,142	1,392,083	5,123,574	143,579	28,023
	2015	110,501	160,117	1,449,008	5,262,058	153,600	29,190
	2016	130,898	183,826	1,404,343	5,718,759	173,141	30,276
	2017	136,677	200,003	1,463,324	5,971,412	187,938	31,473
	2018	145,006	227,375	1,568,036	6,331,063	205,518	32,462
	2019	154,628	261,523	1,691,306	6,588,947	226,360	34,354
직 장 피 부 양 자	2020	155,092	281,774	1,816,817	6,035,330	236,775	39,232
	2021	169,901	305,457	1,797,852	6,013,206	248,917	41,395
	2007	166,437	279,488	1,679,239	9,419,819	250,345	26,576
	2008	193,904	311,627	1,607,122	9,745,690	261,277	26,809
	2009	213,492	344,127	1,611,898	10,464,624	285,910	27,322
	2010	234,750	376,811	1,605,157	10,756,499	294,574	27,386
	2011	270,664	395,639	1,461,735	10,941,558	298,592	27,290
	2012	280,184	419,227	1,496,257	11,320,252	283,979	25,086
	2013	300,781	449,349	1,493,941	11,311,929	287,048	25,376
	2014	330,006	496,574	1,504,742	11,758,474	305,941	26,019
	2015	350,908	550,712	1,569,391	11,564,168	316,449	27,365
	2016	396,639	611,849	1,542,585	12,094,943	342,326	28,303
	2017	401,122	649,004	1,617,972	11,768,664	350,048	29,744
의 료 급 여 세 대 주	2018	411,316	695,578	1,691,103	11,831,104	367,198	31,037
	2019	411,773	753,355	1,829,540	11,515,527	380,348	33,029
	2020	361,735	729,291	2,016,093	8,718,997	359,504	41,232
	2021	371,786	739,212	1,988,272	8,652,587	368,430	42,580
	2007	64,427	89,158	1,383,861	967,860	42,020	43,415
	2008	69,634	93,154	1,337,769	905,920	41,012	45,271
	2009	80,226	113,650	1,416,624	1,032,464	47,549	46,054
	2010	81,735	116,530	1,425,709	928,162	44,290	47,718
	2011	91,923	120,045	1,305,925	936,621	44,167	47,155
	2012	90,305	121,120	1,341,228	890,977	38,275	42,958
	2013	96,552	129,471	1,340,947	899,109	38,682	43,023
	2014	99,085	135,354	1,366,043	894,996	39,467	44,097
	2015	102,471	142,218	1,387,882	889,401	41,129	46,244
의 료 급 여 세 대	2016	110,380	158,547	1,436,376	975,395	47,268	48,461
	2017	119,314	168,304	1,410,594	978,724	49,637	50,716
	2018	113,744	178,772	1,571,704	998,856	52,316	52,376
	2019	115,729	191,434	1,654,156	1,025,625	57,166	55,738
	2020	115,113	202,362	1,757,944	987,461	60,859	61,632
	2021	122,912	220,601	1,794,784	1,011,138	65,325	64,606
	2007	12,208	16,179	1,325,303	407,118	11,570	28,420
	2008	12,243	15,856	1,295,112	367,264	10,618	28,912
의 료 급 여 세 대	2009	14,251	20,218	1,418,722	417,626	12,019	28,779
	2010	14,406	19,898	1,381,228	396,419	11,683	29,470
	2011	15,718	19,452	1,237,572	374,891	11,103	29,617
	2012	13,939	18,657	1,338,472	337,116	9,224	27,360
	2013	13,579	17,190	1,265,923	314,980	8,751	27,783

원	2014	13,392	17,009	1,270,122	297,664	8,524	28,636
	2015	13,313	17,982	1,350,727	278,635	8,354	29,983
	2016	14,503	19,906	1,372,554	304,793	9,344	30,657
	2017	14,778	19,755	1,336,784	285,456	9,250	32,406
	2018	16,088	23,415	1,455,405	299,260	10,048	33,576
	2019	14,562	23,203	1,593,403	268,647	9,823	36,564
	2020	13,652	22,664	1,660,124	220,126	9,576	43,502
	2021	13,475	23,734	1,761,316	210,947	9,680	45,887

<표 15>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단위:명, 건, 백만 원, 원)

가입자 유형	연도	입원				처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지 역 세 대 주	2007	5,626	12,034	2,139,079	0.253	145,075	5,580	38,460	6.535
	2008	8,409	18,031	2,144,192	0.298	185,481	7,036	37,934	6.582
	2009	9,265	19,504	2,105,113	0.295	223,003	8,590	38,522	7.106
	2010	9,929	20,637	2,078,439	0.288	246,809	9,765	39,567	7.153
	2011	14,835	26,204	1,766,330	0.332	318,730	11,882	37,279	7.138
	2012	16,803	31,323	1,864,119	0.309	410,186	13,571	33,085	7.551
	2013	18,792	34,530	1,837,503	0.292	478,858	15,587	32,551	7.437
	2014	23,478	43,326	1,845,386	0.283	608,383	19,336	31,783	7.338
	2015	27,026	52,207	1,931,728	0.280	726,178	23,730	32,679	7.518
	2016	32,333	60,640	1,875,485	0.288	816,134	30,618	37,516	7.262
	2017	39,613	73,752	1,861,825	0.299	1,039,391	39,993	38,477	7.851
	2018	46,372	90,352	1,948,415	0.297	1,265,543	48,117	38,021	8.117
	2019	61,679	131,108	2,125,642	0.170	1,704,207	66,350	38,933	4.707
지 역 세 대 원	2020	67,763	149,345	2,203,936	0.165	1,920,894	79,009	41,131	4.667
	2021	82,674	170,177	2,058,411	0.161	2,004,896	84,122	41,958	3.914
	2007	12,476	15,897	1,274,190	0.222	308,411	7,277	23,594	5.493
	2008	15,987	20,984	1,312,589	0.236	390,524	9,127	23,371	5.772
	2009	17,982	22,846	1,270,511	0.230	476,819	11,356	23,815	6.103
	2010	18,729	24,149	1,289,400	0.225	528,740	12,620	23,867	6.345
	2011	21,619	28,002	1,295,258	0.235	599,048	14,281	23,839	6.501
	2012	22,971	31,950	1,390,895	0.229	690,371	15,629	22,638	6.877
	2013	24,376	35,280	1,447,310	0.221	770,756	17,720	22,990	6.978
	2014	26,694	41,193	1,543,168	0.214	891,084	21,045	23,618	7.137
	2015	30,460	48,243	1,583,804	0.227	990,126	24,758	25,005	7.373
	2016	38,492	57,476	1,493,204	0.254	1,102,458	30,857	27,989	7.271
	2017	45,474	70,674	1,554,167	0.271	1,337,434	39,034	29,186	7.976
직 장 가 입 자	2018	50,452	83,591	1,656,852	0.284	1,482,018	43,610	29,426	8.345
	2019	42,903	75,451	1,758,645	0.252	1,392,780	39,782	28,563	8.186
	2020	36,241	74,733	2,062,104	0.221	1,058,718	37,213	35,150	6.465
	2021	40,067	80,547	2,010,298	0.264	1,039,635	38,489	37,022	6.839
	2007	9,793	13,390	1,367,347	0.042	511,187	11,461	22,420	2.192
	2008	12,684	17,356	1,368,308	0.045	638,359	14,388	22,539	2.276
	2009	14,806	20,080	1,356,208	0.050	761,543	17,695	23,236	2.597
	2010	18,431	26,068	1,414,339	0.057	947,063	21,887	23,110	2.911
	2011	25,121	31,603	1,258,018	0.064	1,137,423	25,632	22,535	2.899
	2012	25,201	34,052	1,351,210	0.061	1,249,777	26,720	21,380	3.030
	2013	25,886	36,432	1,407,415	0.063	1,282,606	27,760	21,643	3.102

	2014	29,070	41,955	1,443,233	0.064	1,481,089	32,961	22,255	3.280
	2015	31,474	47,904	1,522,008	0.063	1,625,222	37,547	23,103	3.271
	2016	36,616	53,319	1,456,176	0.070	1,644,476	41,866	25,459	3.128
	2017	41,214	62,455	1,515,395	0.077	1,895,201	50,556	26,676	3.554
	2018	42,574	68,212	1,602,205	0.077	2,011,756	54,713	27,197	3.643
	2019	47,646	84,351	1,770,373	0.083	2,197,304	63,394	28,851	3.819
	2020	48,441	92,101	1,901,308	0.092	2,047,516	67,557	32,995	3.900
	2021	64,364	115,740	1,798,203	0.128	2,152,550	77,172	35,851	4.290
직장피부양자	2007	8,823	10,397	1,178,359	0.190	220,428	5,065	22,978	4.756
	2008	11,706	14,112	1,205,505	0.200	297,831	6,696	22,482	5.093
	2009	14,328	17,760	1,239,554	0.203	388,567	8,819	22,697	5.499
	2010	16,311	21,194	1,299,338	0.203	462,609	10,687	23,102	5.757
	2011	20,172	26,350	1,306,289	0.208	548,166	12,993	23,703	5.658
	2012	23,640	34,110	1,442,873	0.207	685,919	15,616	22,767	5.999
	2013	26,990	40,164	1,488,095	0.203	803,172	18,579	23,132	6.034
	2014	33,053	53,122	1,607,187	0.206	1,001,246	23,756	23,727	6.235
	2015	37,959	63,762	1,679,761	0.205	1,173,094	29,737	25,349	6.343
	2016	46,396	73,134	1,576,307	0.226	1,288,669	37,953	29,451	6.269
	2017	54,590	92,002	1,685,332	0.258	1,492,010	46,234	30,988	7.040
	2018	58,126	103,430	1,779,414	0.267	1,597,672	49,701	31,108	7.327
	2019	62,809	120,972	1,926,022	0.280	1,747,250	55,727	31,894	7.798
	2020	58,247	124,625	2,139,590	0.269	1,463,476	55,930	38,217	6.753
	2021	66,042	136,217	2,062,576	0.302	1,571,647	61,082	38,865	7.183
의료급여세대주	2007	-	-	-	-	30	1	18,561	10.000
	2008	9	12	1,341,144	0.429	186	5	29,315	8.857
	2009	22	20	905,253	0.379	506	11	21,157	8.724
	2010	20	35	1,759,658	0.260	647	13	19,644	8.403
	2011	13	10	779,182	0.121	1,016	21	21,107	9.495
	2012	11	12	1,123,321	0.070	1,510	22	14,698	9.557
	2013	43	34	798,488	0.235	1,894	28	14,809	10.350
	2014	50	51	1,026,174	0.238	2,142	37	17,188	10.200
	2015	46	47	1,030,655	0.165	2,744	56	20,452	9.871
	2016	68	89	1,307,912	0.180	3,564	114	31,862	9.454
	2017	65	69	1,062,751	0.148	4,674	110	23,524	10.623
	2018	118	199	1,690,398	0.225	5,818	164	28,180	11.103
	2019	155	267	1,724,705	0.258	6,386	226	35,408	10.626
	2020	153	296	1,935,925	0.230	6,346	225	35,418	9.557
	2021	185	271	1,462,502	0.250	7,137	265	37,089	9.645
의료급여세대원	2007	18	18	988,228	0.180	497	8	17,092	4.970
	2008	141	149	1,055,878	0.164	6,398	142	22,173	7.422
	2009	231	271	1,173,290	0.178	12,378	259	20,924	9.529
	2010	370	431	1,165,846	0.209	17,190	353	20,514	9.728
	2011	425	439	1,033,871	0.217	18,374	374	20,338	9.389
	2012	448	507	1,131,924	0.222	18,669	351	18,826	9.256
	2013	437	591	1,352,874	0.213	20,379	401	19,697	9.941
	2014	536	690	1,287,575	0.266	20,988	433	20,644	10.400
	2015	511	585	1,145,539	0.250	20,753	444	21,379	10.158
	2016	520	672	1,291,802	0.213	22,894	519	22,681	9.398
	2017	448	522	1,165,928	0.191	24,263	560	23,093	10.342
	2018	490	675	1,377,949	0.217	24,247	574	23,679	10.715
	2019	550	913	1,660,057	0.235	25,551	636	24,876	10.901
	2020	498	963	1,934,031	0.212	21,391	593	27,738	9.110
	2021	575	1,088	1,892,984	0.245	21,067	676	32,099	8.965

<표 16>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단위:명, 건, 백만 원, 원)

가입자 유형	연도	입원				처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지 역 세 대 주	2007	1,258	2,905	2,309,204	0.368	25,220	1,497	59,342	7.381
	2008	1,619	3,866	2,388,015	0.389	27,098	1,573	58,059	6.514
	2009	1,352	2,861	2,116,012	0.390	27,054	1,641	60,639	7.806
	2010	1,427	2,770	1,941,160	0.404	27,887	1,623	58,215	7.896
	2011	1,450	2,927	2,018,595	0.376	28,296	1,689	59,686	7.331
	2012	1,494	3,065	2,051,247	0.407	29,057	1,522	52,363	7.913
	2013	1,154	2,307	1,999,392	0.367	25,946	1,316	50,728	8.242
	2014	1,071	2,108	1,968,472	0.363	22,689	1,167	51,432	7.699
	2015	775	1,720	2,219,101	0.383	15,793	858	54,349	7.799
	2016	1,335	2,823	2,114,499	0.298	22,926	1,277	55,701	5.122
	2017	1,797	3,665	2,039,341	0.482	31,569	1,794	56,834	8.466
	2018	1,867	4,261	2,282,476	0.457	35,699	1,996	55,913	8.748
	2019	2,187	4,545	2,078,348	0.329	40,799	2,339	57,321	6.141
	2020	2,408	5,174	2,148,556	0.310	45,384	2,603	57,360	5.841
	2021	2,694	5,947	2,207,323	0.337	52,964	3,124	58,990	6.626
지 역 세 대 원	2007	817	1,753	2,145,814	0.212	24,242	1,146	47,275	6.277
	2008	875	1,806	2,064,371	0.202	26,121	1,255	48,054	6.035
	2009	881	1,648	1,870,889	0.220	26,706	1,300	48,668	6.677
	2010	941	1,929	2,050,019	0.233	27,276	1,300	47,643	6.750
	2011	1,010	1,790	1,772,336	0.221	28,116	1,264	44,974	6.150
	2012	989	2,014	2,035,916	0.237	28,392	1,159	40,814	6.797
	2013	869	1,577	1,815,241	0.227	25,198	995	39,490	6.596
	2014	954	1,736	1,820,173	0.274	22,486	918	40,821	6.456
	2015	758	1,144	1,508,890	0.272	15,850	684	43,127	5.683
	2016	1,109	1,564	1,410,442	0.193	20,278	886	43,694	3.532
	2017	1,507	2,208	1,465,170	0.396	27,025	1,206	44,610	7.095
	2018	1,160	2,367	2,040,611	0.294	27,491	1,288	46,846	6.974
	2019	1,098	2,019	1,838,879	0.283	28,009	1,433	51,151	7.213
	2020	955	2,233	2,338,348	0.264	24,086	1,374	57,036	6.659
	2021	1,216	2,945	2,422,078	0.335	25,867	1,470	56,827	7.124
직 장 가 입 자	2007	465	858	1,845,734	0.097	25,562	1,239	48,474	5.306
	2008	619	1,330	2,148,558	0.113	29,740	1,489	50,054	5.442
	2009	796	1,421	1,784,583	0.133	33,353	1,682	50,416	5.576
	2010	876	1,737	1,982,598	0.135	36,085	1,778	49,263	5.582
	2011	1,131	2,082	1,840,562	0.142	39,145	1,852	47,306	4.930
	2012	945	2,054	2,173,718	0.138	40,251	1,740	43,230	5.873
	2013	906	1,611	1,778,253	0.144	38,196	1,691	44,272	6.089
	2014	908	1,365	1,503,246	0.157	36,913	1,584	42,915	6.368
	2015	601	972	1,617,879	0.120	27,753	1,255	45,225	5.555
	2016	1,005	1,788	1,779,440	0.092	36,678	1,594	43,449	3.343
	2017	1,442	2,629	1,823,197	0.171	51,449	2,286	44,442	6.086
	2018	1,603	3,040	1,896,330	0.178	58,675	2,684	45,738	6.502
	2019	1,891	3,837	2,028,957	0.201	65,615	3,291	50,156	6.990
	2020	1,928	4,314	2,237,521	0.201	60,641	3,302	54,453	6.325
	2021	2,356	4,775	2,026,722	0.233	65,684	3,713	56,535	6.489
직 장	2007	956	1,968	2,059,093	0.136	35,515	1,634	46,001	5.040
	2008	1,198	2,518	2,101,678	0.148	39,838	1,795	45,060	4.930

피부양자	2009	1,360	2,483	1,825,790	0.149	43,687	1,970	45,083	4.799
	2010	1,599	3,392	2,121,323	0.161	47,824	2,160	45,164	4.815
	2011	1,833	3,259	1,778,086	0.155	50,582	2,192	43,331	4.288
	2012	1,650	2,985	1,809,137	0.153	49,877	1,929	38,674	4.615
	2013	1,415	2,536	1,792,517	0.138	45,345	1,777	39,184	4.430
	2014	1,286	2,368	1,841,332	0.135	41,338	1,631	39,452	4.340
	2015	1,147	2,125	1,853,057	0.135	32,071	1,280	39,908	3.772
	2016	1,717	3,097	1,803,594	0.105	40,184	1,667	41,481	2.465
	2017	2,131	4,024	1,888,133	0.230	50,218	2,228	44,365	5.429
	2018	2,930	5,833	1,990,661	0.302	54,279	2,548	46,945	5.592
	2019	2,623	6,094	2,323,332	0.268	56,316	2,786	49,475	5.749
	2020	2,391	5,175	2,164,491	0.283	46,912	2,611	55,654	5.544
	2021	2,601	6,131	2,357,318	0.323	49,627	2,839	57,197	6.172
의료급여세대주	2007	1	0	344,007	0.500	-	-	-	-
	2008	-	-	-	-	1	0	17,476	0.500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	-	-	-	1	0	7,891	0.500
	2012	-	-	-	-	-	-	-	-
	2013	-	-	-	-	-	-	-	-
	2014	-	-	-	-	-	-	-	-
	2015	-	-	-	-	41	1	29,041	20.500
	2016	12	22	1,801,862	1.500	78	5	60,856	9.750
	2017	30	85	2,820,025	1.154	464	26	54,973	17.846
	2018	60	120	2,006,191	1.000	1,044	55	52,728	17.400
	2019	121	257	2,128,085	1.090	1,905	134	70,345	17.162
	2020	180	388	2,155,484	1.216	2,587	197	76,286	17.480
	2021	339	770	2,271,389	1.569	3,859	316	81,935	17.866
의료급여세대원	2007	-	-	-	-	-	-	-	-
	2008	-	-	-	-	3	0	10,850	1.500
	2009	-	-	-	-	-	-	-	-
	2010	-	-	-	-	-	-	-	-
	2011	-	-	-	-	3	0	12,465	3.000
	2012	-	-	-	-	-	-	-	-
	2013	-	-	-	-	15	0	10,751	7.500
	2014	-	-	-	-	55	1	25,497	11.000
	2015	1	1.43	1,433,318	0.250	61	2	32,232	15.250
	2016	-	-	-	-	27	1	38,554	4.500
	2017	-	-	-	-	97	4	41,294	13.857
	2018	-	-	-	-	198	9	46,229	18.000
	2019	15	40	2,693,886	0.714	353	15	43,649	16.810
	2020	14	29	2,044,196	0.538	462	27	58,052	17.769
	2021	29	64	2,205,304	0.784	581	42	72,979	15.703

나. 분석대상자의 거주기간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해당 연구에서는 입국시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연구기간동안 건강보험 최초 취득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봄

○ 건강보험 최초취득한 연월의 가입자 정보를 기준으로 이용함

□ 가입형태별로 분석대상자의 거주기간별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의료이용은 크게 일반외래, 응급외래, 입원, 처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분석 결과 건강보험 자격 취득 직후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험 역선택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반외래

○ 외국인 (<표 17> 참조)

- 지역세대주의 경우, 자격취득 후 2-5개월 이내에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 지역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자격취득 10개월 이후 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후가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재외국민 (<표 18> 참조)

-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임
- 지역세대주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후 7개월부터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임
-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자격취득 이후 의료이용에 큰 변화가 없음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점차 감소하다가 7-8개월 이후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응급외래

○ 외국인 (<표 17> 참조)

- －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후 2-4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추세
-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2-4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
-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음
-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많음

○ 재외국민 (<표 18> 참조)

- －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임
-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2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임
-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응급외래 이용건수가 적어 추세파악이 힘들

<표 17> 외국인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단위: 건, 백만 원, 원)

구분		일반외래			응급외래		
가입자 유형	자격 취득후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지 역 세 대 주	1개월	251,251	11,822	47,051	2,806	379	135,044
	2개월	262,355	11,640	44,369	2,920	365	124,874
	3개월	265,669	11,436	43,046	2,953	362	122,703
	4개월	261,993	11,289	43,089	2,709	323	119,166
	5개월	260,269	11,044	42,432	2,781	329	118,398
	6개월	251,715	10,599	42,106	2,820	336	119,020
	7개월	245,683	10,471	42,619	2,721	315	115,814
	8개월	242,631	10,234	42,180	2,245	266	118,279
	9개월	243,470	10,393	42,688	2,447	305	124,446
	10개월	223,678	9,324	41,685	1,957	234	119,764
	11개월	225,000	9,309	41,373	1,911	215	112,246
	12개월	223,939	9,353	41,767	1,964	225	114,563
지 역 세 대 원	12개월이상	16,974,077	733,190	43,195	124,934	13,983	111,926
	1개월	206,224	7,889	38,256	2,237	245	109,482
	2개월	226,994	8,080	35,598	2,563	277	108,082
	3개월	231,766	8,054	34,753	2,696	279	103,630
	4개월	233,005	7,995	34,312	2,655	264	99,440
	5개월	234,455	7,967	33,981	2,574	253	98,127
	6개월	235,395	7,800	33,137	2,468	243	98,661
	7개월	237,375	7,805	32,880	2,583	259	100,335
	8개월	239,547	7,839	32,724	2,501	256	102,180
	9개월	242,473	7,833	32,303	2,559	252	98,441

	10개월	243,730	7,840	32,165	2,596	257	98,832
	11개월	240,108	7,718	32,143	2,495	250	100,351
	12개월	234,283	7,490	31,970	2,570	250	97,203
	12개월이상	15,506,917	555,343	35,813	128,146	13,185	102,893
직 장 가 입 자	1개월	238,357	8,374	35,131	5,331	573	107,445
	2개월	320,713	10,806	33,692	6,737	680	100,918
	3개월	340,682	11,203	32,883	6,822	672	98,463
	4개월	345,894	11,325	32,741	6,926	688	99,326
	5개월	349,190	11,457	32,811	6,779	661	97,487
	6개월	352,430	11,497	32,622	6,796	651	95,857
	7개월	355,367	11,564	32,542	6,644	633	95,244
	8개월	357,726	11,717	32,755	6,525	628	96,198
	9개월	359,329	11,682	32,510	6,666	611	91,717
	10개월	359,124	11,569	32,215	6,561	604	91,986
	11개월	360,059	11,740	32,605	6,636	624	94,085
	12개월	350,879	11,484	32,730	6,315	578	91,567
	12개월이상	27,983,509	1,014,636	36,258	400,588	35,181	87,823
직 장 피 부 양 자	1개월	353,049	14,507	41,089	3,806	416	109,364
	2개월	346,318	13,625	39,343	3,715	382	102,846
	3개월	332,019	12,726	38,330	3,568	362	101,562
	4개월	319,949	11,996	37,493	3,289	333	101,117
	5개월	308,080	11,234	36,466	3,188	323	101,322
	6개월	305,586	11,006	36,015	3,162	313	99,038
	7개월	305,678	10,935	35,774	2,942	293	99,572
	8개월	301,024	10,608	35,238	2,959	280	94,785
	9개월	295,552	10,269	34,745	3,017	303	100,407
	10개월	289,465	10,038	34,677	2,842	275	96,751
	11개월	283,741	9,898	34,884	2,737	275	100,610
	12개월	279,907	9,695	34,635	2,957	291	98,390
	12개월이상	18,275,831	697,388	38,159	139,806	14,604	104,460
의 료 급 여 세 대 주	1개월	77	2	26,432	-	0.00	-
	2개월	106	3	30,416	-	0.00	-
	3개월	109	3	30,402	-	0.00	-
	4개월	162	7	40,643	1	0.12	121,137
	5개월	95	3	33,761	1	0.08	75,174
	6개월	122	4	35,362	1	0.28	283,476
	7개월	180	6	34,168	2	0.08	38,921
	8개월	190	6	29,086	1	0.04	40,401
	9개월	202	9	45,483	1	0.03	27,599
	10개월	233	14	59,592	-	0.00	-
	11개월	281	24	84,457	-	0.00	-
	12개월	279	13	47,572	1	0.02	24,193
	12개월이상	74,153	2,911	39,260	528	50.03	94,757
의 료 급 여 세 대 원	1개월	365	12	33,065	1	0.03	25,887
	2개월	419	13	32,217	2	0.14	69,288
	3개월	512	17	33,988	8	0.57	71,513
	4개월	660	18	27,316	6	0.22	35,979
	5개월	878	27	30,707	7	0.72	102,387
	6개월	1,053	31	29,391	9	0.34	37,506
	7개월	1,229	36	29,444	9	1.14	126,913
	8개월	1,143	42	37,115	11	0.74	66,931
	9개월	1,429	46	31,924	12	1.53	127,858
	10개월	1,541	47	30,704	7	0.87	123,982

	11개월	1,797	58	32,468	17	1.50	88,141
	12개월	1,962	69	34,956	14	0.79	56,304
	12개월이상	393,916	12,791	32,472	3,035	278.86	91,881

<표 18> 재외국민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단위: 건, 백만 원, 원)

구분		일반외래			응급외래		
가입자 유형	자격 취득 후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지 역 세 대 주	1개월	18,669	1,083	58,014	95	15	155,396
	2개월	13,707	740	53,961	83	13	154,169
	3개월	11,452	607	53,014	53	6	121,874
	4개월	10,911	564	51,730	48	7	142,480
	5개월	10,245	511	49,880	61	9	140,945
	6개월	9,552	484	50,628	67	10	142,265
	7개월	9,236	459	49,748	59	10	173,240
	8개월	8,785	469	53,353	57	8	143,469
	9개월	8,705	415	47,696	51	7	132,712
	10개월	8,872	444	50,074	40	5	121,488
	11개월	8,974	438	48,782	41	6	143,705
	12개월	9,026	486	53,800	52	8	148,689
	12개월이상	434,037	19,452	44,817	2,019	297	146,872
지 역 세 대 원	1개월	9,054	408	45,066	37	5	124,096
	2개월	6,983	318	45,586	35	7	208,677
	3개월	6,173	278	45,019	27	4	141,048
	4개월	5,461	231	42,385	46	7	158,639
	5개월	5,643	244	43,178	32	5	149,368
	6개월	5,409	224	41,441	20	2	119,111
	7개월	5,528	231	41,725	29	5	158,723
	8개월	5,362	229	42,697	38	6	158,481
	9개월	5,309	211	39,685	27	4	134,173
	10개월	5,635	227	40,228	22	4	196,696
	11개월	5,610	218	38,774	30	5	177,723
	12개월	5,423	197	36,412	33	5	159,757
	12개월이상	354,014	13,372	37,772	1,735	247	142,585
직 장 가 입 자	1개월	6,195	310	50,088	59	7	115,177
	2개월	6,704	314	46,866	54	7	120,658
	3개월	6,407	261	40,804	48	8	169,794
	4개월	6,534	290	44,373	49	6	122,137
	5개월	6,362	268	42,152	46	6	134,863
	6개월	6,300	249	39,524	37	5	143,459
	7개월	6,391	253	39,559	38	5	136,358
	8개월	6,311	267	42,379	40	6	156,850
	9개월	6,478	269	41,505	37	5	148,333
	10개월	6,501	245	37,642	43	6	129,250
	11개월	6,424	243	37,898	39	4	113,057
	12개월	6,409	245	38,229	33	5	140,178
	12개월이상	474,078	18,553	39,134	2,737	370	135,226
직 장 피	1개월	18,539	833	44,919	83	12	146,592
	2개월	12,922	570	44,102	60	7	124,604
	3개월	10,628	474	44,567	60	8	128,126
	4개월	9,558	401	42,002	49	8	160,543

부 양 자	5개월	9,149	379	41,412	44	6	139,756
	6개월	9,053	378	41,739	52	7	130,182
	7개월	9,177	387	42,190	50	8	154,046
	8개월	8,489	343	40,359	53	7	124,918
	9개월	8,408	326	38,785	58	10	180,947
	10개월	8,576	341	39,805	45	5	120,761
	11개월	9,030	336	37,242	64	9	142,942
	12개월	9,805	383	39,074	55	10	174,811
	12개월이상	575,018	21,836	37,974	3,088	423	137,071
의 료 급 여 세 대 주	1개월	73	9	122,075	-	0.00	-
	2개월	87	7	77,312	-	0.00	-
	3개월	152	6	37,980	-	0.00	-
	4개월	170	10	58,676	-	0.00	-
	5개월	202	11	54,362	-	0.00	-
	6개월	236	13	55,253	-	0.00	-
	7개월	288	17	59,199	-	0.00	-
	8개월	380	23	60,429	-	0.00	-
	9개월	398	28	69,396	3	0.83	277,127
	10개월	454	37	80,949	-	0.00	-
	11개월	514	32	62,683	6	2.22	369,513
	12개월	498	33	66,154	2	0.22	110,922
	12개월이상	18,741	1,301	69,447	66	13.74	208,132
의 료 급 여 세 대 원	1개월	12	1	48,362	-	0.00	-
	2개월	17	0	16,947	-	0.00	-
	3개월	42	2	41,778	-	0.00	-
	4개월	35	1	34,855	-	0.00	-
	5개월	56	3	44,670	-	0.00	-
	6개월	50	2	38,432	-	0.00	-
	7개월	78	4	51,038	-	0.00	-
	8개월	94	4	37,279	1	0.26	264,330
	9개월	102	4	40,311	-	0.00	-
	10개월	63	6	89,582	1	0.17	170,050
	11개월	52	2	42,814	4	0.81	202,514
	12개월	61	3	49,663	-	0.00	-
	12개월이상	3,040	172	56,606	12	1.36	113,618

□ 입원

○ 외국인 (<표 19> 참조)

- 지역세대주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지역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후 9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추세
-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자격취득 이후 의료이용에 큰 변화가 없음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점차 감소하다가 7-9개월 이내에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많음

○ 재외국민 (<표 20> 참조)

-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음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음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이용건수가 적어 추세파악이 어려움

□ 처방

○ 외국인 (<표 19> 참조)

-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추세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추세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2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으며,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꾸준히 의료이용이 많음

○ 재외국민 (<표 20> 참조)

-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격취득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 의료이용이 가장 많음
-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에서도 의료보험 역선택 증거로 해석 여지
- 의료급여세대주와 의료급여세대원의 경우, 자격취득 후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표 19> 외국인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변화 (입원, 처방)

(단위: 건, 백만 원, 원)

구분		입원			처방		
가입자 유형	자격 취득후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지 역 세 대 주	1개월	9,006	19,820	2,200,765	121,355	3,457	28,485
	2개월	8,234	17,618	2,139,714	129,673	3,786	29,198
	3개월	7,867	16,417	2,086,792	133,462	3,943	29,546
	4개월	7,643	16,287	2,130,931	132,236	4,015	30,359
	5개월	7,318	14,898	2,035,748	133,136	4,157	31,222
	6개월	7,679	15,127	1,969,895	129,875	4,179	32,174
	7개월	6,840	13,811	2,019,081	127,382	4,145	32,539
	8개월	6,652	13,684	2,057,186	126,048	4,169	33,074
	9개월	6,325	12,770	2,018,957	125,488	4,145	33,032
	10개월	5,874	12,230	2,081,980	119,405	4,121	34,516
	11개월	5,764	12,171	2,111,553	120,588	4,119	34,161
	12개월	5,673	11,979	2,111,497	120,366	4,153	34,504
지 역 세 대 원	12개월이상	330,132	649,091	1,966,156	9,338,394	364,648	39,048
	1개월	5,809	11,042	1,900,903	105,595	2,217	20,994
	2개월	5,585	9,525	1,705,410	116,229	2,503	21,536
	3개월	5,497	8,756	1,592,780	120,974	2,645	21,866
	4개월	5,373	8,076	1,503,114	122,549	2,747	22,413
	5개월	5,282	8,021	1,518,638	124,151	2,792	22,488
	6개월	5,511	7,903	1,434,103	125,137	2,842	22,708
	7개월	5,964	8,484	1,422,548	125,392	2,814	22,443
	8개월	7,737	10,565	1,365,541	124,879	2,838	22,729
	9개월	10,103	13,295	1,315,973	126,792	2,858	22,543
	10개월	9,197	12,213	1,327,945	130,321	2,963	22,734
	11개월	8,106	11,326	1,397,255	131,708	3,052	23,174
직 장 가 입 자	12개월	7,148	10,050	1,405,959	131,196	3,028	23,082
	12개월이상	287,850	470,952	1,636,102	9,090,868	267,328	29,406
	1개월	5,244	10,030	1,912,568	142,355	2,716	19,076
	2개월	5,210	8,198	1,573,432	194,490	3,690	18,975
	3개월	5,208	7,739	1,485,902	207,230	4,035	19,470
	4개월	5,052	7,560	1,496,379	211,226	4,187	19,820
	5개월	5,213	7,286	1,397,745	212,762	4,241	19,933
	6개월	4,962	7,477	1,506,796	215,631	4,342	20,138
	7개월	5,064	7,540	1,488,857	217,996	4,439	20,364
	8개월	5,032	7,330	1,456,623	219,994	4,579	20,816
	9개월	5,036	7,195	1,428,644	219,281	4,525	20,637
	10개월	4,914	6,885	1,401,061	218,888	4,593	20,983
직 장 피 부 양 자	11개월	4,799	6,926	1,443,215	219,018	4,637	21,171
	12개월	4,882	7,088	1,451,953	213,643	4,551	21,304
	12개월이상	361,466	567,397	1,569,709	16,741,138	448,573	26,795
	1개월	10,974	24,114	2,197,377	172,079	3,992	23,201
	2개월	9,461	17,591	1,859,277	172,137	4,224	24,539
	3개월	8,353	15,044	1,801,049	166,995	4,156	24,885
	4개월	7,787	13,386	1,718,977	162,908	4,147	25,457
	5개월	7,516	12,913	1,718,057	158,068	3,971	25,123
	6개월	7,779	12,881	1,655,809	156,185	3,905	25,003
	7개월	9,014	13,961	1,548,850	154,162	3,860	25,038
	8개월	11,087	16,577	1,495,158	151,823	3,813	25,113

	9개월	11,242	16,066	1,429,107	150,939	3,747	24,826
	10개월	10,016	14,539	1,451,614	151,173	3,810	25,201
	11개월	8,841	13,274	1,501,418	150,735	3,792	25,155
	12개월	8,263	12,644	1,530,156	151,502	3,847	25,390
	12개월이상	353,102	620,103	1,756,158	10,404,744	328,403	31,563
의료급여세대주	1개월	8	18	2,262,921	46	1	17,463
	2개월	8	27	3,432,869	47	1	19,378
	3개월	6	5	876,765	51	1	15,667
	4개월	5	8	1,545,729	80	1	16,836
	5개월	3	7	2,269,520	52	1	17,571
	6개월	3	4	1,397,967	59	1	21,093
	7개월	4	7	1,650,826	98	2	18,791
	8개월	1	2	1,562,820	96	2	23,394
	9개월	2	2	1,174,597	97	2	17,409
	10개월	4	2	472,625	122	3	21,460
	11개월	4	4	1,080,598	130	2	17,612
	12개월	5	5	911,720	138	3	20,850
	12개월이상	842	1,223	1,451,984	40,797	1,180	28,927
의료급여세대원	1개월	6	6	1,033,310	199	4	20,870
	2개월	13	14	1,065,718	227	4	17,305
	3개월	19	22	1,158,381	281	5	19,505
	4개월	11	17	1,576,612	363	8	21,591
	5개월	11	13	1,201,201	450	9	19,667
	6개월	17	26	1,531,852	562	11	19,878
	7개월	32	46	1,422,125	647	14	22,247
	8개월	29	35	1,221,635	599	13	21,159
	9개월	33	41	1,237,371	797	18	22,073
	10개월	33	54	1,646,286	853	19	21,823
	11개월	50	62	1,232,021	937	20	21,324
	12개월	49	80	1,640,275	989	25	24,779
	12개월이상	5,346	7,298	1,365,172	233,840	5,215	22,303

<표 20> 재외국민 자격취득 후 의료이용 변화 (입원, 처방)

(단위: 건, 백만 원, 원)

구분		입원			처방		
가입자 유형	자격 취득후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지역세대주	1개월	937	2,342	2,499,955	8,504	431	50,677
	2개월	553	1,251	2,262,944	6,204	342	55,196
	3개월	432	1,071	2,478,472	5,269	286	54,191
	4개월	416	926	2,226,882	5,154	294	56,947
	5개월	320	653	2,040,235	4,941	259	52,361
	6개월	316	765	2,421,290	4,617	261	56,452
	7개월	309	733	2,373,003	4,286	216	50,310
	8개월	262	601	2,294,322	4,154	263	63,297
	9개월	260	531	2,044,092	4,240	215	50,621
	10개월	265	523	1,974,916	4,181	229	54,707
	11개월	261	607	2,324,459	4,371	263	60,227
	12개월	242	553	2,286,489	4,479	271	60,547
	12개월이상	9,393	19,320	2,056,876	214,099	12,433	58,071
지역	1개월	291	688	2,365,355	4,190	156	37,301
	2개월	185	368	1,987,848	3,382	136	4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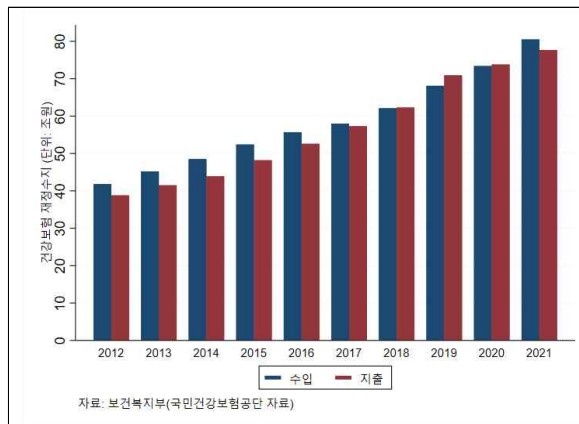
세 대 원	3개월	151	227	1,506,450	3,020	117	38,763
	4개월	145	375	2,587,620	2,618	107	40,880
	5개월	144	280	1,945,470	2,749	105	38,022
	6개월	138	259	1,879,094	2,655	107	40,159
	7개월	117	241	2,055,658	2,768	109	39,329
	8개월	125	233	1,867,705	2,817	113	40,098
	9개월	126	250	1,985,183	2,723	118	43,377
	10개월	131	319	2,432,756	2,844	114	40,113
	11개월	111	240	2,162,108	2,872	106	36,983
	12개월	126	242	1,918,399	2,801	115	40,884
	12개월이상	6,724	12,510	1,860,535	178,251	8,291	46,511
직 장 가 입 자	1개월	255	569	2,232,345	2,943	119	40,343
	2개월	191	433	2,268,067	3,266	130	39,917
	3개월	137	374	2,729,510	3,169	113	35,757
	4개월	142	366	2,577,348	3,245	129	39,784
	5개월	134	211	1,576,862	3,154	119	37,865
	6개월	110	203	1,843,385	3,206	128	40,053
	7개월	110	253	2,298,511	3,372	147	43,711
	8개월	105	136	1,296,703	3,319	122	36,609
	9개월	102	160	1,570,118	3,352	133	39,657
	10개월	88	175	1,986,102	3,450	123	35,625
	11개월	73	113	1,543,797	3,393	135	39,641
	12개월	89	126	1,419,881	3,427	137	39,846
	12개월이상	5,745	10,908	1,898,609	243,185	11,201	46,061
직 장 피 부 양 자	1개월	616	1,379	2,238,851	7,974	329	41,304
	2개월	375	762	2,031,061	5,800	225	38,832
	3개월	315	559	1,774,020	4,898	199	40,656
	4개월	252	587	2,330,015	4,509	187	41,374
	5개월	230	519	2,258,229	4,294	174	40,519
	6개월	232	415	1,787,451	4,308	184	42,603
	7개월	179	349	1,947,958	4,470	183	41,015
	8개월	199	324	1,629,300	4,213	179	42,506
	9개월	181	347	1,917,628	4,182	160	38,340
	10개월	190	310	1,633,770	4,228	159	37,648
	11개월	195	380	1,948,036	4,373	176	40,247
	12개월	200	388	1,942,278	4,756	183	38,409
	12개월이상	9,628	18,583	1,930,112	277,860	12,211	43,948
의 료 급 여 세 대 주	1개월	5	11	2,265,076	31	1	40,300
	2개월	6	11	1,804,854	48	3	68,241
	3개월	7	12	1,648,067	56	3	48,345
	4개월	5	9	1,819,771	66	5	74,574
	5개월	8	20	2,511,042	80	5	59,530
	6개월	11	12	1,127,994	114	8	70,026
	7개월	13	24	1,881,924	136	7	48,577
	8개월	14	15	1,092,833	193	11	58,034
	9개월	14	22	1,605,593	202	12	59,762
	10개월	15	29	1,919,942	231	13	55,688
	11개월	23	45	1,945,330	240	18	73,695
	12개월	17	44	2,566,480	236	12	50,511
	12개월이상	566	1,313	2,320,134	8,158	621	76,157
의 료 급	1개월	2	0	36,595	7	0	15,105
	2개월	-	0	-	5	0	50,948
	3개월	-	0	-	8	0	21,692

여 세 대 원	4개월	1	0	97,440	9	0	23,480
	5개월	-	0	-	20	1	27,298
	6개월	1	3	3,333,189	17	1	47,639
	7개월	1	3	2,948,435	16	1	34,958
	8개월	2	7	3,737,822	29	1	47,370
	9개월	1	3	3,373,877	33	2	53,012
	10개월	3	4	1,400,873	20	7	372,169
	11개월	2	4	1,785,389	17	2	96,955
	12개월	3	30	10,100,000	19	1	68,333
	12개월이상	42	77	1,837,921	1,514	84	55,243

2.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변화 분석

-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건강보험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그림 2>에서 건강보험 재정 변화를 살펴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그림 2>는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구분하여 재정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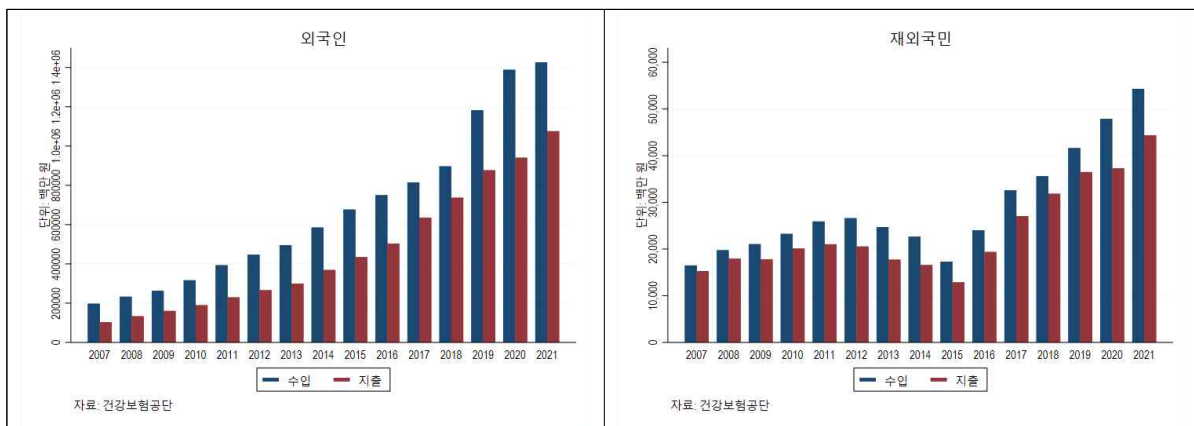
<그림 2> 건강보험 재정 수지 연도별 추이



- 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유입 인구의 연도별 총 의료이용비용 (일반외래, 입원외래, 입원, 처방의 의료비용 합)과 산정보험료를 직접 계산하여 재정 변화를 파악
- <그림 3>는 국내 유입 인구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수입부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 흑자를 유지함

- － 외국인은 일반화하자면 일종의 건강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흑자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건보재정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강화될 여지
- 재외국민의 경우, 연도별 편차가 있지만 최근에는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현재까지는 재정수지 또한 흑자를 유지
- <그림 3>를 고려했을 때 국내 유입 인구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매년 국내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전망 필요
 - － 해당 내용은 V.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그림 3>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수지 연도별 추이



3. 정책효과분석

- 해당 연구는 외국인/재외국민의 입국시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연구기간동안 건강보험 최초취득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
- 지역세대주 최소 거주기간 요건 변화 효과 분석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세대주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소 거주기간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 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 최소 거주 기간을 늘림으로써 지역세대주의 역선택을 완화시키고 재정 효율성 제고할 수 있음
 - － 자료한계로 정확한 거주기간 계산은 불가하지만, 건강정보자료에 있는 건강보험 최초취득 연월을 기준으로 최소거주기간 요건 변화 효과 분석
 - 해당 정책 관련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음

- 정책도입 이후 역선택 문제 완화로 인해 의료이용 정도가 줄어든 것이라는 가설
- 최소거주기간 증가가 필요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주어 의료보험 취득 이후 의료이용이 오히려 증가하여, 의료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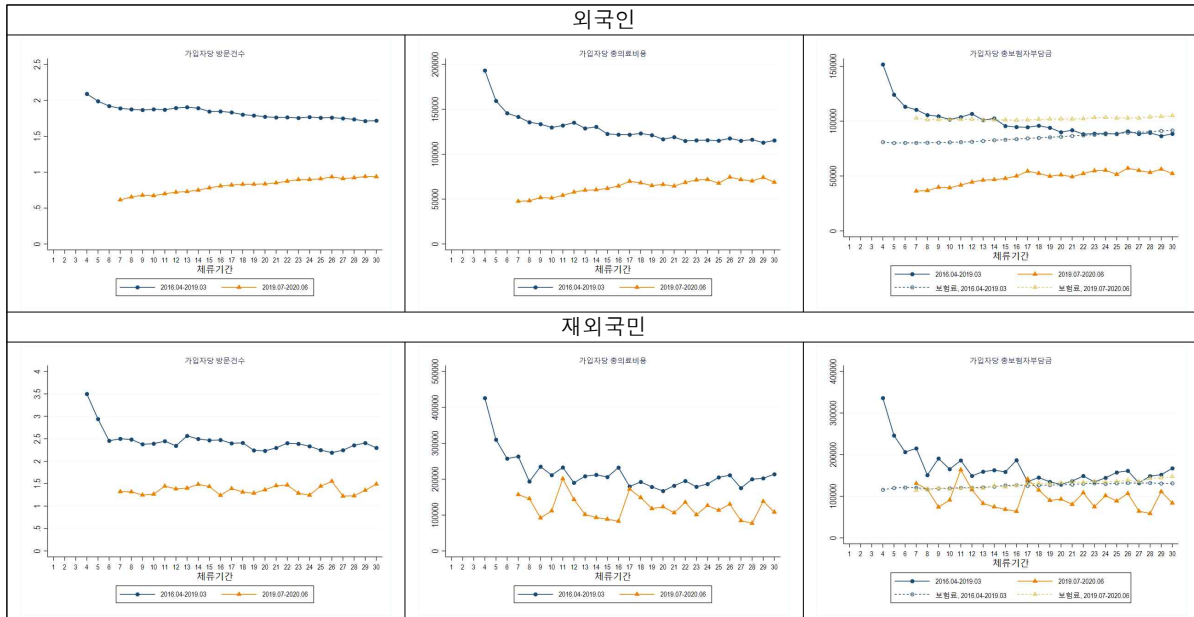
○ 지역가입자 당연적용제도가 같은 시기에 도입됨

-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할 경우,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유입 인구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가 있음
 -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2019년 7월 지역가입자의 가입형태를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개정
- 역선택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상대적으로 건강해서 당연적용제도가 아니었다면 지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의 가입이 2019년 7월부터 증가했을 수 있음
 - 그 결과 최소 거주기간 연장 정책 도입 이후 지역보험가입자의 평균적인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감소했을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음

○ 최소 거주기간 요건 변화 효과분석을 위해, 건강보험 최초취득 시점이 2016년 4월~2019년 3월인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와 2019년 7월~2020년 6월인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추세를 비교

- 정책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최소거주기간 6개월을 충족시키는 시점을 편의상 2019년 7월로 설정
- <그림 4>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정책시행 전/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 최초취득 시점이 2016년 4월~2019년 3월인 지역가입자들은 2019년 7월~2020년 6월인 지역가입자들보다 의료서비스 이용, 총 의료비용, 총보험자부담금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책 시행 전 지역가입자들은 최초취득 직후에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 정책 시행 후 지역가입자들은 체류기간동안 꾸준히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비록 그 증가율이 크지는 않지만, 이는 지역보험가입을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건강의 악화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지막 열의 총 보험자부담금, 산정보험료의 그림을 보면 정책 시행 전에는 산정보험료보다 총 보험자부담금이 높고, 정책 시행 후에는 산정보험료가 총 보험자부담금보다 높음
 - 정책의 영향을 받은 처치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0년에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도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이들은 코로나-19에 의해서도 의료이용을 감소시켰을 수 있음
 - 강건성 검증을 위해 2020년에 지역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동일한 분석을 시행했고, 그 결과는 <그림 4>와 유사했음

<그림 4> 최소거주기간 요건 변화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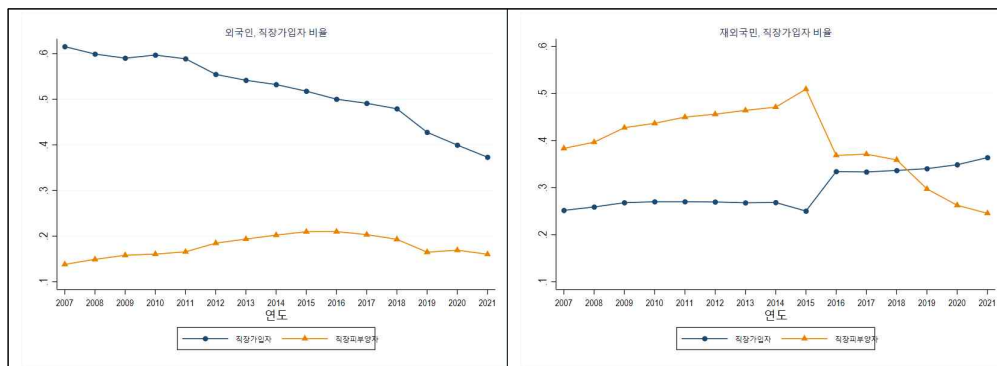


□ 직장가입자 의료이용에 대한 효과 분석

○ 지역가입자 최소 거주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직장가입자 증가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역선택 문제 발생가능

- 하지만 <그림 5>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여부와는 무관하게 2019년도 이후 직장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이는 최소 거주기간 변경 정책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직장보험 가입여부를 증가시켰다는 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함

<그림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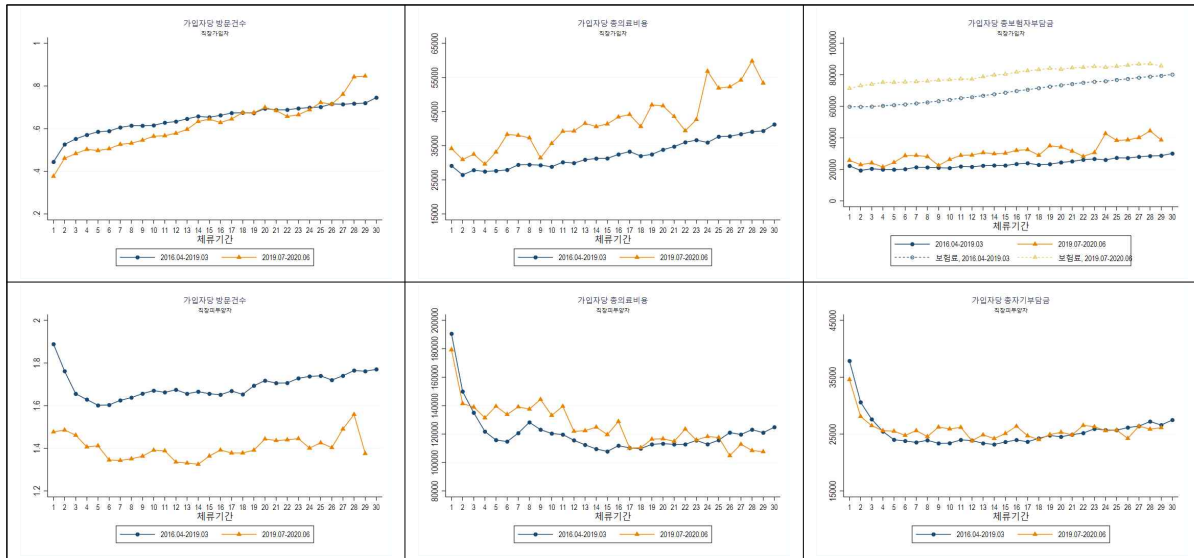
○ 정책도입 전/후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의 의료 이용 추세의 변화를 비교 분석

- <그림 6>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후 의료이용의 패턴을 나타냄
- 직장가입자의 경우 취득 직후 의료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격 취득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임
- 비록 정책 도입 이후 직장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이는 정책 효과라기 보다는 이미 직장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증가추세임을 반영한 결과
- 덧붙여 보험료에 대비했을 때 이미 의료이용이 충분히 낮은 상태라는 점에 기반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상태임
- 반면 직장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직후 의료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 이용이 빠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 이는 지역가입자들의 의료이용과 비슷한 패턴임
 - 다만,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이라는 가설과 일치하게 직장피보험자들의 의료 패턴은 최소 거주기간 변경 정책의 도입과는 무관하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그림 7>은 재외국민의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들의 의료이용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최소 거주기간 변경 정책 도입이 재외국민의 직장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앞선 결과와 일치하게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모두 정책도입 전/후로 의료이용패턴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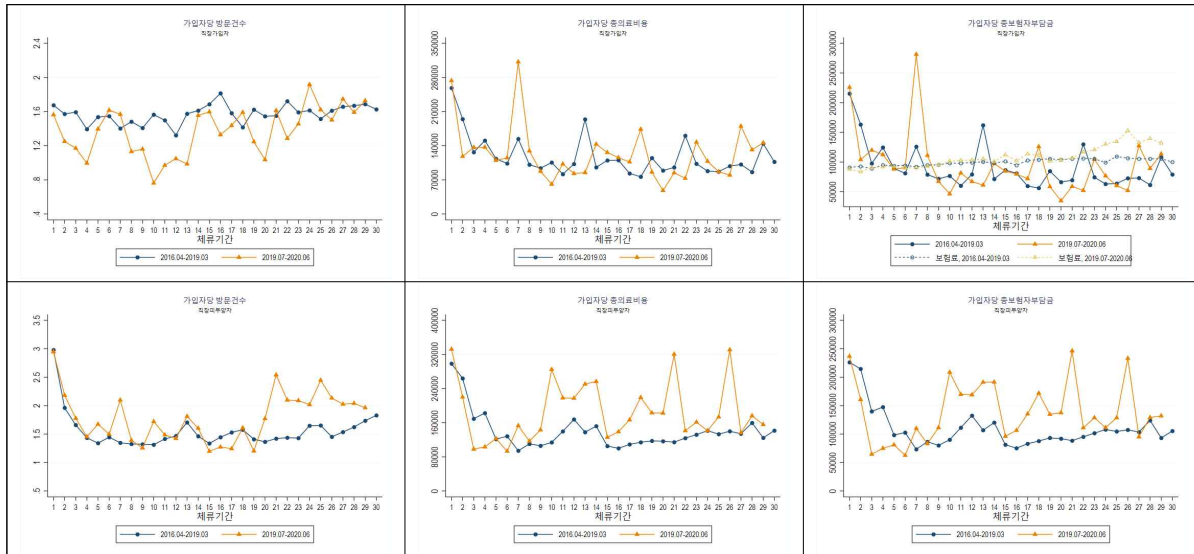
○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함

- 최소 거주기간 변경 정책은 직장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역선택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 이는 직장보험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정책도입 전/후로 의료 이용의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앞선 <그림 4>의 분석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강건성 검증이 될 수 있음
-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최소 거주기간 정책도입 전/후로 의료이용의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음
- 앞선 최소 거주기간 변경 정책의 분석결과가 실제 정책효과를 관측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

<그림 6> 외국인 직장가입자 의료이용현황



<그림 7>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의료이용현황



V.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전망

1.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전망 모형 설정

- 국내 유입 인구 증가가 국내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에 조성법을 사용해서 장기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예측
 - 고려 가능한 분석 방법으로는 크게 1) 조성법 모형(코호트 분석), 2) 시계열 모형이 있음
 - 조성법 모형 중 코호트 기반 모형(cohort-based models)은 모형 내 각 셀별 의료비 및 보험료 수입의 평균치를 계산하고 각 셀에 해당하는 미래의 인구수 추정치를 곱하여 각 셀별로 총 의료비(비용) 및 보험료(수입)를 추정 후 재정 전망을 실시
 - － 더 정교한 코호트 기반 모형은 흡연여부,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이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행위 및 위험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할 수 있음
 - － 조성법 모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첫째, 구현 및 유지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음
 - 둘째, 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간단히 변화시켜 정책 변화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 이런 이유로 본 보고서에는 조성법을 기반으로 재정 전망을 실시함
 - － 조성법 모형의 주요 단점은 정책 영향의 분포를 탐색하기 어려움
 -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국민들의 생활 습관 변화와 그것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는 것은 조성법 모형으로는 어려움
 - 시계열 모형은 시계열 계량경제학 (time-series econometrics)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장기재정전망 실시
 - － 지난 20년간의 재정 시계열 자료를 가장 근접하게 근사할 수 있는 ARIMA모형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해당 변수의 구조를 파악한 뒤,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 전망을 실시
 - －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구조건이 가장 적다는 점(재정 시계열 자료만 있으면 실시가능)이 장점이나, 장기전망이 기존 시계열의 변화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전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측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음

- 특히 외국인 인구는 내국인 인구와 다르게 장기예측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시계열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2.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

□ 조성법을 이용한 재정 추계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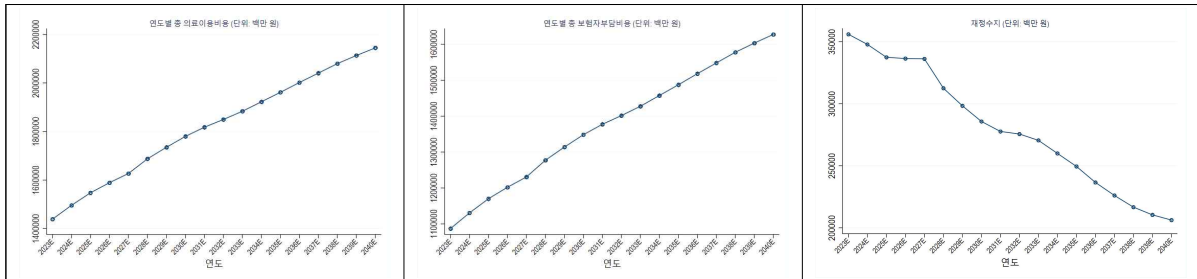
- 먼저 조성법을 이용해서 총 의료이용비용, 총 보험자부담비용, 재정수지를 추계
 - 재외국민은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계
- 연령, 성별, 가입자 유형 특성 등이 의료이용빈도, 급여비 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 추계
 - 가독성을 위해 성별, 가입자유형 특성만 고려하여 아래 시각화 자료를 보고
- 재정 추계 과정
 - 인구 특성별로 셀 조성 후 셀별 의료비 지출 및 보험료 수입 계산
 - 연령(0-14, 15-64, 65+), 성별, 가입자유형(지역, 직장, 의료급여 가입자)으로 셀 특성을 정의
 - 국내 유입 인구 인구구성 변화 시나리오 설정
 - 기본 시나리오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자료 활용)
 - 외국인 상주 인구 구성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여지가 크므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 20% 시나리오 계산
 - 해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19년 자료 기준 (코로나 직전) 의료비 지출 및 보험료 수입 예측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 조성법을 이용한 재정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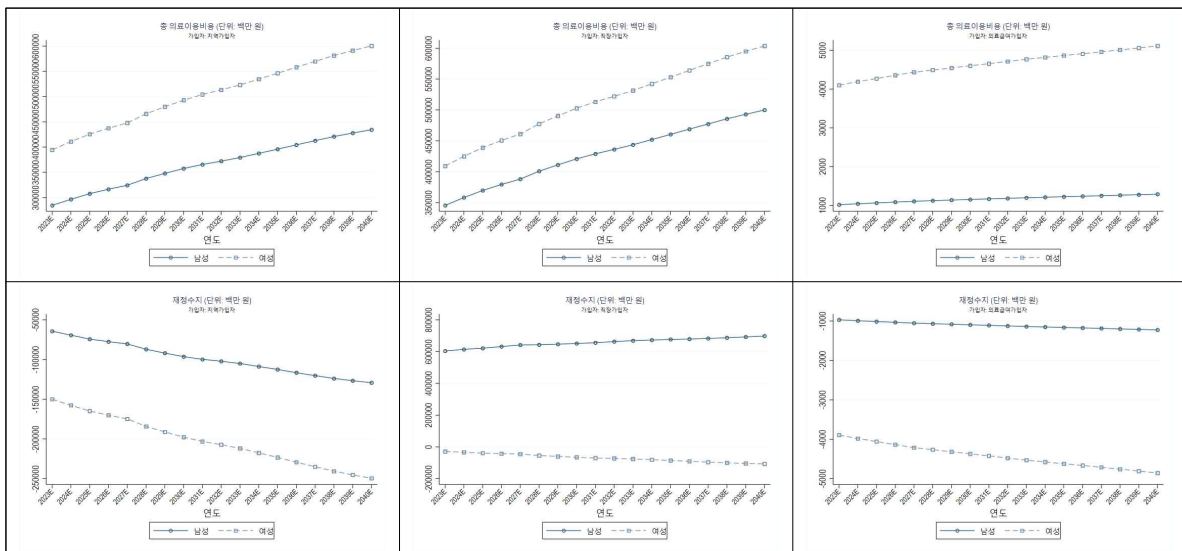
○ 중위추계(기본 시나리오)

- 외국인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림 8>, <그림 9>에 나타남
 - 재정전망 수치는 <부표 5>, <부표 6>에 정리
- 외국인의 경우,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나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재정수지는 2023년 약 3,561억원, 2040년 약 2,062억원으로 추계
 - 지역가입자는 재정수지 적자로 추계되지만, 직장가입자는 흑자로 추계
 - 이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더 젊고 건강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

<그림 8> 외국인 재정추계 (중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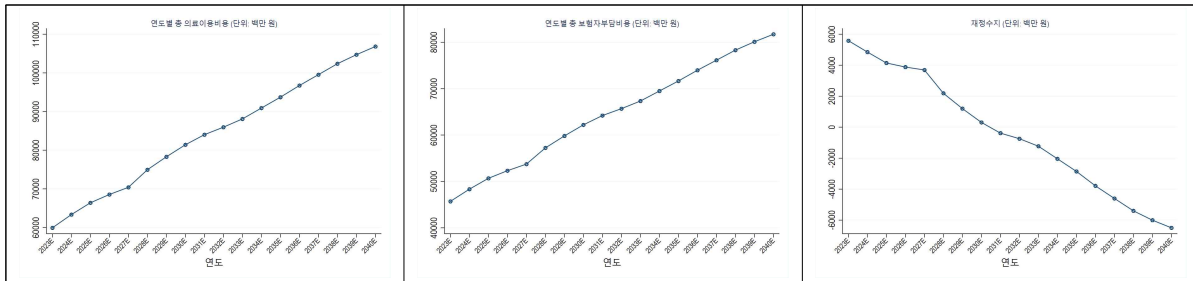


<그림 9> 외국인 특성별 재정추계 (중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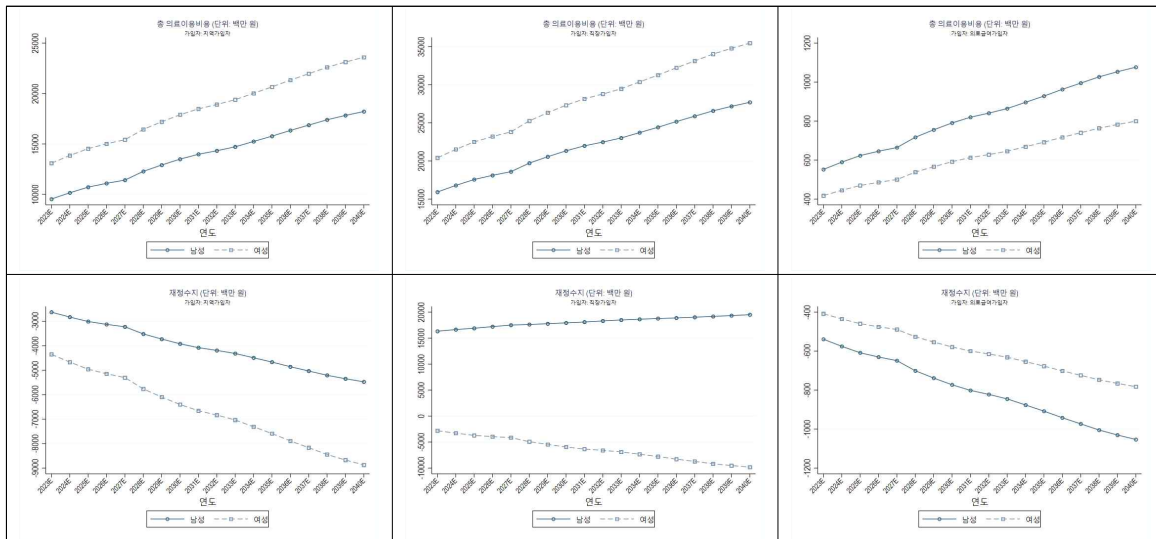


- 재외국민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림 10>과 <그림 11>에 나타남
 - 재정전망 수치는 <부표 7>, <부표 8>에 정리
- 재외국민의 경우,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나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다만, 흑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감소하며 2031년 이후에는 적자로 추계
 - 재정수지는 2023년 약 56억원, 2040년 약 -65억원으로 추계
 - 지역가입자는 재정수지 적자로 추계되지만, 직장가입자는 흑자로 추계
 -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더 젊고 건강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

<그림 10> 재외국민 재정추계 (중위추계)



<그림 11> 재외국민 특성별 재정추계 (중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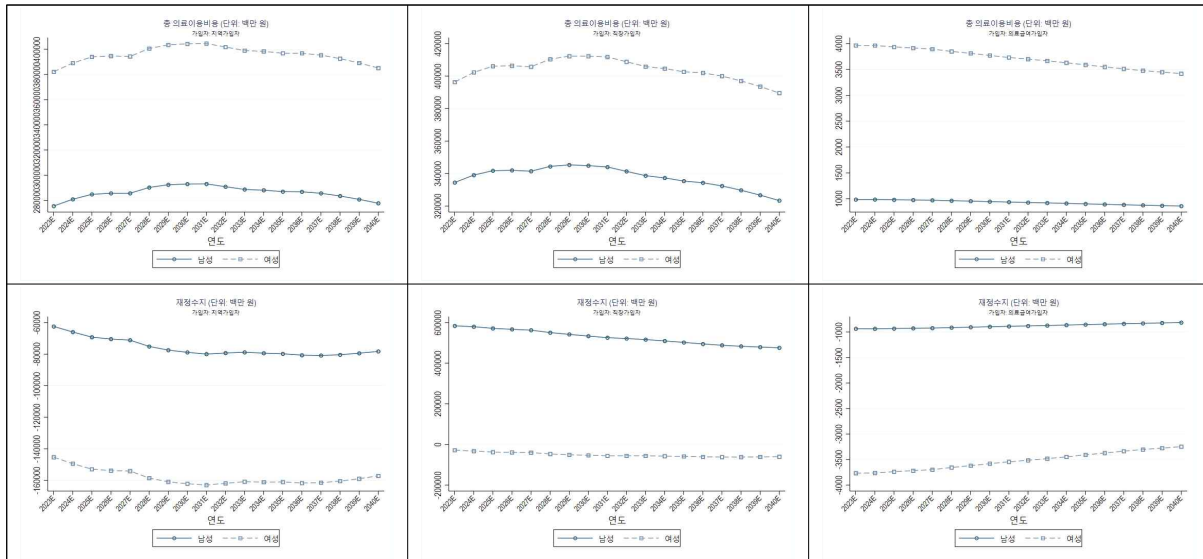
○ 저위추계

- 외국인 상주 인구 구성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여지가 크므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 시나리오 계산하여 추계
- 외국인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림 12>과 <그림 13>에 나타남
 - 재정전망 수치는 <부표 9>, <부표 10>에 정리
- 외국인의 경우, 편차가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감소하며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재정수지는 2023년 약 3,436억원, 2040년 1,759억원으로 추계

<그림 12> 외국인 재정추계 (저위추계)



<그림 13> 외국인 특성별 재정추계 (저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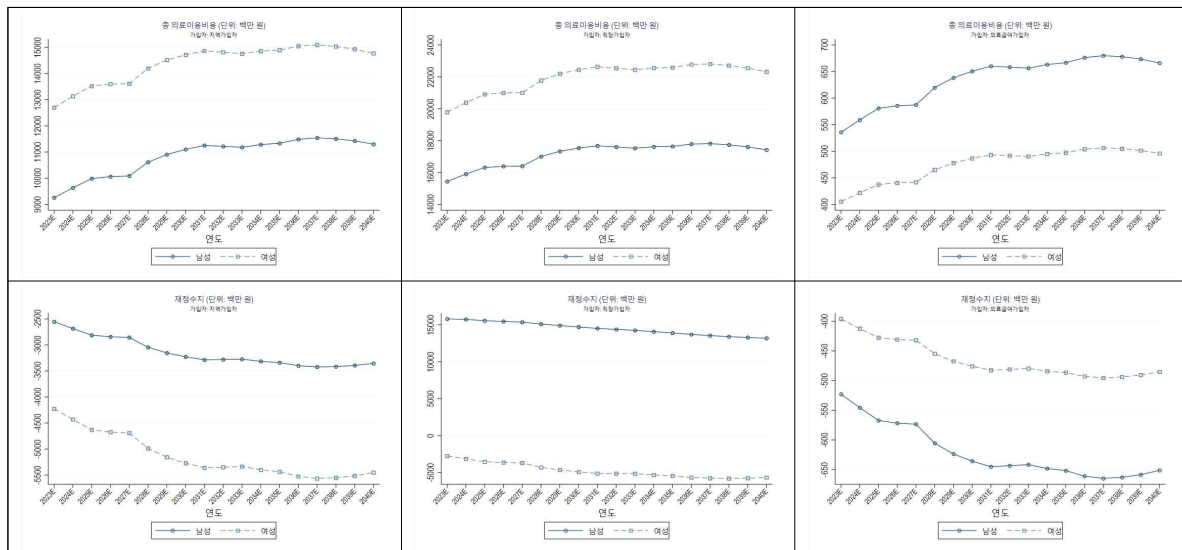


- 재외국민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림 14>과 <그림 15>에 나타남
 - 재정전망 수치는 <부표 11>, <부표 12>에 정리
- 재외국민의 경우,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되지만 장기적으로 흑자가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는 2023년 약 53억원, 2040년 약 -24억원으로 추계

<그림 14> 재외국민 재정추계 (저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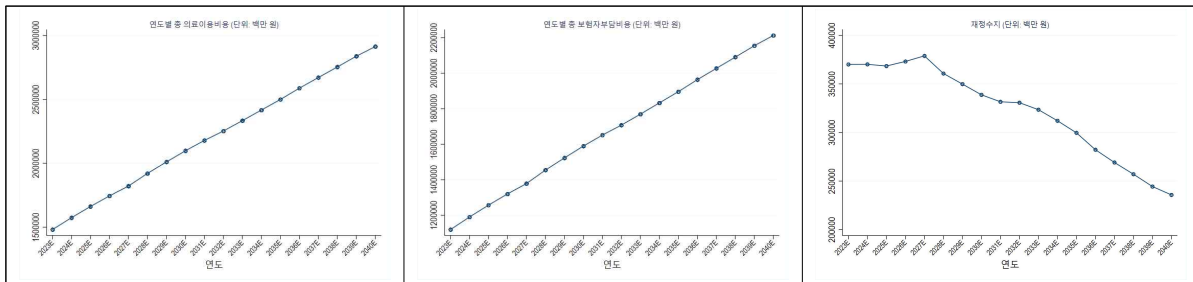
<그림 15> 재외국민 특성별 재정추계 (저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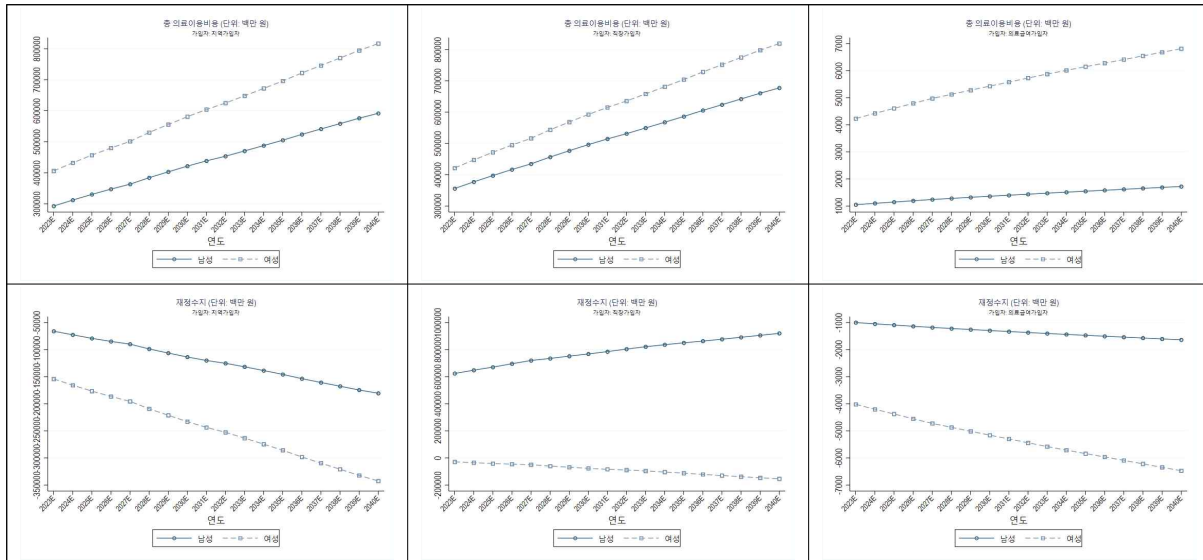
○ 고위추계

- 외국인 상주 인구 구성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여지가 크므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 시나리오 계산하여 추계
- 외국인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림 16>과 <그림 17>에 나타남
 - 재정전망 수치는 <부표 13>, <부표 14>에 정리
- 외국인의 경우,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며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재정수지는 2023년 3,701억원, 2040년 2,358억원으로 추계

<그림 16> 외국인 재정추계 (고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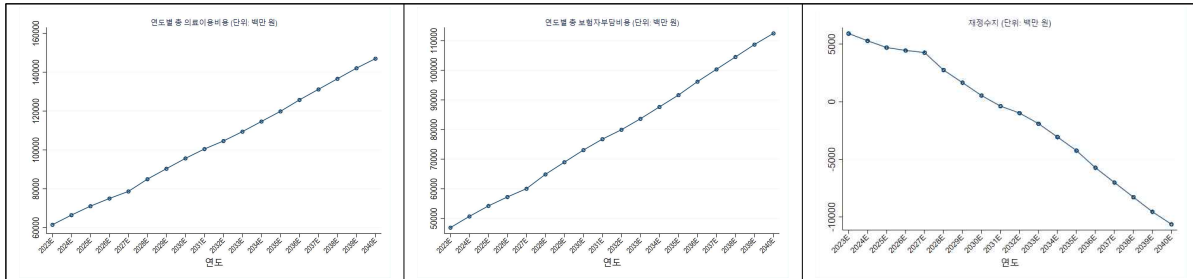


<그림 17> 외국인 특성별 재정추계 (고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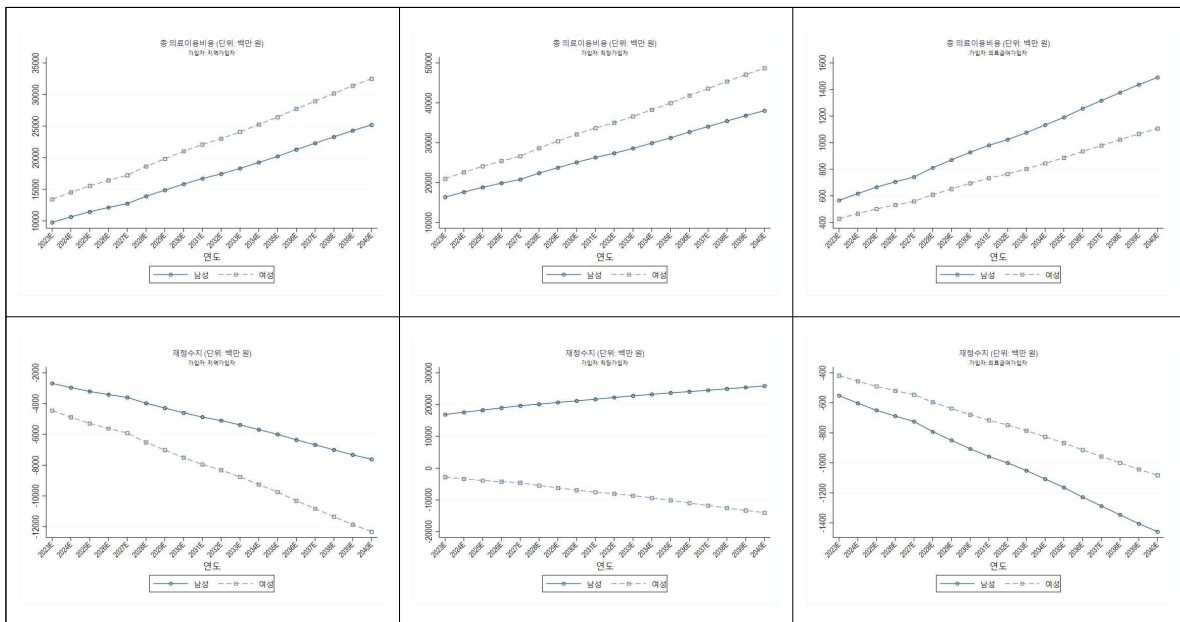


- 재외국민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림 18>과 <그림 19>에 나타남
 - 재정전망 수치는 <부표 15>, <부표 16>에 정리
- 재외국민의 경우, 총의료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며,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되지만 장기적으로 흑자가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는 2023년 약 59억원, 2040년 약 -106억원으로 추계

<그림 18> 재외국민 재정추계 (고위추계)



<그림 19> 재외국민 특성별 재정추계 (고위추계)



□ <그림 20> ~ <그림 22>은 국적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나타냄

○ 이를 통해서 외국인 인구 기준 상위 3개국 및 그 외 국가 출신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함

－ 재외국민의 경우, 절대적인 표본 수 부족으로 국적별 재정추계 불가

○ 구체적으로 분석기간동안 외국인 국적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위 3개국(중국, 베트남, 미국)과 그 외 국가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기간 동안 외국인 국적 비율이 2019년을 기준으로 일정하다고 가정

－ 또한, 개인 특성이 의료비와 보험료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며, 국적별 유입인구의 총 숫자만 변화하고, 유입인구의 성별 혹은 연령대별 분포는 변화하지 않다고 가정

－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의료비 지출과 보험료 수입을 추계하는데 편의(bias)를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내국인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이민 정책 도입시 국내 유입 인구의 평균연령이 낮아질 가능성 혹은 기대수명연장에 따른 건강한 노령화가 진행될 수 있음

· 따라서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미래의 의료비 지출은 현재 추정된 의료비 지출에 비해 낮고 반면에 보험료 납입액은 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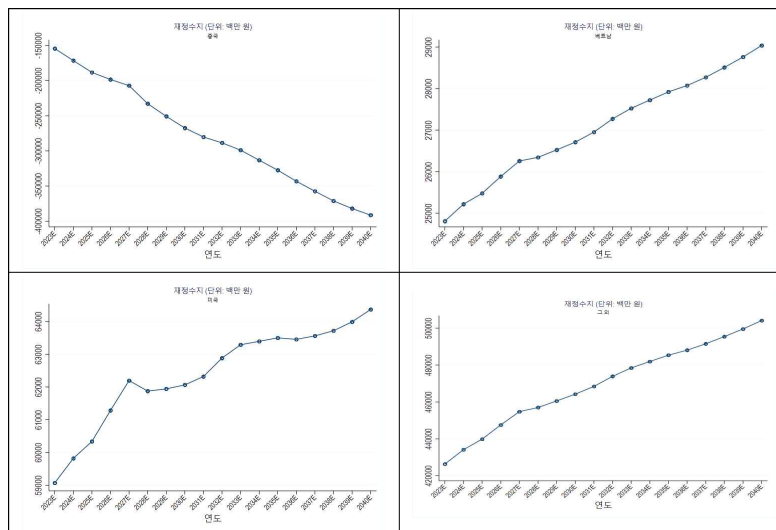
○ 국적별 재정전망 또한 중위추계, 저위추계, 고위추계로 나누어 분석함

－ 중위 추계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상위 2개국과 그 외 국가에서 재정수지 흑자로 추계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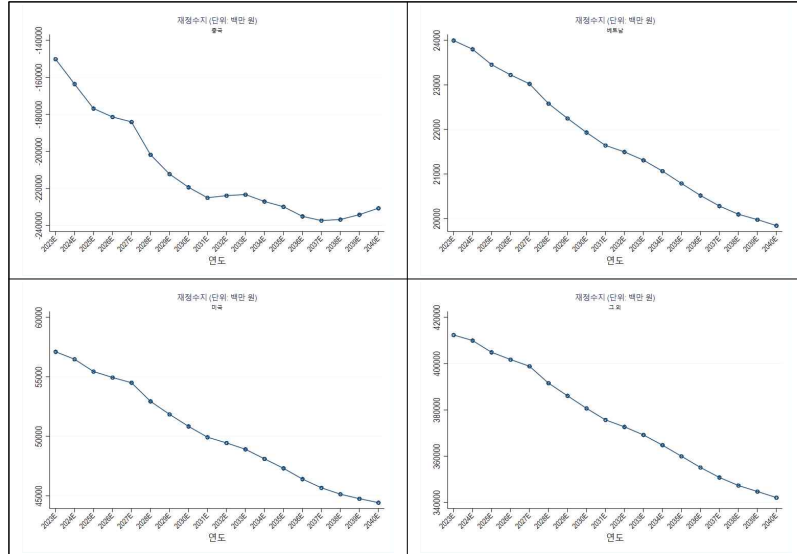
－ 저위 추계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상위 2개국과 그 외 국가에서 재정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림 21>)

－ 고위 추계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상위 2개국과 그 외 국가에서 재정수지 흑자로 추계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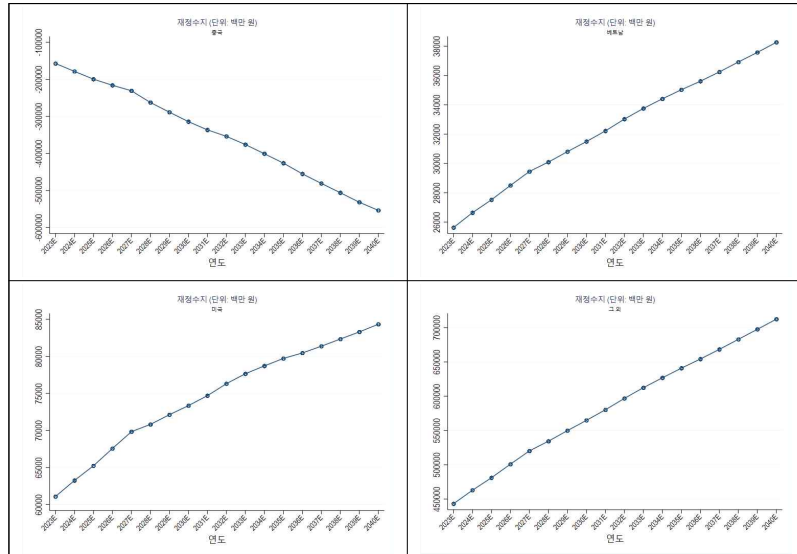
<그림 20> 외국인 국적별 재정전망 (중위추계)



<그림 21> 외국인 국적별 재정전망 (저위추계)



<그림 22> 외국인 국적별 재정전망 (고위추계)



□ 시계열 모형(ARIMA)을 이용한 재정 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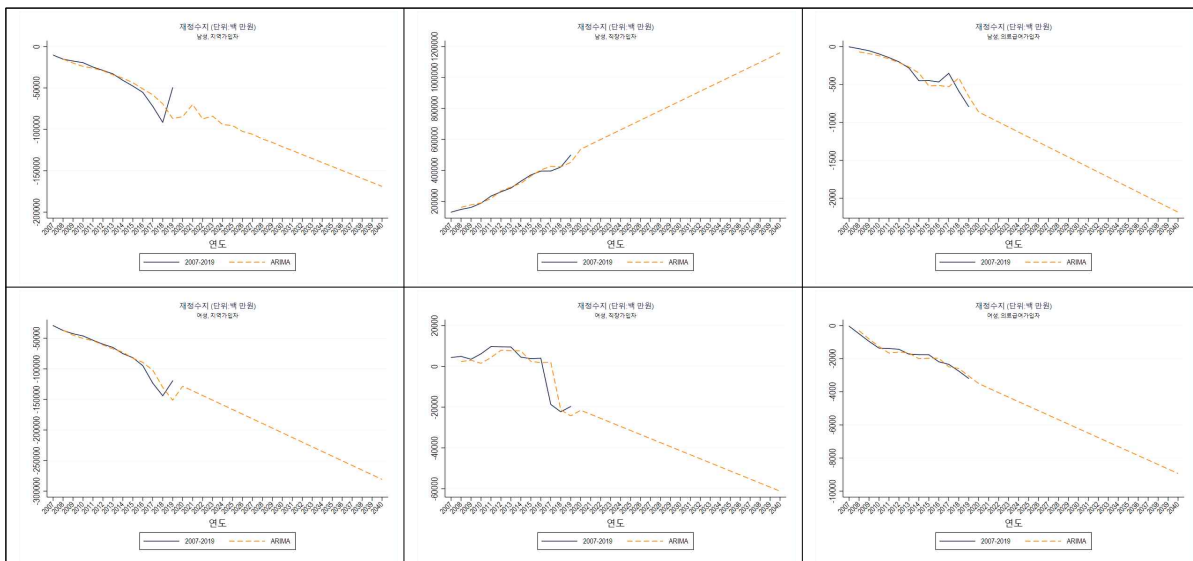
○ 외국인의 경우, 시계열 모형으로 재정추계한 결과 재정 흑자로 예상 (<그림 23>, <그림 24>)

－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이면서 직장가입자인 그룹만 재정수지 흑자로 예상

<그림 23> 외국인 재정추계 (ARIMA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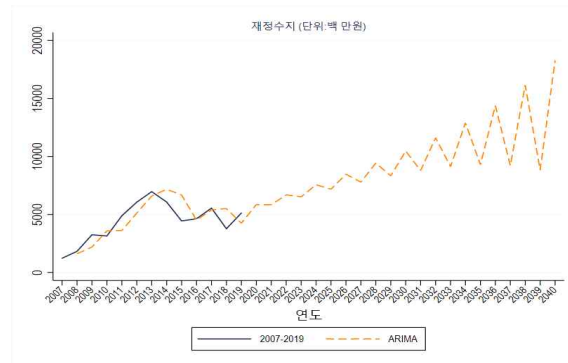
<그림 24> 외국인 특성별 재정추계 (ARIMA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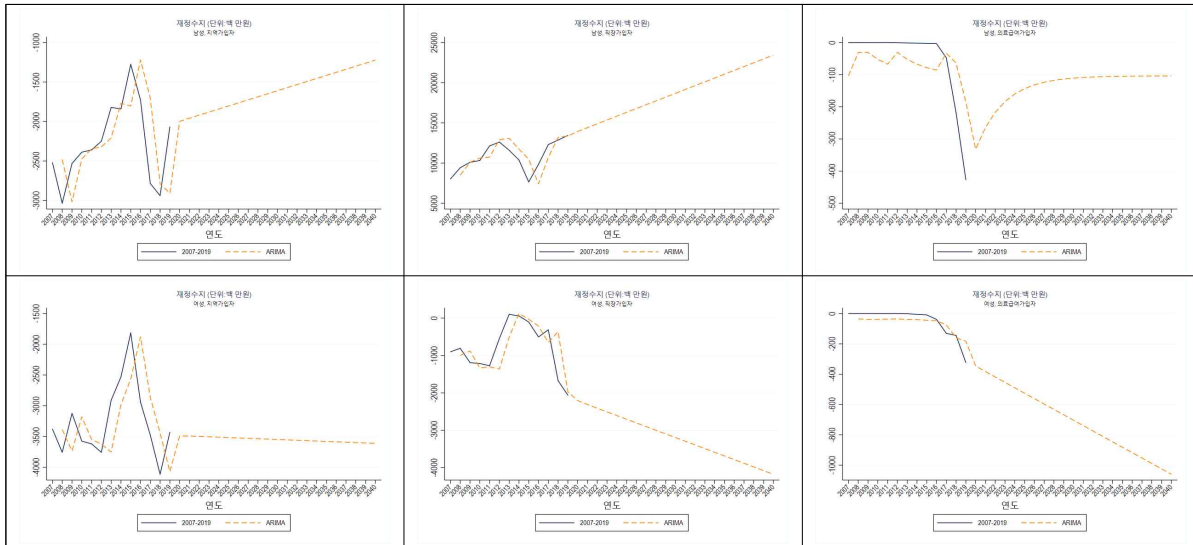
○ 재외국민의 경우, 시계열 모형으로 재정추계한 결과 재정 흑자로 예상 (<그림 25>, <그림 26>)

- －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이면서 직장가입자인 그룹만 재정수지 흑자로 예상
- － 또한, 남성이면서 지역가입자인 그룹은 재정수지가 적자이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림 25> 재외국민 재정추계 (ARIMA모형)



<그림 26> 재외국민 특성별 재정추계 (ARIMA모형)



○ 시계열 모형은 장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야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2007-2021년 자료만 이용했기에 시계열 모형으로 재정추계를 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본 보고서의 시계열 모형 추계결과는 해석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

- － 본 보고서에서는 시계열 모형 결과는 대안적 방법론을 시도했다는데 의의를 둠.

VI.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 본 연구는 국내 유입 인구(외국인 및 재외국민) 증가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 장기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전망
 - 근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설계와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국내 유입 인구 대상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유입 인구의 건강보험 이용 현황 및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엄밀하고 객관적 분석 수행코자 함
 -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내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보험 재정 관련 다양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과학적으로 전망
-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2007년 이후 꾸준히 일반외래, 응급외래, 입원, 처방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 다만, 대부분 의료행태에서 코로나-19로 영향으로 2020년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변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해 재정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흑자 유지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재정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는 재정 흑자 유지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세대주 최소 거주기간 요건 강화 정책 분석결과 다음과 같음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세대주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소 거주기간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 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건강보험 최초취득 시점이 2016년 4월~2019년 3월인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와 2019년 7월~2020년 6월인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후 의료서비스

스 이용 추세를 비교

- 건강보험 최초취득 시점이 2016년 4월~2019년 3월인 지역가입자들은 2019년 7월~2020년 6월인 지역가입자들보다 의료서비스 이용, 총 의료비용, 총 보험자부담금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책 시행 전 지역가입자들은 최초취득 직후에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이는 의료보험 역선택의 증거로 볼 소지가 있음
- 정책 시행 전에는 산정보험료보다 총 보험자부담금이 높고 (재정 적자), 정책 시행 후에는 산정보험료가 총 보험자부담금보다 높음 (재정 흑자)

□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조성법 모형을 이용

- 국내 유입 인구 증가가 국내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에 조성법을 사용해서 장기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예측
- 조성법 모형의 경우, 연령, 성별, 가입자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유입인구 인구구성 변화 시나리오(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자료 활용) 설정 후 2019년 자료 기준(코로나-19 직전) 의료비 지출 및 보험료 수입 예측
 - 외국인 상주 인구 구성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여지가 크므로 기본 시나리오 대비 +/- 20% 시나리오 계산
 - 중위추계(기본시나리오) 결과,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나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흑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감소하여 2031년 이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
 - 저위추계(-20% 시나리오) 결과,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감소하나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재정수지 흑자가 감소하여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
 - 고위추계(+20% 시나리오) 결과,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총 의료이용비용과 보험자부담비용 모두 증가하며, 재정수지는 흑자로 추계
 - 다만, 장기적으로 재외국민의 경우 재정수지 흑자가 감소하여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

2. 정책 함의

- 본 보고서는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정밀하게 예측 가능케 함
- 가령 국내 유입 인구 관련 건강보험 제도 설계(예: 국내 최소 체류기간)에 대한 근거 기반 제언 도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전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지역가입자를 당연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외국인만 임의가입하는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 제공
 - 또한, 보험료 부과기준 관련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건강보험 수지 개선 가능하다는 함의 제공
- 본 보고서는 국내 유입 인구의 국내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차후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 원주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끝으로 국내 유입 인구 증가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응용해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활용 가능

참고문헌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8).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급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국회에산정책처. (2019).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 박형아, 진기남, & 구준혁. (2021).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314-323.
- 변진옥, 조정완, 이주향, & 이정면. (2019).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 특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83-100.
- 보건사회연구원. (2009).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이태진. (202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방법론 연구.
- 주재홍, 장성인, & 박은철. (2020).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전망.
- 최정윤, 김성훈, & 최승주. (2021).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한국경제포럼, 14(3), 105-156.
- 통계청. (2017).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통계청. (2019).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통계청. (2021).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법무부. (2019). 2019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통계청. (2000-2019). 2000년-2019년 혼인·이혼통계.

부록

부록1. 주요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기준⁵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캐나다는 주별로 제도적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 건강보장 적용기준은 유사
 - － 캐나다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기술
- 외국인은 아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건강보장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 첫째,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의 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이어야함
 - － 둘째, 외국인은 최초 거주일로부터 183일 동안에 30일 이상 온타리오 주를 떠나서는 안됨. 즉, 153일 이상 온타리오 주에 거주해야함
 - － 셋째, 외국인은 자격 유지를 위해 실질적 주재 요건을 충족해야함 (1년 중 153일 이상 온타리오 주에 거주해야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건강보장 자격을 갖춘 대상의 배우자와 22세 미만의 자녀 혹은 장애가 있는 22세 이상의 자녀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의 유학생보험(UHP: University Health Insurance Plan)에 가입해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스웨덴

- 노르딕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EU 소속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 외 국적의 외국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스웨덴에 주민등록을 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1년 미만의 단기체류자일 경우, 노르딕 국적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신분증을 소지하면 스웨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혜택 적용하며, EU, EEA 소속 국가와 스위스 국적의 외국인은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를 취득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혜택 적용
- 노르딕 국가, EU, EEA에 속하지 않는 국적의 외국인이 1년 이내로 단기체류할 경우, 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함

⁵ 부록에 제시된 외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연구(국민건강보험, 2016)”을 참조

□ 다보험자에 의한 조합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외국인 건강보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독일

- 독일은 공보험과 사보험 모두 여러 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통해 제공함
 - － 공보험은 만 30세 미만이면서 독일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음
 - － 사보험은 총소득이 보험 가입 의무 상한선 이상⁶인 경우에 가입 가능하며 독일에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가입이 가능함
- 독일은 유럽경제협약에 따라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상이한 자격취득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 EU, EEA, 스위스와 독일과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 튀니지 등)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적보험의 건강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그 외의 국적의 외국인은 독일 공적보험에 가입의무 및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공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이들이 체류기간 동안 독일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민간보험을 이용하거나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함
- 체류기간과 별개로 고용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해당 직장의 공적보험에 바로 가입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은 3개월 이상 체류해야 공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독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독일 정부로부터 거주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공적보험 또는 민간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함

□ 프랑스

- 프랑스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은 고용관계, 체류기간, 국적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3개월 이하로 단기체류하는 EU, EEA, 스위스 국적의 외국인은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를 소지하면 프랑스 공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가입의무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⁶ 2019년 기준으로 월 5,062.50 유로

- 프랑스에 고용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해당 직장의 공적보험에 바로 가입되는 반면, 고용 관계가 없는 외국인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프랑스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등록을 하고 공적보험 또는 민간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함 (대부분의 비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전제조건임)
-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체류기간 내 1년 중 183일 이상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적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 183일 미만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적보험의 자격이 박탈되며 민간보험을 가입해야함
- 프랑스 유학비자 소지자(VLS-TS 또는 VLS-T)는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벨기에

- 3개월 미만으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국적에 따라 자격취득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음
- 단기체류하는 EU, EEA, 스위스 국적의 외국인이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를 소지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를 발급하지 못한 EU(스위스 포함) 이외 국적의 외국인은 보험가입의 의무도 없으며 건강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벨기에에 고용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공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은 거주허가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 증거를 제시해야함 (거주허가는 건강보험 가입을 전제로 함)
- 가족구성원 중 피부양자(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자의 보험가입으로 함께 보장됨
-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주허가를 받거나 일하는 모든 외국인은 벨기에의 공적보험 또는 민간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함

□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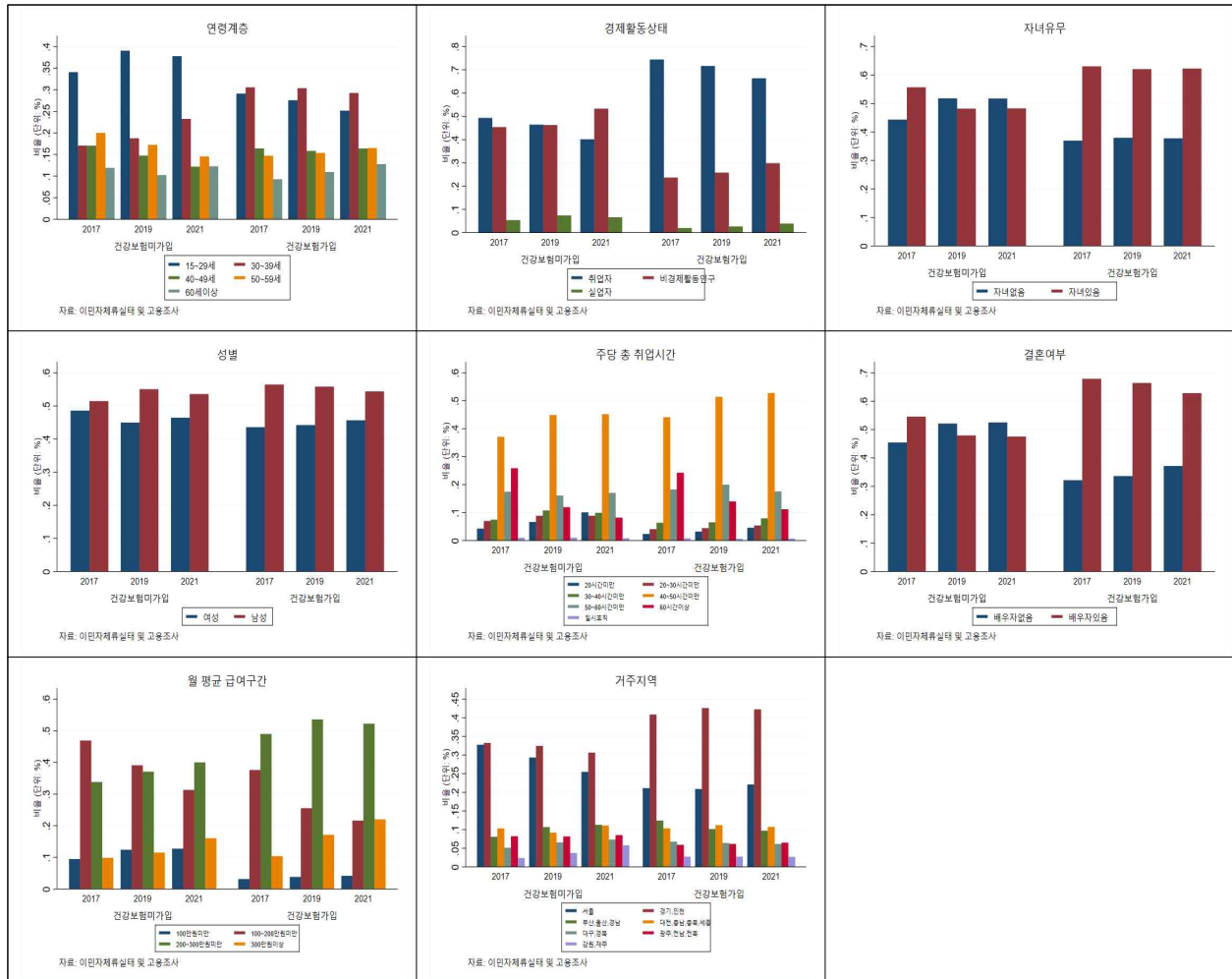
- 네덜란드는 국적에 따라 자격취득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를 발급받은 EU, EEA, 스위스 국적의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음
-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를 발급받지 못한 EU(스위스 포함) 이외 국적의 외국인이 3개월

미만으로 단기 체류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네덜란드는 민간보험사가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인은 그 중 하나의 보험사를 선택하여 직접 가입해야함
-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합법적 거주허가를 받고 살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함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거주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만 18세 미만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면제됨

부록2. 건강보험가입 상태별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현황

<부그림 1> 건강보험가입 상태별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학적 현황



자료: 2017, 2019, 2021년 이민국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부록3. 국적별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부표 1> 상위 3개국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단위:건, 백만 원, 원)

구분		일반외래				응급외래			
가입자 유형	연도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중국	2007	624,488	20,625	33,027	5.880	5,238	675	128,879	0.049
	2008	1,023,769	29,227	28,548	7.273	7,931	977	123,215	0.056
	2009	1,271,988	37,936	29,824	7.984	10,512	1,276	121,375	0.066
	2010	1,505,422	45,880	30,477	8.229	13,058	1,521	116,518	0.071
	2011	2,042,175	62,196	30,456	8.527	19,596	1,986	101,371	0.082
	2012	2,839,834	81,685	28,764	10.152	28,715	2,506	87,266	0.103
	2013	3,295,300	96,857	29,393	10.497	32,727	3,067	93,718	0.104
	2014	4,130,222	126,033	30,515	10.688	44,395	4,131	93,046	0.115
	2015	4,947,845	156,851	31,701	11.057	52,657	5,164	98,072	0.118
	2016	5,539,969	185,731	33,526	11.013	51,277	4,366	85,139	0.102
	2017	6,736,628	242,733	36,032	12.443	55,749	5,232	93,849	0.103
	2018	7,545,499	290,060	38,442	13.086	61,840	6,054	97,899	0.107
	2019	8,560,412	356,298	41,622	12.062	63,223	7,036	111,293	0.089
베트남	2007	203,706	5,753	28,242	4.281	2,086	215	103,167	0.044
	2008	302,757	7,570	25,005	4.831	3,073	303	98,552	0.049
	2009	402,233	10,245	25,471	5.651	4,113	425	103,270	0.058
	2010	470,121	12,237	26,030	5.901	5,023	493	98,096	0.063
	2011	520,925	13,420	25,761	5.705	6,187	552	89,295	0.068
	2012	575,816	14,002	24,317	6.438	7,226	557	77,028	0.081
	2013	571,305	14,571	25,505	7.064	7,061	570	80,666	0.087
	2014	609,492	16,410	26,925	7.471	8,144	643	78,935	0.100
	2015	615,485	17,489	28,415	7.143	7,925	650	82,049	0.092
	2016	590,526	18,656	31,592	6.707	7,245	571	78,871	0.082
	2017	657,348	24,332	37,015	7.264	7,702	654	84,975	0.085
	2018	668,525	26,652	39,867	7.173	8,108	707	87,189	0.087
	2019	683,731	29,664	43,385	6.023	7,786	758	97,315	0.069
미국	2007	181,494	6,929	38,180	6.830	1,674	248	148,242	0.063
	2008	256,892	8,635	33,615	7.873	2,328	325	139,697	0.071
	2009	324,124	10,697	33,004	8.313	3,478	485	139,340	0.089
	2010	380,323	12,707	33,410	8.694	3,467	473	136,382	0.079
	2011	388,200	13,311	34,289	8.529	3,767	454	120,564	0.083
	2012	437,941	13,866	31,661	9.398	4,101	459	112,037	0.088
	2013	463,035	15,475	33,420	9.641	3,839	470	122,511	0.080
	2014	485,691	17,029	35,060	9.964	4,303	542	125,878	0.088
	2015	467,390	16,713	35,759	10.004	3,946	524	132,779	0.084
	2016	440,629	16,982	38,540	9.325	3,140	362	115,393	0.066
	2017	489,319	20,224	41,331	10.735	3,121	401	128,612	0.068
	2018	505,741	22,351	44,194	11.163	3,428	455	132,799	0.076
	2019	539,737	25,605	47,440	11.060	3,514	508	144,432	0.072
	2020	506,259	26,786	52,910	10.275	3,193	461	144,224	0.065
	2021	574,503	32,327	56,270	10.744	4,235	550	129,782	0.079

<부표 2> 상위 3개국 외국인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단위:건, 백만 원, 원)

구분		입원				처방			
가입자 유형	연도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중국	2007	12,928	19,997	1,546,790	0.122	426,872	10,114	23,694	4.019
	2008	19,083	31,522	1,651,821	0.136	608,522	14,879	24,452	4.323
	2009	22,751	37,255	1,637,501	0.143	769,024	19,737	25,665	4.827
	2010	26,069	43,039	1,650,962	0.143	919,959	23,808	25,880	5.029
	2011	38,223	57,419	1,502,207	0.160	1,242,699	31,922	25,688	5.189
	2012	45,483	72,652	1,597,349	0.163	1,628,942	39,684	24,362	5.823
	2013	51,494	83,008	1,611,998	0.164	1,892,890	46,883	24,768	6.030
	2014	66,589	112,780	1,693,665	0.172	2,381,311	60,366	25,350	6.162
	2015	80,789	140,358	1,737,344	0.181	2,870,228	76,695	26,721	6.414
	2016	104,172	170,099	1,632,862	0.207	3,245,837	101,288	31,205	6.452
	2017	125,536	211,194	1,682,341	0.232	3,949,771	128,948	32,647	7.295
	2018	139,136	246,844	1,774,121	0.241	4,464,854	146,440	32,798	7.743
	2019	152,319	296,435	1,946,146	0.215	5,031,458	170,013	33,790	7.089
	2020	146,308	312,706	2,137,313	0.210	4,680,185	182,952	39,091	6.703
	2021	167,427	345,708	2,064,831	0.231	4,808,098	197,208	41,016	6.637
베트남	2007	7,869	7,683	976,323	0.165	121,188	2,030	16,747	2.547
	2008	9,809	9,858	1,004,970	0.157	172,303	2,831	16,428	2.750
	2009	11,353	11,456	1,009,068	0.160	237,740	3,965	16,677	3.340
	2010	11,693	12,173	1,041,087	0.147	290,621	4,893	16,835	3.648
	2011	13,409	14,164	1,056,275	0.147	320,285	5,283	16,494	3.508
	2012	13,009	14,579	1,120,651	0.145	328,264	5,020	15,291	3.670
	2013	12,520	15,179	1,212,356	0.155	330,950	5,244	15,844	4.092
	2014	11,913	14,856	1,247,049	0.146	362,547	6,089	16,796	4.444
	2015	11,765	16,107	1,369,045	0.137	374,659	6,710	17,910	4.348
	2016	12,088	16,236	1,343,191	0.137	359,207	6,926	19,280	4.080
	2017	13,398	18,790	1,402,437	0.148	400,248	8,146	20,352	4.423
	2018	13,437	20,348	1,514,301	0.144	405,180	8,297	20,478	4.348
	2019	13,935	23,782	1,706,619	0.123	405,888	8,734	21,519	3.575
	2020	13,879	25,564	1,841,951	0.123	350,950	8,298	23,644	3.112
	2021	17,309	30,140	1,741,292	0.123	398,191	9,733	24,442	2.827
미국	2007	3,179	6,049	1,902,651	0.120	123,380	5,040	40,853	4.643
	2008	4,123	7,816	1,895,683	0.126	149,754	5,924	39,560	4.590
	2009	4,776	8,028	1,680,986	0.122	187,590	7,173	38,235	4.811
	2010	5,706	9,660	1,692,903	0.130	218,045	8,387	38,466	4.985
	2011	6,299	9,987	1,585,525	0.138	211,993	8,526	40,216	4.658
	2012	6,223	10,633	1,708,617	0.134	218,739	8,246	37,696	4.694
	2013	6,842	12,521	1,829,969	0.142	223,488	8,349	37,359	4.653
	2014	7,285	12,896	1,770,261	0.149	233,157	8,665	37,162	4.783
	2015	6,935	12,874	1,856,357	0.148	224,031	8,615	38,454	4.795
	2016	7,191	12,811	1,781,465	0.152	213,852	8,617	40,296	4.526
	2017	7,854	14,298	1,820,410	0.172	237,168	9,655	40,708	5.203
	2018	8,347	14,982	1,794,885	0.184	245,384	10,037	40,903	5.416
	2019	8,812	17,615	1,998,934	0.181	259,644	11,029	42,477	5.320
	2020	8,594	18,418	2,143,144	0.174	232,374	11,305	48,648	4.716
	2021	9,991	20,787	2,080,533	0.187	245,694	12,137	49,400	4.595

<부표 3> 상위 3개국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일반외래, 응급외래)

(단위:건, 백만 원, 원)

구분		일반외래				응급외래			
가입자 유형	연도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미국	2007	98,456	4,349	44,177	9.854	434	74	170,328	0.043
	2008	131,466	4,962	37,742	11.571	456	81	177,328	0.040
	2009	137,694	5,093	36,987	11.982	589	101	170,977	0.051
	2010	142,008	5,551	39,089	11.820	596	101	169,089	0.050
	2011	149,745	5,712	38,145	10.794	712	100	140,524	0.051
	2012	157,713	5,599	35,504	12.808	727	92	126,062	0.059
	2013	138,374	4,927	35,606	12.465	687	93	135,000	0.062
	2014	120,556	4,435	36,791	12.096	634	85	134,339	0.064
	2015	86,932	3,340	38,424	10.814	464	62	133,525	0.058
	2016	108,765	4,713	43,334	6.878	492	66	134,388	0.031
	2017	137,611	6,402	46,520	13.889	616	83	134,769	0.062
	2018	148,922	7,243	48,639	14.328	679	87	127,682	0.065
	2019	163,870	8,685	53,002	14.678	772	114	147,048	0.069
	2020	149,874	8,404	56,076	13.884	692	94	136,504	0.064
	2021	167,931	9,912	59,027	15.468	970	123	126,917	0.089
캐나다	2007	30,127	1,220	40,505	7.524	154	24	153,483	0.038
	2008	37,234	1,280	34,370	8.328	173	28	159,050	0.039
	2009	40,924	1,484	36,258	9.078	201	33	161,862	0.045
	2010	43,628	1,543	35,377	9.340	224	31	140,149	0.048
	2011	44,620	1,702	38,138	8.464	248	31	126,183	0.047
	2012	48,063	1,616	33,619	10.492	288	37	128,027	0.063
	2013	44,406	1,458	32,832	10.478	227	29	129,349	0.054
	2014	41,426	1,407	33,956	10.349	274	33	120,897	0.068
	2015	33,323	1,130	33,907	9.459	240	29	122,116	0.068
	2016	35,753	1,447	40,459	5.900	244	22	92,063	0.040
	2017	40,754	1,729	42,429	12.700	181	22	121,905	0.056
	2018	43,312	1,942	44,838	13.125	218	31	142,948	0.066
	2019	45,820	2,261	49,339	13.743	180	31	169,797	0.054
	2020	41,669	2,220	53,270	12.654	201	28	140,860	0.061
	2021	49,631	2,786	56,140	15.164	258	38	148,675	0.079
일본	2007	17,109	692	40,460	10.040	82	13	152,725	0.048
	2008	22,315	744	33,321	11.732	138	17	124,669	0.073
	2009	24,770	877	35,398	12.466	187	27	142,895	0.094
	2010	27,488	921	33,496	12.869	167	28	169,600	0.078
	2011	31,481	1,012	32,133	12.011	192	23	121,315	0.073
	2012	37,365	1,090	29,178	13.865	270	35	128,687	0.100
	2013	36,182	1,121	30,989	14.313	251	31	124,237	0.099
	2014	34,153	1,119	32,763	14.380	254	30	118,651	0.107
	2015	25,064	878	35,048	12.329	157	20	124,853	0.077
	2016	39,744	1,492	37,538	8.208	210	26	125,003	0.043
	2017	59,755	2,397	40,119	14.762	338	42	125,067	0.083
	2018	67,593	2,775	41,056	15.237	346	52	149,868	0.078
	2019	75,681	3,274	43,265	13.493	336	51	153,261	0.060
	2020	76,417	3,630	47,497	13.329	380	50	130,659	0.066
	2021	85,717	4,480	52,260	14.887	463	62	134,612	0.080

<부표 4> 상위 3개국 재외국민 연도별 의료이용변화 (입원, 처방)

(단위:건, 백만 원, 원)

구분		입원				처방			
가입자 유형	연도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총 방문건수	총 진료비용	방문당 평균비용	가입자 대비 방문자수
미국	2007	2,051	4,532	2,209,622	0.205	63,181	3,489	55,230	6.324
	2008	2,451	5,581	2,277,041	0.216	70,579	3,889	55,101	6.212
	2009	2,404	4,738	1,970,975	0.209	73,105	4,080	55,808	6.361
	2010	2,790	6,034	2,162,719	0.232	74,705	4,128	55,254	6.218
	2011	3,096	5,984	1,932,855	0.223	76,135	4,143	54,418	5.488
	2012	2,877	5,827	2,025,222	0.234	74,208	3,543	47,743	6.026
	2013	2,316	4,413	1,905,495	0.209	65,895	3,108	47,162	5.936
	2014	2,094	3,954	1,888,435	0.210	57,743	2,747	47,569	5.793
	2015	1,597	3,382	2,117,813	0.199	41,003	2,029	49,479	5.101
	2016	2,294	4,621	2,014,505	0.145	50,199	2,526	50,312	3.174
	2017	2,856	5,503	1,926,883	0.288	64,360	3,259	50,635	6.496
	2018	3,206	6,576	2,051,219	0.308	69,668	3,611	51,833	6.703
	2019	3,435	7,435	2,164,586	0.308	75,867	4,276	56,368	6.796
	2020	3,343	7,614	2,277,666	0.310	70,094	4,432	63,226	6.493
	2021	3,813	8,573	2,248,395	0.351	74,694	4,870	65,199	6.880
캐나다	2007	413	777	1,880,551	0.103	18,902	833	44,068	4.721
	2008	460	1,008	2,192,206	0.103	19,558	885	45,257	4.374
	2009	546	978	1,791,664	0.121	21,292	961	45,134	4.723
	2010	588	1,074	1,827,349	0.126	22,422	1,002	44,708	4.800
	2011	556	1,028	1,849,700	0.105	23,134	979	42,338	4.388
	2012	575	1,042	1,811,788	0.126	23,587	940	39,832	5.149
	2013	537	999	1,859,774	0.127	21,208	849	40,025	5.004
	2014	586	1,102	1,880,631	0.146	19,868	814	40,967	4.963
	2015	454	704	1,550,621	0.129	15,865	653	41,176	4.503
	2016	518	843	1,627,028	0.085	16,565	667	40,270	2.733
	2017	581	1,108	1,906,896	0.181	19,249	837	43,495	5.998
	2018	621	1,333	2,147,020	0.188	20,547	932	45,370	6.226
	2019	659	1,549	2,351,279	0.198	21,489	1,065	49,552	6.445
	2020	631	1,239	1,963,891	0.192	19,425	1,046	53,868	5.899
	2021	786	1,568	1,995,154	0.240	21,203	1,170	55,197	6.478
일본	2007	432	985	2,279,260	0.254	11,273	459	40,721	6.616
	2008	599	1,191	1,987,742	0.315	12,161	460	37,807	6.394
	2009	617	1,125	1,823,745	0.311	13,697	547	39,908	6.893
	2010	524	968	1,848,108	0.245	14,736	543	36,861	6.899
	2011	567	1,082	1,908,836	0.216	16,481	600	36,419	6.288
	2012	573	1,035	1,805,545	0.213	18,863	620	32,846	6.999
	2013	539	906	1,680,861	0.213	17,641	603	34,169	6.978
	2014	570	952	1,670,549	0.240	16,496	552	33,481	6.946
	2015	354	743	2,099,832	0.174	12,581	460	36,553	6.188
	2016	817	1,423	1,741,141	0.169	19,858	721	36,288	4.101
	2017	1,314	2,338	1,778,964	0.325	29,881	1,191	39,847	7.382
	2018	1,444	2,844	1,969,597	0.326	34,067	1,500	44,019	7.680
	2019	1,665	3,307	1,986,303	0.297	37,508	1,641	43,738	6.687
	2020	1,627	3,513	2,159,473	0.284	36,837	1,722	46,747	6.425
	2021	2,029	4,630	2,282,054	0.352	40,320	1,960	48,613	7.002

부록4. 재정전망 수치

<부표 5> 외국인 재정전망 수치 (중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의료이용비용	보험자부담비용	보험료	재정수지
2023E	1,438,810	1,086,932	1,442,984	356,052
2024E	1,495,742	1,130,496	1,478,362	347,866
2025E	1,547,224	1,170,015	1,507,506	337,491
2026E	1,589,145	1,202,004	1,538,481	336,477
2027E	1,626,880	1,230,795	1,567,035	336,240
2028E	1,687,372	1,277,404	1,589,971	312,567
2029E	1,734,963	1,313,967	1,612,335	298,368
2030E	1,779,848	1,348,436	1,634,204	285,768
2031E	1,817,626	1,377,353	1,655,045	277,692
2032E	1,849,504	1,401,646	1,677,286	275,640
2033E	1,883,455	1,427,610	1,698,116	270,506
2034E	1,922,461	1,457,517	1,717,528	260,011
2035E	1,961,466	1,487,424	1,736,940	249,516
2036E	2,001,699	1,518,320	1,754,923	236,603
2037E	2,040,705	1,548,228	1,774,335	226,107
2038E	2,079,603	1,578,006	1,794,691	216,686
2039E	2,113,088	1,603,596	1,814,056	210,461
2040E	2,144,607	1,627,644	1,833,888	206,244

<부표 6> 외국인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중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수지			
	전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가입자
2023E	356,052	-214,309	575,222	-4,861
2024E	347,866	-226,966	579,806	-4,974
2025E	337,491	-239,109	581,668	-5,068
2026E	336,477	-247,591	589,237	-5,170
2027E	336,240	-255,132	596,636	-5,264
2028E	312,567	-271,245	589,142	-5,331
2029E	298,368	-283,100	586,867	-5,398
2030E	285,768	-294,147	585,381	-5,465
2031E	277,692	-302,887	586,108	-5,530
2032E	275,640	-309,398	590,639	-5,601
2033E	270,506	-316,931	593,105	-5,667
2034E	260,011	-326,348	592,086	-5,726
2035E	249,516	-335,765	591,066	-5,785
2036E	236,603	-345,860	588,300	-5,838
2037E	226,107	-355,277	587,281	-5,897
2038E	216,686	-364,415	587,059	-5,959
2039E	210,461	-371,936	588,415	-6,019
2040E	206,244	-378,713	591,038	-6,081

<부표 7> 재외국민 재정전망 수치 (중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의료이용비용	보험자부담비용	보험료	재정수지
2023E	59,925	45,699	51,283	5,584
2024E	63,353	48,329	53,180	4,852
2025E	66,402	50,668	54,814	4,146
2026E	68,550	52,313	56,195	3,882
2027E	70,405	53,733	57,426	3,693
2028E	74,951	57,229	59,418	2,189
2029E	78,306	59,807	61,007	1,200
2030E	81,413	62,195	62,504	309
2031E	84,023	64,199	63,817	-382
2032E	85,959	65,684	64,940	-744
2033E	88,099	67,326	66,098	-1,229
2034E	90,911	69,487	67,446	-2,041
2035E	93,722	71,647	68,793	-2,854
2036E	96,736	73,964	70,176	-3,788
2037E	99,547	76,125	71,524	-4,601
2038E	102,379	78,301	72,900	-5,401
2039E	104,717	80,097	74,093	-6,004
2040E	106,831	81,719	75,222	-6,497

<부표 8> 재외국민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중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수지			
	전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가입자
2023E	5,584	-6,981	13,512	-947
2024E	4,852	-7,502	13,364	-1,010
2025E	4,146	-7,972	13,185	-1,067
2026E	3,882	-8,275	13,263	-1,105
2027E	3,693	-8,533	13,364	-1,138
2028E	2,189	-9,286	12,702	-1,227
2029E	1,200	-9,827	12,319	-1,292
2030E	309	-10,326	11,987	-1,351
2031E	-382	-10,738	11,757	-1,401
2032E	-744	-11,027	11,719	-1,437
2033E	-1,229	-11,355	11,603	-1,477
2034E	-2,041	-11,807	11,296	-1,531
2035E	-2,854	-12,259	10,990	-1,585
2036E	-3,788	-12,751	10,606	-1,643
2037E	-4,601	-13,203	10,300	-1,698
2038E	-5,401	-13,656	10,007	-1,752
2039E	-6,004	-14,023	9,816	-1,796
2040E	-6,497	-14,350	9,688	-1,836

<부표 9> 외국인 재정전망 수치 (저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의료이용비용	보험자부담비용	보험료	재정수지
2023E	1,393,390	1,052,645	1,396,209	343,564
2024E	1,416,210	1,070,466	1,397,360	326,894
2025E	1,431,528	1,082,634	1,389,831	307,197
2026E	1,433,565	1,084,447	1,383,177	298,730
2027E	1,432,048	1,083,485	1,376,009	292,524
2028E	1,450,475	1,098,119	1,363,672	265,554
2029E	1,458,327	1,104,491	1,352,706	248,215
2030E	1,459,179	1,105,443	1,339,768	234,326
2031E	1,458,065	1,104,852	1,327,297	222,445
2032E	1,447,389	1,096,732	1,316,656	219,924
2033E	1,436,820	1,088,741	1,305,072	216,331
2034E	1,432,892	1,085,928	1,293,049	207,121
2035E	1,426,365	1,081,149	1,279,586	198,437
2036E	1,424,404	1,079,877	1,267,097	187,220
2037E	1,417,769	1,074,970	1,254,579	179,609
2038E	1,407,200	1,066,979	1,242,994	176,015
2039E	1,394,558	1,057,317	1,232,820	175,503
2040E	1,380,055	1,046,242	1,222,168	175,926

<부표 10> 외국인 가입자별 재정전망 수치 (저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수지			
	전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가입자
2023E	343,564	-207,761	556,028	-4,703
2024E	326,894	-215,413	547,009	-4,701
2025E	307,197	-222,129	533,996	-4,670
2026E	298,730	-224,256	527,632	-4,647
2027E	292,524	-225,228	522,374	-4,622
2028E	265,554	-233,685	503,809	-4,570
2029E	248,215	-238,360	491,102	-4,528
2030E	234,326	-241,008	479,813	-4,479
2031E	222,445	-242,912	469,791	-4,434
2032E	219,924	-241,155	465,476	-4,397
2033E	216,331	-239,677	460,364	-4,357
2034E	207,121	-240,494	451,928	-4,313
2035E	198,437	-240,781	443,483	-4,265
2036E	187,220	-242,341	433,780	-4,219
2037E	179,609	-242,349	426,132	-4,174
2038E	176,015	-240,871	421,020	-4,134
2039E	175,503	-238,371	417,973	-4,100
2040E	175,926	-235,407	415,397	-4,064

<부표 11> 재외국민 재정전망 수치 (저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의료이용비용	보험자부담비용	보험료	재정수지
2023E	58,116	44,320	49,664	5,345
2024E	60,032	45,796	50,315	4,518
2025E	61,743	47,117	50,707	3,591
2026E	62,062	47,365	50,663	3,298
2027E	62,132	47,421	50,527	3,106
2028E	64,666	49,379	51,087	1,708
2029E	66,057	50,454	51,302	848
2030E	66,928	51,130	51,304	174
2031E	67,575	51,633	51,244	-390
2032E	67,321	51,441	50,929	-512
2033E	67,046	51,233	50,586	-647
2034E	67,466	51,562	50,462	-1,100
2035E	67,619	51,684	50,217	-1,467
2036E	68,265	52,186	50,156	-2,030
2037E	68,438	52,324	49,940	-2,384
2038E	68,163	52,116	49,597	-2,519
2039E	67,684	51,751	49,219	-2,532
2040E	66,960	51,197	48,750	-2,447

<부표 12> 재외국민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저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수지			
	전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가입자
2023E	5,345	-6,778	13,042	-919
2024E	4,518	-7,118	12,594	-958
2025E	3,591	-7,443	12,028	-995
2026E	3,298	-7,517	11,818	-1,003
2027E	3,106	-7,548	11,660	-1,005
2028E	1,708	-8,033	10,801	-1,060
2029E	848	-8,309	10,248	-1,091
2030E	174	-8,498	9,784	-1,112
2031E	-390	-8,646	9,384	-1,128
2032E	-512	-8,628	9,240	-1,125
2033E	-647	-8,608	9,083	-1,121
2034E	-1,100	-8,714	8,747	-1,132
2035E	-1,467	-8,776	8,448	-1,138
2036E	-2,030	-8,924	8,048	-1,154
2037E	-2,384	-8,987	7,763	-1,160
2038E	-2,519	-8,968	7,605	-1,157
2039E	-2,532	-8,908	7,526	-1,149
2040E	-2,447	-8,806	7,496	-1,136

<부표 13> 외국인 재정전망 수치 (고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의료이용비용	보험자부담비용	보험료	재정수지
2023E	1,481,523	1,119,125	1,489,263	370,138
2024E	1,574,154	1,189,667	1,559,850	370,183
2025E	1,662,074	1,256,715	1,625,164	368,449
2026E	1,744,833	1,319,691	1,692,841	373,150
2027E	1,821,819	1,378,234	1,757,116	378,882
2028E	1,920,823	1,454,044	1,814,812	360,768
2029E	2,010,480	1,522,582	1,872,449	349,867
2030E	2,097,810	1,589,335	1,928,144	338,809
2031E	2,178,881	1,651,217	1,982,829	331,611
2032E	2,252,465	1,707,242	2,037,933	330,692
2033E	2,333,536	1,769,124	2,092,618	323,494
2034E	2,416,215	1,832,305	2,144,428	312,123
2035E	2,499,001	1,895,614	2,195,292	299,678
2036E	2,587,581	1,963,419	2,245,701	282,282
2037E	2,670,640	2,026,907	2,296,063	269,156
2038E	2,753,592	2,090,266	2,347,369	257,103
2039E	2,837,391	2,154,307	2,398,693	244,386
2040E	2,913,343	2,212,245	2,448,028	235,783

<부표 14> 외국인 가입자별 재정전망 수치 (고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수지			
	전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가입자
2023E	370,138	-220,049	595,205	-5,018
2024E	370,183	-238,120	613,553	-5,250
2025E	368,449	-255,744	629,658	-5,465
2026E	373,150	-271,205	650,044	-5,690
2027E	378,882	-285,315	670,101	-5,904
2028E	360,768	-307,930	674,785	-6,086
2029E	349,867	-327,442	683,581	-6,272
2030E	338,809	-346,478	691,737	-6,450
2031E	331,611	-363,552	701,789	-6,626
2032E	330,692	-377,986	715,484	-6,806
2033E	323,494	-395,059	725,536	-6,982
2034E	312,123	-413,143	732,412	-7,147
2035E	299,678	-431,505	738,492	-7,308
2036E	282,282	-451,818	741,565	-7,466
2037E	269,156	-470,233	747,014	-7,625
2038E	257,103	-488,370	753,259	-7,787
2039E	244,386	-506,852	759,187	-7,949
2040E	235,783	-522,960	766,849	-8,105

<부표 15> 재외국민 재정전망 수치 (고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의료이용비용	보험자부담비용	보험료	재정수지
2023E	61,488	46,887	52,810	5,923
2024E	66,452	50,689	55,983	5,293
2025E	71,060	54,218	58,921	4,703
2026E	75,017	57,245	61,698	4,453
2027E	78,658	60,029	64,297	4,268
2028E	84,967	64,872	67,628	2,756
2029E	90,333	68,988	70,648	1,660
2030E	95,652	73,069	73,611	542
2031E	100,475	76,768	76,390	-377
2032E	104,600	79,928	78,951	-978
2033E	109,423	83,627	81,730	-1,898
2034E	114,648	87,637	84,578	-3,059
2035E	119,852	91,631	87,398	-4,232
2036E	125,750	96,160	90,437	-5,723
2037E	131,174	100,324	93,320	-7,004
2038E	136,620	104,504	96,232	-8,272
2039E	142,067	108,685	99,144	-9,541
2040E	146,994	112,466	101,843	-10,623

<부표 16> 재외국민 가입자격별 재정전망 수치 (고위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수지			
	전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가입자
2023E	5,923	-7,141	14,033	-970
2024E	5,293	-7,845	14,197	-1,058
2025E	4,703	-8,500	14,343	-1,140
2026E	4,453	-9,032	14,693	-1,208
2027E	4,268	-9,517	15,055	-1,270
2028E	2,756	-10,495	14,639	-1,388
2029E	1,660	-11,305	14,452	-1,487
2030E	542	-12,111	14,239	-1,586
2031E	-377	-12,831	14,129	-1,674
2032E	-978	-13,426	14,197	-1,749
2033E	-1,898	-14,146	14,086	-1,837
2034E	-3,059	-14,946	13,822	-1,934
2035E	-4,232	-15,744	13,543	-2,032
2036E	-5,723	-16,667	13,088	-2,143
2037E	-7,004	-17,506	12,747	-2,245
2038E	-8,272	-18,346	12,421	-2,347
2039E	-9,541	-19,186	12,094	-2,449
2040E	-10,623	-19,939	11,857	-2,541